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잠시도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시간일진대, 시간을 뚝 잘라서 해와 달로, 또 매 분초로 나누는 건 인간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이 있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새로운 각오로 열며,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의 성취를 기약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 보고서도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자평해 보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는 연간 보고서가 어느덧 6호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2007년 보고서에서도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아쉬웠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07년 초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을 구축하며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 등을 전략 목표로 잡고, 아동과 청소년, 시설생활인, 장애인 인권 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는 위원회가 그해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에 대한 진단 위에서 위원회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과 위원회의 역할이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점사업을 포함해 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한계와 과제를 남겼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솔직하게 평가 하려 했습니다.

이 책은 명칭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기록이면서 우리 사회 인권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의해 포착된 대한민국 인권 현장 진단서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답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거리에서 처절한 투쟁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려고 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일상에서 공기처럼 인권을 누리는, 또 그렇게 돼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이 인권의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인권은 여전히 당위이며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는 양식을 더 많이 갖도록, 또 더욱 많은 사람이 그 양식을 일용할 수 있도록 인권위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인권위의 각오와 노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목 차

| 1부 | 총론 15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2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27

제1절 개 요 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8

1. 인권 관련 법령 ·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55
3. 인권상황 실태조사 56
4. 청문회 · 토론회 · 심포지엄 개최 66
5. 각종 위원회 ·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75
6. 기타 주요 사업 80

제3절 평 가 82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83

제1절 개 요 8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84

1. 인권 상담 84
2. 진정 접수 88
3. 인권 순회 상담 실시 89
4. 면전진정 처리 90

5. 안내 및 민원 처리 91
제3절 평 가 93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95
제1절 개 요 9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96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121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38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53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58
6.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162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164
제3절 평 가 168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1
제1절 개 요 17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72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72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75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85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188
5.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1
6.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2
7.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3
8.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0
9.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4

1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6
1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9
1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12
13.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13
14.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215
제3절 평 가 223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25
제1절 개 요 22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26
1.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 226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228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235
4. 시민부문 인권교육 확산 242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45
제3절 평 가 248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1
제1절 개 요 25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52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252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258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64
제3절 평 가 268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69
제1절 개 요 269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270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270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73
3. 인권교육 및 홍보 274
4. 교류 협력 277
5. 평 가 280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282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28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86
3. 인권교육 및 홍보 287
4. 교류 협력 289
5. 평 가 291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293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29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94
3. 인권교육 및 홍보 295
4. 교류협력 296
5. 평 가 297

| 3부 | 특별사업 29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 운영 301
1. 국제협력 TF 301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 304
3. 차별판단지침 마련 TF 305
4.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TF 307

제2장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309
1. 인권교육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309
2. 추진 경과 310
3. 부처이견 조정 과정 311
4. 주요 내용 312
5.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제출의 의미 313

제3장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315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6주년 기념식 315
2.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316
3.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외빈초청행사 318

제4장 외국인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321
1. 추진 배경 321
2. 조사 목적 321
3. 조사 내용 321
4. 조사 방법 322
5. 방문조사 기관 및 참여자 323
6. 조사 결과 324

제5장 APF(Asia Pacific Forum) 지원 조사관 훈련 325
1. 추진 배경 325
2. 주요 추진 경과 325
3. 주요 내용 327
4. 향후 계획 328

제6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입법 지원·모니터링 331

1. 사업의 배경 331
2. 주요 경과 331
3. 향후 계획 332

| 부록 | 335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337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43
3. 조직 및 정원 352
4. 예산 353
5. 위원회 활동일지 356
6. 위원회 발간자료 373
7. 보도자료 376

| 표 목차 |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 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28
[표 2-1-2]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57
[표 2-1-3] 사회권 포럼 개최 현황 78
[표 2-2-1] 연도별 진정 · 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84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85
[표 2-2-3]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86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87
[표 2-2-5] 기타 상담 유형 88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89
[표 2-2-7]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91
[표 2-2-8] 연도별 다수인 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현황 91
[표 2-2-9]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92
[표 2-2-10] 월별 민원처리 현황 92

[표 2-2-11]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92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97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99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99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73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74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76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177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178
[표 2-4-6]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216
[표 2-5-1] 인권교육 법제화 주요 추진일정 226
[표 2-5-2]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227
[표 2-5-3]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교류협정서 체결 현황 230
[표 2-5-4] 학문영역별 인권강좌 개설 현황 231
[표 2-5-5]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232
[표 2-5-6] 권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개최 현황 232
[표 2-5-7]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 233
[표 2-5-8] 2007년 교원 인권 연수과정 운영 현황 234
[표 2-5-9] 개발교재 주요내용 237
[표 2-5-10]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연수과정 239
[표 2-5-11]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원 실적 241
[표 2-5-12] '영화와 인권' 프로그램 및 강사풀 244
[표 2-6-1] 2007년 인권 현장 방문 현황 254
[표 2-6-2] 2007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257
[표 2-6-3] 국가인권기구간 직원 교류 현황 263
[표 2-6-4] 2007년 <인권> 주요 내용 266
[표 2-7-1]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 상담 · 안내 · 민원 접수 현황 271
[표 2-7-2]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72

[표 2-7-3] 다수인보호시설 상담 및 면전진정 건수 변화 추이 272
[표 2-7-4] 부산지역사무소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273
[표 2-7-5] 부산지역사무소 인권교육 방법 · 대상 및 기대효과 275
[표 2-7-6] 부산지역사무소 강의지원 현황 275
[표 2-7-7] 부산지역사무소 홍보활동 현황 276
[표 2-7-8] 부산지역사무소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품 및 수상자 277
[표 2-7-9] 부산지역사무소 인권교육 방법 · 대상 및 기대효과 278
[표 2-7-10]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 상담 · 안내 · 민원 접수 현황 283
[표 2-7-11] 2007년 순회상담 대상 시설 및 지역 284
[표 2-7-12] 2007년 광주지역사무소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현황 285
[표 2-7-13]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285
[표 2-7-14] 2007 호남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 289
[표 2-7-15] 2007년 광주지역사무소 활동가 토론회 개최 현황 290
[표 2-7-16] 대구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 상담 · 안내 · 민원 접수 현황 293
[표 2-7-17] 대구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94
[표 3-1-1]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308
[표 3-5-1] 조사관 훈련 프로그램 일정 329

| 그래프 목차 |

[그래프 2-2-1] 연도별/월별 상담사례 변화 추이 84
[그래프 2-2-2] 연도별/월별 진정사건 접수 분류 현황 89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98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98
[그라프 2-5-1] 방문프로그램 유형별 인원(명) 233

1부

총 론

총 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구금·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성·장애·국적·인종 등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권행동증진계획' 2년차 추진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시행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각종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 권고안」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여러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그동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비전과 사명, 운영 원칙, 활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대내외에 제시했다. 2007년 업무계획은 이런 맥락에서 수립됐다.

2007년 위원회는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5대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고, 1)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2) 시설생활인 인권 증진, 3) 장애인 인권 증진, 4)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5) 새터민 인권 증진, 6) 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 7) 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 지침 수립, 8)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9)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10) 인권 관련 주요 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등을 10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부서별로 역할을 나누어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했다.

진정사건, 전년대비 50% 증가

2007년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진정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정책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그리고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사회권 포럼을 구성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의 실현방안을 논의·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AIDS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의 일환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및 동 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권고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위원회는 우리나라 장애차별 시정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과정 모니터링과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약 2만 9천여 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고, 특히 2007년에는 진정사건이 전년대비 50%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사회 일반이 다양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존재와 정체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또한 지난해에 이어 상담버스를 이용한 순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위원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역사무소에 소관 구금시설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의 처리에 현장해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속처리를 통한 진정인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구금시설뿐만 아니라 다수인 보호시설에도 진정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집회금지 통고 및 사전차단 정책개선권고

2007년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구금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진정사건 대비 각 43.2% 및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2006년 대비 2007년에 119% 증가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현안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균형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한미 FTA반대집회, 이랜드 농성장의 용접봉쇄 등 현안사건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와 더불어 위원회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기획조사 결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정책간담회,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피진정인 징계 권고시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와 벌금형 집행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수용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에 대해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군 인권 향상에도 기여했다.

구금시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치료거실 과밀수용 및 바닥 난방 미설치 시정, 형 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를 미신고시설에 인계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및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사건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설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상습 폭행·허위 혼인신고·수급비 횡령을 저질러온 전·현직 장애인시설장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차별 등 기획조사 추진

2007년은 위원회가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활동에서도 효율성을 크게 제고한 해였다. 위원회는 우선 차별 진정건수의 증가에도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전년대비 55일 단축했다. 한편 2007년 차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장애차별 사건과 나이차별 사건이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의식 수준의 괴리로 인해 성희롱 사건도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2007년 위원회는 차별 진정사건의 처리 이외에 차별시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위원회는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차별시정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적극적인 차별시정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는데, 시청각중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 및 한센인 자녀에 대한 교육권 차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한편 2007년 위원회는 차별시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정사건을 자문하기 위해 네 개의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를 운영했고,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차별 시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국내 법규범에 부합하는 풍부한 내용의 차별판단지침을 발간하여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안적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했고,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APF 지원 조사관 역량 강화 훈련'을 포함하여 각종 조사관 교육을 실시했다.

차별 시정 분야의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여성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에서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성차별이므로, 회사 측에 여성 근로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권고함.
- 해외 NGO봉사센터 소장이 센터에 파견된 여직원에게 음담패설 등 저속한 성적 표현 등을 하여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혐오감과 모멸감을 준 것은 성희롱이므로, 봉사단 사무총장에게 직원 및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대학교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업에 필요한 수화통역사의 비용 분담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거부한 장애차별이므로, 대학교 측에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을 권고함.
- ○○공단이 신입 간호사 공개모집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준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공단 측에 해당 나이 제한 규정 개선을 권고함.
- ○○항공이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므로, 항공사 측에 해당 기준 개선을 권고함.

사이버인권교육 신청자, 전년대비 353% 증가

위원회는 전년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했고,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기업·언론인 등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시행의무를 부과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제정 추진했고,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했으며,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하여 수준 높은 인권담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운영하여 인권NAP 권고안의 인권교육 분야 내용 이행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2006년 월 평균 162명이던 사이버 인권교육 신청자가 2007년에는 월 평균 734명으로 353% 증가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먼저,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군과 경찰 수사관계자, 노인시설 및 정신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했고, 군 인권교육 훈령의 제정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위해 활동했다.

위원회는 시민 일반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해 국가권력에 견주어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인권가치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경영'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언론사 신입기자 및 중견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약자 표현 지침·의제 형성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학습 등의 내용으로 모두 24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에도 인권을 주제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와, 네 번째 영화 <시선 1318>을 제작했다. 박용제, 권미정, 홍덕표, 정민영, 안동희·유정우, 이홍민·이홍수 감독이 참여한 <별별이야기2-여섯빛깔 무지개>는 결혼이민 가정, 장애, 성차별 등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영화 부문에 초청되어 시민들을 비롯한 국제 관객에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극장 개봉과 DVD 보급 등을 통해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ICC 부의장국으로 선출

위원회는 2007년에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국제조정회의(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에서 2년 임기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의 부의장기구로서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적 위상을 넘어 국제인권 공동체에

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에서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 및 ICC 집행이사회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국의 주요 국가인권기구 대표단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언권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위원회는 2006년 ICC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기구로서 참여해왔으며, 여기서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에 입각한 운영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에서 국제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ICC와 APF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인권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한편, APF, 스웨덴의 라울월렌버그 인권연구소와 함께 중국 국가인권기구 설립준비 방문단을 대상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의 인권기구 및 법무부 직원 등 저개발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직원들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위원회는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유럽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 및 인권관련 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책고객시스템을 통한 홍보 기반 조성

2007년은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에 있어서 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 설정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위원회의 역사가 쌓이고 초기에 위원회에 요구됐던 인권 관련 주요 과제들이 일단락되고, 여기에 설립 초기에 비해 위원회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와 호감도가 낮아진 데다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2~3년간 지속된 일련의 흐름이 2007년에도 계속됐다.

위원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도기획 강화, 홍보 대상·창구·수단의 다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는 지역 언론, 대학 언론 등 비주류 주변부 매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인터넷 포털을 통한 홍보를 시도하며, 언론에서의 인권 의제화를 위한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외빈 초청 행사 등

의 형태로 구체화됐다. 또 양적인 외연 확대와 함께 인권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정책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 · 시범운영, 종교계와의 인권협력, 지역 인권단체에 대한 접근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들은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고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시작 자체에 나름의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위원회는 2005년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2007년 7월 대구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지역사무소는 인권 상담, 진정 접수, 면전진정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금·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와 인권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인권관련 단체 및 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시설생활인과 운영자, 이주민, 노인, 농촌지역 주민 등 위원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사무소는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교육과 홍보, 주요 인권정책 관련 설명회 · 토론회,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 필요

2007년 위원회가 5대 전략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한 배경에는 국가 공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내면화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내면화가 요구하는 인권적 과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체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배제, 계층적 양극화의 가속,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내화 문제 등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아동권 보장 및 신장, 장애인 인권증진, 빈곤계층의 생존권 보호, 이주민 인권보호 등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정체되고, 짙게 드리워진 그늘이다. 위원회는 2007년 민주주의의 내면화를 통한 인권적 과제를 실현하고자 사회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 1 장 인권 관련 법 ·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 7 장 지역사무소 활동

제 1 장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제 1 절 개 요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을 조사, 연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또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제19조 제4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행한다(제19조 제7호).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 ·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23조). 구금 ·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사건의 조사나 직권조사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4조).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제29조). 그 밖에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제12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06년에 위원회는 인권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비롯한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의 개선 사항은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권정책본부에는 정책총괄팀과 국제인권팀, 인권연구팀을 두어 인권정책 업무의 기획 · 총괄, 인권 관련 법령 · 정책의 조사연구와 권고 ·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회권 관련 인권 현안 및 중장기 인권 과제의 연구 및 정책권고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관련 법령 ·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총괄표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 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성폭력의 객체에 남자아동을 포함하고, 유사강간행위를 규정하며,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적 열람제도를 도입하는 전부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고, 법관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 금지 조항 및 유전자정보등록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함.	1. 8.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일부수용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 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다만, 위로금 산정기준을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족의 범위를 민법의 재산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1. 18.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중
3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표명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및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이 법률안들에서 제시하는 차별시정기구 위상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별 및 장애 개념, 구제수단 등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차별금지 권고법안과 동일한 의견을 표명함.	1. 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수용
4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함.	2. 15.	보건복지부	불수용
5	AIDS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보건복지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대하여 에이즈 관련 정책 시정을 권고함.	2. 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일부수용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6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테러개념 정의 조항의 삭제, 테러관련자 지정 요건 명확화 필요, 테러자금 조달 관련 미수 및 공범의 비범죄화 등의 재검토 의견 표명.	4. 9.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용
7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고용부문의 연령차별만을 다루는 개별 입법의 추진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4. 10.	노동부장관	일부수용
8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 여권정보를 구체화하고, 2. 여권발급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시 지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 최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3. 수집한 생체정보는 저장관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사용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4. 여권법 시행령상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 검토되어야 하며, 5. 여권발급관련 여권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여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4. 12.	외교통상부장관	일부수용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입법취지와 신설조항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유치시 보안장구 사용은 인권 침해 야기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4. 1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토 중
10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워 법률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4. 23.	국방부장관	일부수용
11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5. 4.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수용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7. 5.	보건복지부장관	수용
13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환경지킴이 위치정보 수집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단계에서의 보완, 위치정보 사용 처리의 관리 및 보안조치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및 열람 정정요구 등의 권리보장 조치 마련을 권고함.	7. 19.	환경부장관	일부수용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4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 권고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학보장방안 강화하도록 권고.	7. 23.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수용
15	징병검사 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복무기관에서는 병역법상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병종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받으면 족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질병이나 수형사실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수집정보의 관리원칙에 부합한다고 의견 표명.	8. 16.	병무청장	수용
16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의 저임금,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개선 및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개선, 준공영화 방안 모색 및 사내하도급근로 보호 입법 제정 강구 등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에 대하여 정책 및 법령개선 권고.	9. 10.	노동부 · 행정자치부 · 재정경제부 장관	검토 중
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등에 대한 과세자료,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신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13.	재정경제부장관	수용
18	소년법 개정안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을 위반하였고,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국가 등에서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재의 14세 이하 어린 아동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통계에 비추어 소년법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	9. 20.	법무부장관	불수용
1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의 '직장내 성희롱'조문 중 "밀접하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3자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수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9. 20.	노동부장관	검토 중
20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2006. 12 유엔에서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가입할 것을 권고.	9. 21.	보건복지부 · 외교통상부 장관, 국회의장	검토 중
21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법률구조지원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10. 4.	법무부장관	검토 중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전국단위 최저임금 결정방식 도입 및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도입 등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10. 6.	노동부장관	수용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	1.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용기관을 금융기관 등에 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용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2.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종류는 대통령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3.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4. 이용기관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오·남용될 여지를 두게 되므로 삭제하도록 의견 표명함.	11. 1.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검토 중
24	행정절차법 중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의견표명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11. 1.	국회의장	검토 중
25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	11. 12.	노동부장관	검토 중
26	빈곤가구 단전단수 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빈곤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단전단수는 최후수단으로서만 사용하며, 공동주택에 있어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할 수 없도록 권고.	11. 26.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	검토 중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재확인하고, 예비군 거부자에 대한 반복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	11. 26.	헌법재판소	검토 중
28	양형자료 통보제도에 관한 개선 권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양형자료 통보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	11. 26.	법무부장관	불수용
2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시행령과 관련되어 장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9개 분야에 걸쳐 시행령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11. 29.	보건복지부장관	검토 중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30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정개념의 삭제,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 마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제도의 완화, 난민인정심의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난민인정 신청 각하 사유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12. 6.	법무부	검토 중
31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예방, 근절 방안 권고 : 수업결손 방지 조치, 초등학교 합숙소 운영 폐지,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전국(소년) 체전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한 정책 권고.	12. 13.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	검토 중
32	통신비밀호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어 해당부분의 삭제하도록 의견 표명.	12. 17.	국회의장	검토 중
33	무호적자 호적취득 제도 개선 검토	무호적자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인우보증서 관련 조항 삭제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 간소화, 무료법률구조사업 홍보 및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제도 개선 검토.	12. 17.	대법원장,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장관	일부수용

(2)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의 주요 내용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6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1월 8일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를 포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등에 대하여 법관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하고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했다. 나아가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해임제도의 신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제도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최근 남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의 강간죄 개념도 새로 정립해갈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유사강간행위를 별도 신설한 개정 내용에 찬성했다. 또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은폐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해임 규정과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제도 도입 규정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하나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관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금지 조항은 법관의 형량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중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기로 한 개정 방향에는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형 집행 후 10년으로 확대한 개정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등록정보의 범위 중 유전자감식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2007년 10월에 입법되었으며, 200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박찬석 의원이 2006년 9월 18일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지뢰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민간의 지뢰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뢰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위로금'의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7년에 제안된 여러 차별금지 관련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 2007년 1월 25일,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안과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차별판단의 일관성 유지,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신속한 구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노동부가 3월 20일에 의견을 조회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차별금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4. 10).

또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두 차례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입증책임의 전환을 배분으로 수정, 가중적 손해배상의 삭제 등 일부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나, 소송지원 규정 및 사용자 개념의 정의(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5. 3, 10. 4).

4)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2007년 2월 15일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중 수급권자 관련 대책을 우선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 및 매월 일정액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과다초과자에 대한 선택 병·의원제 실시,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의 비급여대상 전환,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일부 불필요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 부과 및 선택 병·의원제도 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이용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로서 이들의 건강권·의료권 및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소지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추진을 권고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건강권과 관련하여 "보건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특히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을 위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규약 당사국의 '최소 핵심 의무(the core obligation)'이고, 건강권의 필수적 요소인 '접근성(accessibility)'에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부담가능성)이 포함된다(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의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 병·의원제의 도입, 파스류의 비급여화,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과 같은 조치는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최소 핵심 의무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정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추진을 강행하여

2007년 4월에 개정안을 만들어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가 2005년에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HIV감염인 및 AIDS환자(이하 HIV감염인)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 감염인 관리에서의 인권침해,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6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된 HIV감염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서도 검토를 하여, 국회와 HIV감염인 정책 관련 부처에 대하여 의견표명 및 권고를 결정했다(2007. 2. 25).

먼저, 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HIV감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고 규정을 수정 △익명보고의 원칙을 명시하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고지 및 지도 규정의 적용 대상을 HIV감염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 △HIV감염인 배우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역학조사 규정과 HIV감염인의 주소 이전 시 신고 의무 규정, 강제적인 성격의 검진 규정 삭제 △치료권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치료명령 및 치료명령 불응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 신고·보고와 관련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 정비 및 개인 식별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HIV감염인 인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 투입 전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HIV/AIDS 검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게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

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 사업주에게 권고·홍보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6)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재정경제부)가 2007년 1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0일 위원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테러 개념을 규정하고,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한 테러 관련자의 지정 및 이들의 금융거래 제한, 테러혐의 금융거래의 결정 및 그 자금의 동결, 테러자금조달행위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새로 입법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테러'라는 개념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테러'의 법적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테러관련자의 지정·고시는 테러 관련성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도 현재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자 처벌 규정도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는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안을 폐기하고, 2007년 11월 23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7)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외교통상부는 2006년 3월 이후 테러 방지 및 국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여권을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적 여권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 전자여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인 「여권법」을 개정 추진하고자

2007년 3월 16일 관련 부처에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7년 4월 6일에 있었던 제6차 전자여권도입추진위원회(외교통상부 산하)에 참석하여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 법률안을 검토하여 동 법률안 제5조 여권정보의 수집·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권정보'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권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정보의 주체와 객체에게 그 수집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동 법률안 제8조 제1항 여권의 발급신청 규정에서 지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는 그 정보 본래의 특성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필요에 의하여 지문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여권 사용 목적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현행「여권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그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권의 본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여권 기재사항을「여권법 시행령」에서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교통상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하위 명령인 외교통상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것이므로「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제5조 및 제8조와 현행「여권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보완 또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1) '여권정보'의 정의 명확화 관련 및 2) 법률상 여권 기재사항의 대통령령 및 외교통상부령 위임 근거는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나머지는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2007년 5월 30일 회신했다.

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안장구 사용'의 근거 규정 신설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7년 3월 27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보안장구의 사용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법적 권한 부여는 보호관찰제도의 취지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안 중 관련 조항의 구체적 규정 내용(보안장구 사용권자와 사용 대상자, 사용요건과 절차, 사용 가능한 보안장구의 종류 등)에 있어서도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방부가 2007년 1월 15일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하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안은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첫째,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둘째,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명령 및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명령 및 그 이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군인의 적기 적시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넷째,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 권리구제절차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끝으로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장병인권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령 군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안에는 군인인권보호기본계획과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수용하지 않았다.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제14조(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제15조(수화통역의 실시행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

11)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환경부는 2007년 5대강 유역에서의 환경오염 감시·계도 등을 위하여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복무관리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왔다. 더구나 최근 공·사부문 모두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기술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광범위한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적인 복무관리와 신속한 상황대처 등을 위해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와 정보수집 범위 등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고 정보의 사용·처리 및 관리 면에서도 인

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치정보 수집·사용 동의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사용·처리에서 관리 및 보안 조치를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업자가 정보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환경지킴이의 개인위치정보의 열람과 정정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정보수집 절차, 내용 관리, 정보주체의 접근권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하도록 했다.

12)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 권고

2007년 3월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들이 619,641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주민등록말소자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선정하고 그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2007년 7월 23일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위원회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신고불이행 과태료 감면, 과태료 면제연령 하향조정 등 주민등록 재등록제도를 개선할 것, 주민등록말소자가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에 주소이력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등록말소자가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 중인 주민등록말소 아동의 취학가능 조치 내용을 시기적(연말연초)·지역적(주민등록말소자 다수 거주지)으로 집중

하여 홍보할 것과,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할 때 구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이 거주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강화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는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해당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다.

13) 징병검사 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위원회는 2007년 5월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를 해당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병무청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설사 병무청장이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상명세서의 내용(항목) 중 가족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자료(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로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병무청은 위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14)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청소업무는 비핵심업무로 분류되어 직접고용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업무로서, 주로 여성·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우리 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바, 2006년 위원회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감독행정

을 강화하고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내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 입법 제정을 권고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선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를 별도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예,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활용)의 도입 검토를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나친 저가낙찰의 문제 개선 및 법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기간 확대와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대부분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휴게 공간 마련 및 복리후생 시설(식당, 샤워실 등) 이용 보장 등을 권고했다.

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2007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 중 과세자 자료제공의 요청과 체납 사용료 등 징수의 우선순위 조항이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유재산 사용·수익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권을 관련 행정청에 부여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 시 전제돼야 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청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우선징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유재산 사용·수익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권' 및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우선징수권' 등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007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16) 「소년법 개정안」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2007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검토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 적용 연령 변경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이를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임을 정부, 특히 법무부의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개정안 중 촉법소년 대상연령 인하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였고,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소년법 적용연령 중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을 낮추지 말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1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년 9월 6일 노동부는 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직장 내 성희롱' 규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및 노동권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현행법이 직접적인

고용관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포괄하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제3자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년 9월 3일 노동부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 위원회는 개정안이 저임금근로자와 고령근로자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했다.

위원회는 2007년 9월 6일 제3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의 기본 취지를 보호하고, 지역 간·연령 간 임금차별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의견표명 내용은 지역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국적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이라는 부분적 조치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19)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년 9월 8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즉시 위 법령들을 예비 검토한 결과 개별 법령을 일일이 검토하기보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이하 법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임을 확인했다.

동 법안을 검토한 결과 1)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용기

관을 금융기관 등에까지 허용하는 것은 본래의 행정정보 수집·관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용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저해 될 수 있으므로 동 법안 제2조 제1항 제7호 다·라 목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동 법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3)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용기관이 행정정보를 먼저 이용한 후 정보주체에게 나중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 이용기관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오·남용될 여지를 두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기관이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동 법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007년 11월 1일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2007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입법예고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제도'를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 절차라고 판단하여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을 임의 단축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소지를 원칙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대폭 제한하고, 입법예고 시 반드시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는 전문이 게재되도록 하여 입법에 대한 국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1)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공·사부문을 망라하여 개별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강

화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련 기술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이 업무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쓰이면서 작업통제 등을 위한 감시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사생활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진정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들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입법적 개선 사안을 검토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통제 및 감시(이하 전자감시)는 은밀하며 전면적, 세밀한 감시가 가능하며, 수집한 정보를 수월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사용자 의도에 따라 언제든 감시기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전자감시 여부를 모르며 고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감시 목적·범위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나 합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실질적 규제 근거가 없으며, 정보통신 관련법령 역시 일부 규제 근거가 있으나 이는 특정 정보나 대상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적극적 규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마련과 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권고하고, 아울러 현행 법령상 사업장에서 전자감시 도입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과 사업장별 관리감독 및 관련 세부준칙 마련 등을 권고했다.

22) 빈곤가구 단전 · 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05년 위원회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와 물이 끊겨도 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촛불화재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부터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달아 시간당 일정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전기가 끊겨 촛불화재사망사고가 일어나 위원회가 권고하게 됐다.

현재는 요금을 체납하면 전기·수도 공급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선별된 빈곤가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때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설령 일반 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단전이나 단수로 생존의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징수는 다른 법적 수단에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한전이 설치한 전류제한기에 의해 공급되는 현행 시간당 220W만큼의 전력량으로는 최소생활보장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력량을 재평가하여 공급량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즉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비연체자에 대해 단전·단수할 수 있는 규정을 '아파트관리규약'에 넣어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리비징수와 단전·단수조치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비 연체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할 수 없도록 했다.

23)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 대하여 거듭 처벌방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

적 병역거부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 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반복처벌은 훈련 소집된 횟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No 36/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심을 이유로 계속되는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영구적으로 표명한 경우 그것은 단일하고도 동일한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처벌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을 바꾸려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

24) 양형자료 통보제도에 관한 개선 권고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때에 해당 구치소장이 그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사유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위하적 효과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운용되는 데 그 문제가 있고, 행위자가 원래 저질렀던 범죄의 범위를 뛰어넘고 범죄와는 무관한 후발적인 행위 요소인 수용시설 내에서의 규율위반행위를 양형과정에 참작하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는 책임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법관으로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서울신문

12월 22일 011면

인권위 "양형자료 통보 폐지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의 규율위반 등을 검사나 법원에 통보해 양형에 참조토록 한 '양형자료 통보제도'의 폐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 구치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돼 왔다."며 미결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 받은 때에 해당 구치소장이 담당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양형 요소에 대하여서는 사실 판단과정에서 참조하지 않아야 함이 대원칙임에도 현재와 같이 교도소(구치소)가 검찰과 법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징벌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관해 징벌규칙상의 필요적 통보사항을 임의적 통보사항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5)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첫째, 제4조와 관련하여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소재하는 재외교육기관 중 모법에서 정의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제8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에 있어, 제8조 제1항의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동 조항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항을 마련하여 '모든 교육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제8조 제2항의 규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노력의무의 부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단계적 범위를 정하여 별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기존건물'을 포함하여 단계적 범위를 설정하고, 제12조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있어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넷째, 이동·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제15조와 제16조는 적용되어야 할 대상시설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고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인적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섯째, 제14조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을 '운전교육기관'으로, '…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하며,

여섯째, 제15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보의 접근에 필요한 수단을 웹사이트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말고, 구체화된 편의제공수단을 추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보강하여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일곱째, 문화예술사업자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3항은 그 적용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그 구별의 실익이 명확치 않으므로 별표 4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덟째, 제17조 제3항 별표 5의 체육활동시설의 단계적 적용 시기는 법 시행 후 1년, 3년,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시설'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없으며, 그 사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의하고 다양한 내용의 편의시설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여성에게도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항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법률안 중 '강제퇴거의 대상자 규정(제46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규정의 미비(제46조의2), 통보의무제도(제84조), 난민인정 및 처우 관련 규정(제76조 이하)'등 법률안의 일부 내용은 그동안의 출입국관

리법령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률유보 및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정개념의 삭제,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 마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제도의 완화, 난민인정심의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난민인정 신청 각하 사유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

27)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2007년 1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6년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연속 개최하여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책권고의 주요 내용에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도입 △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마련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대회 개최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평일 개최를 금지하고, 주말 및 방학 중 개최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운동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학원스포츠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학교 진학,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기준 등에 관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학생들을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잉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08년에도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포함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을 위원회 차원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파악, 학생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장단기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내용 중 1)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GPS)를 추가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상황 초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수사기관 등에 의한 악용의 우려가 있다. 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 부분은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보유해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 자료보유자가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 불응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의무의 부과 및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이익형량에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며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성의 측면이 있다. 3)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강제부분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던 휴대전화 감청에 대하여

그 사회적 영향과 오용 가능성 검증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고, 사업자의 감청 필요설비 보유는 감청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관의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 문제의 심각성, 사업자가 보유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토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일정기간 자료를 보관케 한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역행된다.

따라서 개정안은「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관련 조문들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9) 무호적자 호적취득 제도 개선 검토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고용 기회보장 등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호적자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17일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무호적자의 인권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와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관련 조사를 할 때에 해당지역 주민의 가족관계등록 여부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가족관계등록 여부도 포함하여 조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중에서 인우보증서를 제외하도록「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할 것과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절차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대법원은 무호적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과 호적취득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및 「동 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보편적 인권규범이자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동 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을 권고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 법제를 비교하여보면,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 원칙 및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부합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협약이며, 또한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의 존엄과 권리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범으로 특히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차별금지규정이나 자유권과 관련된 규정은 거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중첩되어 있거나 또는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몇몇 조항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의 점진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방향제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의 증진에 그 역할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내적으로 거의 수용되어 국내법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통보와 위원회의 조사권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데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유엔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

1) 제7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제7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8월 우리나라 제13차·제14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06년 정부보고서에 관하여 의견표명을 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정부보고서 심의에 앞서 정부보고서 심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별도의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port)를 제출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기간 중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구두로 발표했다. 이는 위원회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 정보보고를 하고 별도의 좌석을 배정받아 구두 발표를 한 최초의 사례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정부보고서의 '혼혈인' 용어 사용, 순혈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위원회는 2007년 7월 8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5차,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여성부 설립 및 호주제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제결혼이주여성,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비정규직 내 여성의 불균형적 비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건설적 대화에 앞서, 국가인권기구로서 대한민국 여성인권상황에 대하여 구두 보고를 했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실태조사 현황 총괄표

[표 2-1-2]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연번	분 야	실 태 조 사 과 제 명	연 구 기 관	비고
1	자유권(4건)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	전남대학교	
2		경찰관서 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자유권 실현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4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동아대학교	
5	평등권(1건)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한남대학교	
6	사회권(8건)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판결을 중심으로)	새날	
7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8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 직업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9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권재단	
10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여자대학교	
12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3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강대학교	
14	인권교육(1건)	인권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경인교대	
15	북한인권(1건)	새터민정착과정 실태조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2) 실태조사 주요 내용

1)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우리나라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인권 관련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인권규약상의 해당 권리가 재판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상 문제가 된 사안이 국제인권규약상의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국제인권법의 해석의 문제, 특히 국제인권규약을 둘러싼 국제인권기구와 사법부,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법률해석의 충돌을 염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의 문제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

는 사법부에서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인 재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의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제법의 국내 사법 적용 법리, 외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조건과 방법,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체계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경찰관서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찰 업무는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무의식적·관행적으로 업무수행 중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인권 보장과 향상이 특히 요청되는데, 우리 위원회 출범 이후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한 진정사건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이고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경찰 활동의 구체적 내용, 그에 대한 평가기준·지표 등을 마련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포함한 경찰활동 전 과정 및 경찰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경찰관서 인권 관련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경찰활동과 인권의 관계, 경찰활동 분야별 인권지표, 외국의 선진제도와 사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경찰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인권 관련 지표 개발을 시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고, 경찰기관의 인권상황 평가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자 개인들이 스스로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자유권 실현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위원회 출범 이후 자유권과 관련하여 행하였던 권고 결정들이 현실사회에 어떠한 효과와 결과를 낳았는지를 실태조사와 영향평가의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권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봄으로써 위원회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자유권 관련 권고결정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추세판별 및 유형화의 작업을 행하는 한편 권고 결정들이 사회 혹은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용되는지 여부와 수용방법, 그리고 제도화·규범화의 양상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국가기구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인권장치들의 구성 및 실천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 발효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1991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08년 현재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몇몇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영역에서는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공정한 심판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39조, 제40조와 「소년사법운영 최소표준규칙」, 「소년비행예방지침」, 「피구금소년보호규칙」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상응하는 소년사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연구책임자 최병각 교수)에 의뢰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5)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장애인과 형사처분을 구하는 피해자 장애인 외에도,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형사사법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가 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차별사례 및 한국의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국의 사법현실의 결과로 초래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모두 형사사법절차에서 비장애인이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상당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형사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형사사법 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거의 모든 장애유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6)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판결을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헌법」규범력이 법률과 그 집행에서는 확보되고 있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과 달리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법리가 우리 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잡고 있는바, 외국의 단결금지법리의 극복역사와 외국입법례·법리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와 비교 분석하고,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 실태를 판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더구나 최근 노동분규가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과도한 형벌적용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바,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7) 빈곤층 아동 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계층 아동 등에게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운영상의 미비로 실질적인 결식이나 영양 불충분을 야기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급식지원 아동의 건강권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준 및 외국의 정책을 비교 연구하여 급식지원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미숙 연구위원)에 의뢰해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8)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직업 실태를 중심으로)

이번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직업 실태를 중심으로)는 새터민 10,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새터민 취업 실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본 실태조사는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화와 해외 사례 비교, 새터민들의 취업 준비 실태, 직업 및 노동생활 실태, 비공식 경제 활동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 과제로 우선, 새터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우선 중앙 부처 차원에서 가칭 '북한이탈주민 직업지원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대책협의회' 설치)가 필요하고,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터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새터민의 특성에 기초한 취업·창업 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하고, 새터민 고용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는 새터민의 구직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성 새터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및 새터민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9)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는 지구적 차원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정책과제로 ODA의 증액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중기 대외원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까지 ODA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GNI 대비 0.1%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러한 ODA사업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현지주민의 주거권이나 개발권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07년 5월 8일 ~ 2007년 12월 21일 기간(8개월)에 ODA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인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찰하였으며, 여기서 수원국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수립, 한국 ODA 집행체계의 인권적 원칙과 기준수립, 인권적 대상선정의 기준 마련, 인권실현을 위한 ODA 관련 국제규범의 온전한 수용과 실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정책적 제안이 제시됐다.

10)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의 차별 여부 및 고용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70%에 이르며, 여성비정규직은 성차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중적인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는 간접고용, 성별 직종분리 현상, 주변업무화, 임금 등 고용조건에서의 차별, 매우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한 이익대변 단체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고용상황은 차별을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비정규직 중에서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

어 있지 않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 유통업 여성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42.8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8~100%인 반면 비정규직은 25%였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1.7%로 매우 낮았다. 유통업 여성비정규직은 또 근무시간 내내 서서 근무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산부인과질환, 요통 및 디스크질환, 근육질환, 비뇨기과질환, 무릎 및 관절질환, 정신 스트레스질환 등이 많이 발병한 점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정책을 살펴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1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의 성 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실태를 살펴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임신을 경험한 학생, 학교교사, 미혼모시설 실무자, 학교사회복지사 들을 대상으로 설문·심층면접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논문에는 임신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현장의 태도와 조치 변화,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개발, 학교교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유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개발 실시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친 사례발굴 및 정책개발, 청소년 미혼모들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 5월 1일 광주YMCA 에서 광주지역사무소 주관으로 연구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12)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함께 정부는 이에 대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과 제

도 마련에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인의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노인보건복지서비스는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증가 모두 예상된다. 하지만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가 제도적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

특히 노인보건복지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2008년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서비스공급 인력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 형태별로 노인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준을 분석하여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연구책임자 이지전)에 의뢰하여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13)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고찰해볼 때, 사회권의 확립은 선언적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률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몇 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회권의 확립은 그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과 세력다툼을 통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작업은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만 이 사회권 확립을 위한 정확한 발전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사회권 지표개발 논의의 출발로서, 사회권의 기본적 개념과 이념을 고찰하고, 사회권 지표에는 어떤 영역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초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각 사회권 지표에서 보장되어야 할 바람직한 수준에 대해서 검토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시한 사회권 지표구성의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실험적으로 측정했다.

14) 인권친화적 초 · 중등 인권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새 교육과정을 2007년 2월 고시함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교과서에 인권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모든 교과서 집필에 있어 인권이 고려되도록 인권 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방안과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즉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토대로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가능한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도덕과 및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관련 단원 및 활용가능한 인권교육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국어, 영어 등 기타 교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소재를 제시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드러난 인권적 문제점을 토대로 새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유의해야 할 인권적 기준을 제시했다.

15)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위원회는 새터민 10,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직업실태를 중심으로)를 시행했다. 이번 연구는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인 새터민 취업 실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화와 해외 사례 비교, 새터민들의 취업 준비 실태, 직업 및 노동생활 실태, 비공식 경제 활동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단기적 과제로 우선, 새터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중앙 부처 차원에서 가칭 '북한이탈주민 직업지원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대책협의회' 설치 등)가 필요하고,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새터민 정착 지원 조례 제정 권장 등)의 강화, 새터민의 특성에 기초한 취업·창업 지원방안 시행 및 새터민 고용지원제도의 홍보 강화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는 새터민의 구직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성 새터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및 새터민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청문회 · 토론회 · 심포지엄 개최

(1)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회는 2006년에 실시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학생선수의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일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7월 18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2007. 5. 1.

2007년 11월 30일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엘리트스포츠정책의 전환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위원회 정책총괄팀이 발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의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정희준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고은하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호 전국체육교사모임 대외협력국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히 200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와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정책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2007년 1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

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실시했다.

(2)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위원회는 2007년 6월 21일(목) 위원회 배움터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부에서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변호사)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개관했다. 그리고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2)를 수행한 박성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와 보안관찰대상자인 김경환 씨(전 월간『말』기자)가 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 상황 실태를 보고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2007. 6. 21.

세미나 2부에서는 송문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보안관찰법의 근본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안관찰법의 역사적·이론적·법적 성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송을 통해 본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한 정부 측 토론자로 법무부 공공형사과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실질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김용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보안관찰법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세미나를 통해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규범적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현 보안관찰법령의 이론적·실제적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과제,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인권 실태, 보안관찰법에 대한 정부 방침 등에 대하여 사회적 성찰과 토론

의 장을 제공했다.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우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인권법원 재판관인 Mrs. Elisabeth Steiner를 초청하여 강연 및 세미나(2007.12.17.~12.18.)를 개최했다.

강연은 '유럽이사회의 기본적 사회인권 보호'를 주제로 하여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강연에는 인권위 직원과 각계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여 국제인권기준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다음 날 개최된 세미나는 '유럽 사회헌장과 집단진정체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스타이너 재판관이 발제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현아 교수, 헌법재판소 이명웅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공감 황필규 변호사,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하여 스타이너 재판관이 소속한 유럽인권재판소와 위원회는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4) 사회권 심포지엄

위원회는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를 조명하고자 2007년 4월 25일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 법학과 박찬운 교수가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분과로 나누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노인분과(좌장 : 고려대 법과대학 김선택 교수, 사회권 전문위)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권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소득보장 부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정경희 팀장은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발표하였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했다. 노인의 건강권 부문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

지연 연구위원과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욱 교수는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김용하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홍원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노인보건·건강지원팀 박종연 팀장,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동분과(좌장 : 인하대 법과대학 이경주 교수, 사회권 전문위원)에서는 빈곤아동의 사회적 방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는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상임대표는 빈곤 아동의 실태와 인권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혜령 교수는 친인척 대리양육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호균 관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광수 고문,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김지선 소장, (사)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신미혜 서울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자유토론자는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본부 류경희 본부장,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병기 관장, 영동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송동호 전문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재연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혜원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원이 참여했다.

여성분과(좌장 : 법무법인 자하연 이유정 변호사, 사회권 전문위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빈곤여성인 비정규직 여성과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논의했다. 한양대 법과대학 강성태 교수는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를 발표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중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실 은수미 연구위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장혜경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자유토론자는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완 교수,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순 사무처장,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 황정미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조민경 팀장, 노동부 여성고용팀 전해선 사무관이 참여했다.

장애인분과(좌장 :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 사회권 전문위원)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주거권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소득보장 부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은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주거권 부문에서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이용자의 권익 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책사업팀의 김인순 박사는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 방향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장애인자립생활자원센터 노적성해의 전정식 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자유토론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남찬섭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김수영 팀장이 참여했다.

(5) 사회권 관련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위원회는 위원회 사회권 주요 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리 사회 사회권 현황 파악, 2008년 위원회 사회권 주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목적으로 사회권 관련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총 7회 개최했다(2007. 10~11.).

우리 사회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 장기간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아동단체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권연구소 창 등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인권단체는 권리별·대상별로 주요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사회권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발굴, 사회권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 및 협력관계 강화, 위원회 업무담당자의 사회권 인식제고 및 현안 파악, 위원회와 인권단체의 풍부한 논의, 인권현황 관련 다양한 자료

수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6)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사회적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3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등록말소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여경수 충북대학교 BK21사업단, 현시웅 대구노숙인상담센터 대표가 실태조사 결과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가 정부부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현수 충북대법학과 교수, 범경철 전북대법학과 교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용역팀, 학자, 정부부처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현황,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주민등록말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번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7) 청소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청소용역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용역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5월 4일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후속적인 연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 가톨릭대사회학과 교수,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관계자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 박지순 성균관대 연구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진, 학자,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청소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여 필요한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분석함으

로써 향후 입법, 제도개선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8)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 토론회 · 국제심포지엄 개최

위원회는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그 범주와 주요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기조에 입각하여 2007년 재중 탈북자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3.7). 이 간담회에는 노귀남(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영자(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이혜영 · 서대교(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새터민 3인 등이 참석했다.

또한, 탈북 여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4.6)하였는데 여기에는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아(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장은주(강원도 원주경찰서 경사), 새터민 2인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5.23), 북한변화와 주민의 인권 관련 토론회(6.18.)를 개최하였는데,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종욱(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차문석(성균관대 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홍민(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북한사업센터 차장), 이무철(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영선(이화여자대학교 북한협동과정 전임연구위원), 이인자(동북대학교대학원교육연구소 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이금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남중(인도협력기획팀장), 차문석(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중국, 몽골, 미국, 영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nti-slavery international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2007년 11월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국내에서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원재천(한동대 교수), Tarik Radwan(한동대 교수), 이미경(통일교육원 교수), 임순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수) 등이며, 국외 주요 참석자로는 김강일(중국 연변대 교수), 김철, 유효남(중국 요녕성사회과학원 교수), Damdinjav Lkhagvasuren(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국제협력부 국장), Norma Kang Muico(Anti-Slavery International 연구위원), Rajiv Narayan(Amnesty International 동북아시아 연구원), Peter Beck(US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David Hawk(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연구위원) 등이었다. 또한 주한외교관, 국제기구 및 국내 NGO : Janice Lyn Marshall(UNHCR 한국대표), Adrian Jones(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Brian McFeeters(미국대사관 대외정치담당관), Anne Huwem(네덜란드 대사), Sophie De Smedt (벨기에 대사), Dilphine Q(노르웨이 대사관 정치담당관), Thierry Berthelt(프랑스 대사관 영사), 전명호(정착인신문사 사장),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곽종문(한겨레 학교 교장), 이정혜(국제이주민 대표), 최승철(탈북의사협회 회장), Randipe(인도대사관 서기관),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세응(민주당 천안갑위원장), 이혜영, 서대교(Baspia 공동대표), 박종춘(세계평화청년연대) 등이 참여했다.

(9)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모색

위원회는 2007년 1월 18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7년 1월 12일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협약의 권리를 위반할 경우, 그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 직접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신혜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위원(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가톨릭대학교 장복희 교수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위원회 조형석 사무관이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국회여성가

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민기 판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강선혜 팀장,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박선영 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0)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검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2006년 9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대한민국 정부의 제3차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를 평가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 등이었으며,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했다.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2007년 4월 12일 개최된 이 토론회는 한국 정부가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 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된 상황에서 기획됐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간의 보완점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을 다루었으며, 장애인 단체 및 시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토론에 임했다.

(12)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강제실종보호협약」은 유엔이 가장 최근에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2006년

12월 20일 유엔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강제실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강제실종 및 강제실종범죄의 불처벌을 종식시키려는 국제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과거사 및 의문사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협약 채택과 향후 우리나라의 가입에 따른 쟁점 및 의미를 알아보고자 7월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국제법적 쟁점, 협약의 가입·비준 관련 국내법적 쟁점, 우리나라의 의문사 사건 조사 및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본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을 주제로 학자, 인권법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가해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위원회가 정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권고하는 데 활용됐다.

5. 각종 위원회 ·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1)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상기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통합 기술함)

(2)청와대 민원 · 제도개선협의회 참여

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의·조정하고 있다.

2007년에 이 협의회는 모두 세 차례 개최되었는데, 1) 경찰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철폐할 것을 권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7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기로 경찰청과 합의하였고, 2)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내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면서 국내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화교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3)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은 이러한 자문기구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에 구성된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가 2007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1월 26일 사회 각 분야의 원로 전문가 34명을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여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 전 법제처 장관)를 구성했다. 그리고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및「장애인차별금지법」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18명이던 자문위원을 34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원로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아동인권전문위원회 및 전문가 연석회의 운영

위원회는 인권정책본부에서 마련한「아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검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차년도 아동인권 중점 과제 선정을 위해 2007년 12월 12일 '아동인권전문위원회 및 아동 전문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본 연석회의에는 아동인권전문위원과 아동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중장기 아동인권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의 체계적·유기적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프로젝

트팀'을 구성하여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2005년 국제 인권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5명으로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인권전문위원회는 2006년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 현안과 과제' 한일 심포지엄 개최건 등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2007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출범으로 국가인권기구(NI)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인권제도의 최근 변화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유엔 및 각 NI, 국제 관련 NGO와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인권제도의 최근 변화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007. 11. 15.

(6)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사회권 포럼 운영

위원회는 사회권 관련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2006년 4월 학자, 인권단체 관계자, 법조인 등 사회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회권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권전문위원회는 2006년 4월 19일 사회권 정부보고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를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및 사회권 관련 과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본 전문위원회의 안건 검토를 통해 사회권 관련 과제 개발 및 연구를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사회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자문기구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2005년 10월 26일 사회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권 포럼'을 발족하고 매월 사회권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개최해왔다. 2007년 개최한 사회권 포럼은 아동권(3차), 사회권 지표(1차), 주거권(3차) 등 사회권에 관한 총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사회권 포럼은 중장기 사회권 과제의 개발과 사회권 영역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3] 사회권 포럼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분야	주 제	발표자/토론자
1	2005.10.26	총론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박찬운(운영위원)/김선택, 노대명
2	2005.11.16		헌법과 사회권	전광석(운영위원)/박종운, 이찬진
3	2005.12.14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조형석/오재창 변호사, 김형식 교수
4	2006.1.18		사회권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	조형석, 김기연/운영위원
5	2006.2.2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설동훈, 최홍엽, 신홍주/운영위원
6	2006.3.15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김민정(이주여성의집), 김정선(숙명여대), 소라미(공감 변호사)/운영위원
7	2006.4.19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 사례	배융호(장차법추진연대 법제위원)/이찬진(전문위원), 전광석(전문위원)
8	2006.5.17		장애인 정부정책 검토	남찬섭(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변용찬(보건사회연구원), 김동호(보건복지부)/임성만(장봉혜림재활원 원장),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0	2006.6.21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김원경(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김은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한경근(단국대학교 교수)
10	2006.7.1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김원경(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김은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한경근

회차	일시	분야	주 제	발표자/토론자
11	2006.8.23	노인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정부 정책 검토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 이형복(보건복지부 노후생활팀 팀장), 홍미령(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운영위원
12	2006.9.20		노인과 일	조용만(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재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권호안(보건복지부 인력경제팀장), 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장)
13	2006.10.18		노인과 복지(국민연금)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홍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14	2006.11.22		노인과 인권(학대, 자살)	이지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어대훈(경기북부노인예방센터 교육홍보팀장), 김현숙(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사무관)/김태현(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15	2007.2.21.	아동	한국의 아동권 실현 수준 및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이용교(광주대 교수), 곽숙영(보건복지부 팀장), 김인숙(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16	2007.3.28.		시설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신혜령(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미숙(보사연 팀장), 이영묵(은평천사원 사회복지사), 이석규(보건복지부 팀장)
17	2007.6.20.		과잉학습으로부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팀장),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홍경표(이천YMCA 사무총장), 박범이(사.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8	2007.7.25.	지표	사회권 지표개발 방안 모색	노대명(보사연 연구위원), 신명호(도시연구소 소장), 김안나(보사연 연구위원), 박시종(열린사이버대 교수)
19	2007.9.19.	주거권	주거와 인권 일반	김남근(민변 변호사),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	2007.10.31.		주거복지정책	김영아(건교부 사무관), 장영희(서울시정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승(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인옥(도시연구소 연구원)
21	2007.11.29.		주거와 인권(3)	김남근, 미류, 장영희, 홍인옥, 유영우(주거권실현국민연합 사무총장), 김혜승

6. 기타 주요 사업

(1)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우리 위원회는 2007년 8월 21일 대통령에게 약 6년의 활동성과 및 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는 오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6년의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현안과,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최근 위원회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및「인권교육법」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위원회의 지난 6년간 활동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인권 기준의 틀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일깨운 것이므로 때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며 위원회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설립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기구의 역할 수행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서의 의장 기구 역할 수행 등 선진 인권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힌 위원회를 치하하고, 앞으로 국제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위원회가 기능 특성상 정부 정책과 기조를 항상 같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 정부가 놓친 인권 문제를 꼭 위원회가 챙겨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2007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위원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7년 5월 30일 서울 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된 상반기 워크숍에는 인권위원 11인, 팀장급 이상 사무처 간부 31명, 외부 초청인사 4인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동 워크숍에서는 제4대 안경환 위원장의 취임 이후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이에 대한 인권위원의 의견', '외부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 방향', '각계에서

바라보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토론했다.

외부 초청 인사로는 한겨레신문사 정남구 논설위원, 명지대학교 법학과 김철수 석좌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2007년 11월 27일 서울 국제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하반기 워크숍은 인권위원 11인과 사무처 국장급 간부 6인이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차기정부 주요 인권정책 방향', '인권위원의 경험과 소회' 등이었다. 또한 동 워크숍을 통해 사무총장은 '상반기 워크숍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인권위원에게 보고하였으며, 인권정책본부장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3) 인권논문 공모

위원회는 인권지식기반 확충과 인권학술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인권문제의 초기 연구자, 인권시민단체 관련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5회째 인권논문 공모 사업을 실시했다. 2007년 인권논문공모의 주제는 아동·청소년과 인권, 기초생활 취약계층과 인권, 노동분야 취약계층과 인권, 인권교육 등이었다.

공모 결과 총 13건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가 인권 지향성,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우수작 2편, 가작 1편을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정민수(서울대)의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통해 살펴본 노동건강권과 안전보건제도 - 2005년 노말헥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접근」과 김푸른샘(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외국어고)의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공부방 인권수업을 중심으로」가 우수작으로, 안소정·정재숙(한동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제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제 3 절 평가

2007년 위원회는 전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수립 권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을 토대로 다수의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여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권고 및 의견표명은 모두 33건으로 전년의 24건에 비해 양적으로 37.5% 증가하였고,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 모두 14건 중 9건이 이에 해당됐다.

그러나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이 충실하게 향상되려면 단순히 인권적 기준에 따라 법제 개선의 여부와 방향을 정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방식보다는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보다 입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2006년의 북한인권에 관한 기본입장 - 이 문제를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라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 - 을 토대로 2007년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몽골·중국·태국 등지로의 국외 출장과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재외 탈북자 현황을 파악하였고 새터민 인권 증진을 위한 새터민 직업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새터민 문제, 국제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등 5가지 중점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여러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만, 조약 가입 이후 국내법규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도 관련 전문가, 인권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전화, 대면, 인터넷 상담 또는 순회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상담은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국민들에게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보제공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공감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복과 치유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권상담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구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상담과 함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국민들이 진정접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해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인권상담센터는 특히 상담과정에서 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과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진정사건 중에서도 위원회법 제32조에 규정된 명백한 각하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신속하게 종결 처리했다. 또한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처리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 시설 수용자의 민원에 대한 현장 해결 능력을 강화해 상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한편 위원회는 상담버스를 이용해 총 9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인권상담을 실시해 인권 취약계층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정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수인 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정신질환자 및 시설 생활인의 진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상담

(1)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상담은 총 38,531건인데 2005년 7,738건, 2006년 8,311건, 2007년 10,69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인권침해 41.5%, 차별행위 10.1%, 기타 48.4%의 비율이다.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입법관련, 재판 관련, 법률 문의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영역이 아닌 경우 등이다.

[표 2-2-1]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7년	**6,274**	**13,387**	**20,780**	**40,441**
2006년	4,187	10,737	19,558	34,482
2005년	5,617	9,136	18,684	33,437
총 누계	28,854	47,587	91,928	168,369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

[그래프 2-2-1] 연도별/월별 상담사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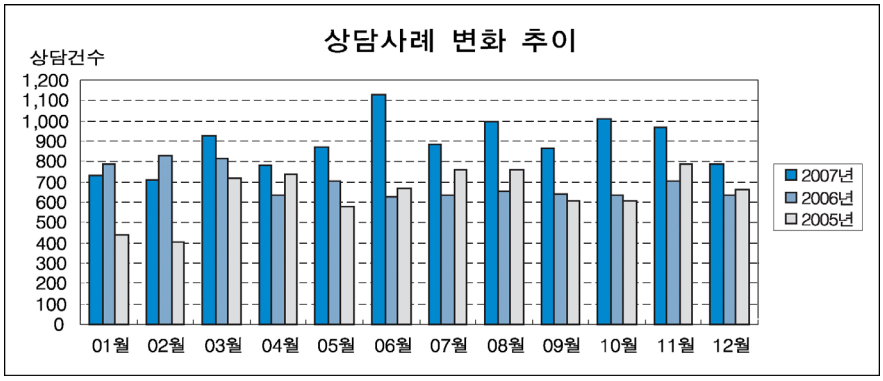

(2) 인권침해 상담

상담내용과 관련, 해당기관을 보면 지난 3년간 경찰이 가장 많았고(2005년 1,117건 34.8%, 2006년 1,168건 34.4%, 2007년 1,209건 27.3%), 다수인보호시설 상담은 2007년에 폭증(2005년 347건, 2006년 664건, 2007년 1,271건)해 경찰 관련 상담을 앞질렀다.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의 증가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진 정신병원 수용자나 가족들이 인권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단위: 건, %)

구분 / 월	총 누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총 누계	**38,531**	**100.0**	**15,998**	**41.5**	**3,902**	**10.1**	**18,631**	**48.4**
'07년	10,684	100.0	4,428	41.4	1,041	9.7	5,215	48.8
'06년	8,311	100.0	3,400	40.9	894	10.8	4,017	48.3
'05년	7,738	100.0	3,205	41.4	921	11.9	3,612	46.7

※ 상담 사례 실적은 [표 2-2-1]에서 면전진정 상담 건수를 제외한 숫자임.

[표 2-2-3]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단위: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3,205**	**3,400**	**4,436**
경찰	1,117	1,168	1,209
기타 국가기관	602	510	617
다수인보호시설	347	664	1,271
지방자치단체	341	352	466
검찰	318	264	298
기타 군사	160	147	171
구금시설	140	137	143
사법기관	82	83	91
보호시설	54	9	8
국정원	15	20	16
특별사법경찰	10	12	15
군 검찰(군대/수사)	5	15	5
입법기관	5	8	3
군 헌병	5	4	3
기무사	2	0	0
군 구금시설	2	5	1
기타기관	0	2	119

(3) 차별행위 상담

2007년 차별 관련 상담의 경우, 2005년 여성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된 성희롱 업무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180건 19.5%, 2006년 298건 33.3%, 2007년 364건 35%). 성희롱에 이어 많은 상담은 장애 111건(10.7%), 사회적 신분 95건(9.1%), 나이 66건(6.3%), 출신국가 46건(4.4%) 등의 순이다.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단위: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921**	**894**	**1,041**
성희롱	180	298	364
사회적 신분	159	118	95
기타	138	112	127
장애	88	73	111
나이	75	64	66
성별	74	42	40
병력	31	44	45
전과	30	13	17
용모·신체조건	25	25	30
출신국가	21	23	46
학벌/학력	31	10	11
임신·출산	14	23	21
출신지역	19	9	10
가족상황	10	9	11
혼인여부	9	13	13
종교	10	8	13
사상·정치적 의견	6	4	8
출신민족	0	4	5
성적지향	1	0	1
피부색	0	0	2
인종	0	2	5

[표 2-2-5] 기타 상담 유형

(단위: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3,612**	**4,017**	**5,216**
사인간 침해	811	1,063	1,285
회사	428	537	668
국가기관(상담용)	285	319	301
인권위 업무 문의(상담용)	210	357	616
입법/재판	213	225	215
법률문의(상담용)	164	164	212
재산권	160	133	141
위원회 업무불만(상담용)	178	145	177
법령제도개선	185	100	83
기타단체	108	141	182
인권위 관련 제안(상담용)	62	35	40
기타	808	798	1,296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발족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28,854건인데 이 중 80%인 23,101건이 인권침해, 13.9%인 4,000건이 차별, 6.1%인 1,753건이 기타 사건이다. 인권침해 사건은 2005년 4,199건(75%), 2006년 3,332건(79%), 2007년 5,068건(80.7%)을 차지했는데, 2007년만 보면 2006년 대비 52%(1,736건) 증가했다. 차별사건은 2005년 1,081건(19%), 2006년 826건(20%), 2007년 1,158건(19%)으로 나타나, 2007년 들어 전년 대비 40%(332건) 증가했다.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단위: 건, %)

구분 / 월	총 누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총 누계	**28,854**	**100.0**	**23,101**	**80.0**	**4,000**	**13.9**	**1,753**	**6.1**
'07년	6,274	100.0	5,068	80.7	1,158	18.5	48	0.8
'06년	4,187	100.0	3,332	79.6	826	19.7	29	0.7
'05년	5,617	100.0	4,199	74.8	1,081	19.2	337	6.0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그래프 2-2-2] 연도별/월별 진정사건 접수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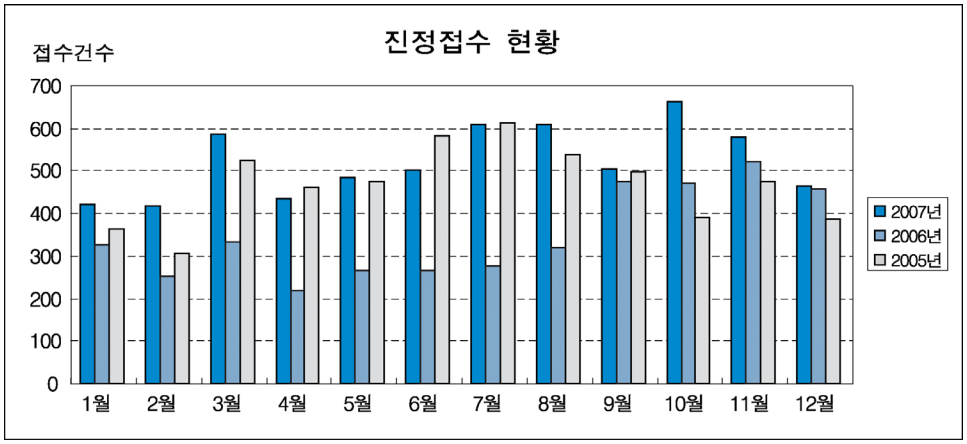

3. 인권 순회 상담 실시

위원회는 2007년 총 9차례에 걸쳐 인권 취약계층과 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순회상담을 위해 방문한 지역은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북 부안, 대구광역시와 경북 안동, 강원 춘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이다. 상담분야와 주제는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와 농민, 노숙자와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전북 부안군에서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후유증과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상담을 펼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순회 상담을 확대해 소외 계층과 지역민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인권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인권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4. 면전진정 처리

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나 다수인 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면전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발족 이후 2007년까지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모두 19,569건으로 이 중 31.5%인 6,173건이 진정으로 접수되었고, 46.3%인 9,056건이 상담종결, 21.7%인 4,242건이 신청인에 의거 철회되고, 96건이 조사가 진행중이다.

2006년 팀제 실시 이후 인권상담센터에 면전진정 전담반을 설치하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으로 종결 처리하여 진정접수율이 2006년보다 낮고 처리 소요기일은 단축(면전진정 처리소요기일 : 2005년 27.5일, 2006년 13.7일, 2007년 11.5일)됐다. 이는 상담센터에 설치된 면전진정 전담반 및 지역사무소의 적극적인 상담활동 등으로 현지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은 2006년에 비해 215건(637%)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함 보급, 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7]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연도별	전년 이월	신청	종결	%	철회	%	진정	%	상담종결	%	미처리	평균 소요일수
총 누계	/	**19,569**	**19,473**	**100.0**	**4,242**	**21.7**	**6,173(2)**	**31.5**	**9,056**	**46.3**	**96**	–
'07년	147	4,854	4,905	100.0	953	19.4	1,249(2)	25.5	2,703	55.1	96	11.5일
'06년	206	3,960	4,019	100.0	796	19.8	797	19.8	2,426	60.4	147	13.7일
'05년	283	3,383	3,460	100.0	894	25.8	1,168	33.8	1,398	40.4	206	27.5일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표 2-2-8] 연도별 다수인 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계	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07년	**255**	10	13	16	20	27	26	16	19	18	33	17	40
'06년	**40**	0	1	1	2	4	1	5	3	2	3	4	14
'05년	**10**	0	0	0	1	4	1	1	0	1	0	0	2

5. 안내 및 민원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안이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단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인 간 침해,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개인회사에서의 침해, 채무변제와 관련된 문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문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상담실)을 이용(69.8%)한 것이며, 다음이 우편/FAX(26.8%)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9]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

분류 / 월	합계	%	우편/FAX	%	인터넷	%	대통령비서실	%	참여마당 신문고	%	기타	%
총 누계	**32,583**	**100.0**	**8,725**	**26.8**	**22,739**	**69.8**	**239**	**0.7**	**841**	**2.6**	**37**	**0.1**
'07년	8,843	100.0	2,057	23.3	6,199	70.1	25	0.3	550	6.2	10	0.1
'06년	8,151	100.0	2,296	28.2	5,648	69.3	68	0.8	127	1.6	12	0.1
'05년	8,578	100.0	1,915	22.3	6,483	75.6	102	1.2	71	0.8	7	0.1

※ 총 누계는 2001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숫자임.

[표 2-2-10] 월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분류 /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년	8,843	653	681	816	694	638	766	728	762	830	841	706	728
'06년	8,151	559	612	957	684	791	733	661	682	635	562	604	671
'05년	8,578	528	512	962	870	740	575	930	849	629	629	617	737

[표 2-2-11]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8,578**	**8,151**	**8,843**
조사대상 안내	3,144	3,216	2,781
진정접수 절차안내	1,136	1,574	1,069
진정접수 안내	1,214	855	1,894
처리종결(회신 무)	749	818	1,842
질의회신	431	24	0
진정내용 보완 요구	175	30	123
타 기관 안내	106	107	34
법령 등 자료송부	148	85	124
공람종결	221	15	60
면전진정 안내	130	36	5
진정사건 처리안내	96	88	75
민원인취하	3	115	126
타 기관 이송	4	3	22
기타	1,021	1,185	688

제3절 평 가

2007년 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사건은 전년대비 50%, 상담은 25%가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줄 국가기관으로 위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이 위원회를 가장 먼저 접하고,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상담, 안내 및 민원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벌인 활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위원 위촉식 2007. 1. 30.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2007. 12. 5

첫째,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다.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역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과 민원업무 처리의 체계화, 내실화,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순회상담의 정례화와 확대다. 지난해 총 9차례의 순회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

자와 소수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활동을 펼쳐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일회적,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순회상담을 확대 강화하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홍성군 순회 상담 2007. 5. 15.

셋째,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강화다. 위원회는 2006년 사무처가 팀제로 개편되면서 면전진정 전담반을 운영하고,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진정함 실태조사와 보급 등을 통해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금시설에 비해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은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구금시설과 함께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진정권 확대를 위해 진정함 설치와 보급,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 요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권리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서 비롯되는 진정사건이 늘어나면서 점차 진정 내용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구금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진정사건 대비 각 43.2% 및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2006년 대비 2007년에 119%가 증가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 확대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2006, 2007), 보건복지부의 진정함 설치 지침 등 여러 가지 증가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을 위해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시설수용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권리 구제 및 보호 활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7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67건이 접수돼 이전 해보다 1,733건(52.0%)이 증가했다. 진정 접수는 2004년 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가 2005, 2006년에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년에 다시 대폭 증가했다. 2007년 종결한 사건 수는 4,757건으로 이전 해보다 1,508건(46.4%)이 증가했다.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에 위원회가 조사, 구제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4,757건으로 2006년보다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과 같이 종결사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 및 수사 의뢰 13건, 법률 구조 요청 2건, 조정 1건, 징계 권고 16건, 권고 146건, 합의종결 61건 등 인용 처리 건수가 모두 239건이고, 그 밖에 기각 1,215건, 각하 3,152건, 이송 116건, 조사 중지 35건이다.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건)

연 도	접 수	종 결	인용 사건							기각 이하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및 합의권고	합의종결	법률구조요청	조정	기각	이송	각하	조사중지
2002이전	2,833	1,365	3	16	2	8	0	0	0	136	26	1,174	0
2003	3,041	3,137	9	3	2	57	23	0	0	717	116	2,210	0
2004	4,627	4,931	6	2	0	79	54	4	0	1,280	148	3,306	52
2005	4,199	4,132	6	6	1	156	73	2	0	1,318	147	2,378	45
2006	3,334	3,249	17	2	0	164	23	1	0	933	70	2,018	21
2007	5,067	4,757	13	16	0	146	61	2	1	1,215	116	3,152	35
합계	23,101	21,571	54	45	5	610	234	9	1	5,599	623	14,238	153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그래프 2-3-1]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의 주요한 특징은 권고는 물론 징계권고 및 합의종결을 통한 권리 구제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징계권고는 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다. 한편, 합의종결이란 위원회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개입 또는 주도로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이 갈등을 신속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권리 구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건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내부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조사규제규칙」에 합의종결의 근거를 두고 있다. 향후 위원회법 개정 시 합의종결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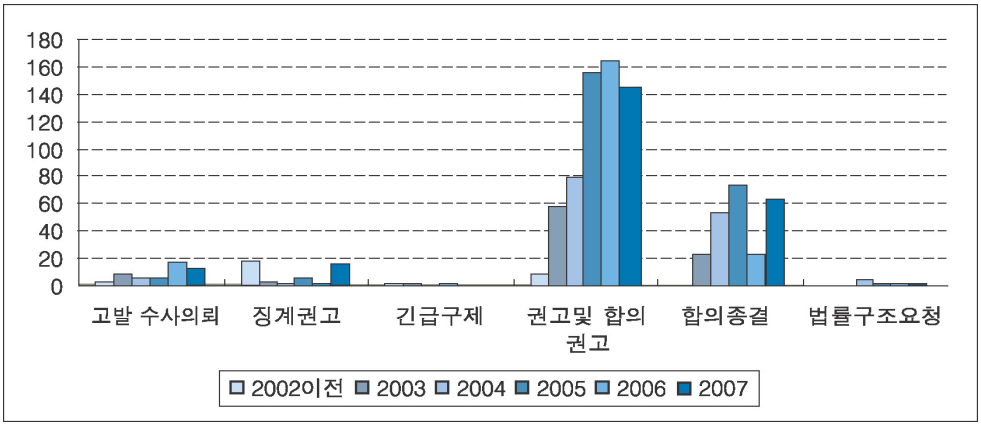

2007년 각하사건 3,152건은 진정 취하가 2,032건으로 64.5%,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59건으로 11.4%, 다른 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는 251건으로 8.0%, 위원회 조사 시효를 경과한 경우가 137건으로 4.3%, 진정내용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조사 부적절 사건 등 기타 각하사건이 373건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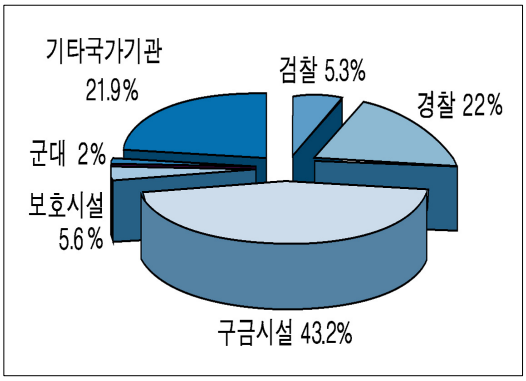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시설 관련이 9,984건으로 전체(23,100건)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이 5,092건으로 22%, 기타 국가기관이 5,067건으로 21.9%, 군대와 보호시설이 각각 452건(2%), 1,290건(5.6%)이다.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
합계	23,101	21,571	12	5	1	605	42	45	9	5	234	14,238	623	5,599	153	1530
		(100)	(0.1)	–	–	(2.8)	(0.2)	(0.2)	–	–	(1.1)	(66.0)	(2.9)	(26.0)	(0.7)	
검찰	1,215	1,143	2	0	–	30	1	1	0	2	2	849	15	228	13	72
경찰	5,092	4,812	6	0	–	205	4	27	2	2	155	2,897	87	1,381	46	280
구금시설	9,984	9,532	1	1	–	148	1	11	6	0	22	5,986	461	2,836	59	452
보호시설	1,290	911	0	0	1	69	32	1	1	0	8	427	23	334	15	379
군대	452	432	3	1	0	17	1	0	0	0	5	351	4	47	3	20
기타 국가기관	5,068	4,741	0	3	0	136	3	5	0	1	42	3,728	33	773	17	327

(2)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 개시 의뢰,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사건의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 검 찰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피의사실 유출 관련 인권침해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관이 진정인의 소재 탐문 시 관계인에게 진정인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피의사실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검토 중
징계권고	고소취하 강요 및 성추행 관련 인권침해	○○지청 검찰주사가 고소인인 진정인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를 진정인이 담당검사 및 ○○지청장에게 알렸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당시 담당검사 및 ○○지청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23	수용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 관한 정책권고	△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에게 벌금형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벌금미납자 체포·구인 시 제반 권리고지절차를 지키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권고 △ 검찰총장에게 벌금형 집행 시 벌금형의 기본취지와 벌금미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선행할 것을 권고 △ 검찰총장에게 형집행장 미발부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벌금수배자란 표현으로 지명수배를 발령하지 않도록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함께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전 건강검진 등 확인절차 마련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현행 노역수형자관리지침 보완 권고.	6.18	수용 (법무부) 검토중 (대검찰청)
권고	오인체포 관련 인권침해	○○지방검찰청 수사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하여 체포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	7. 9	불수용

□ 경 찰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부당체포 및 유치장 입감시 과도한 신체검사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과도한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심야조사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밤샘조사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법률구조요청	교통사고 재연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관련	○○경찰서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보호자를 격리시킨 다음 교통사고 재연을 시켜 피해자를 트럭과 재차 부딪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교통사고 재연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	2. 21	수용
권고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적법절차 위반	진정인은 택시기사로 택시승강장 앞에 손님을 내려주고 정차해 있는 중 ○○경찰서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 지시하여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불응하자 진정인의 팔을 꺾고 강제연행을 시도하는 등 과잉단속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 시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현장에서 진정인의 연행을 말리던 시민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권고	경찰관의 체포사실 미통지 관련	○○경찰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소속, 성명 미고지 관련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교육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권고	전공노 간부 검거시 개인정보 공개 및 위장메일 발송 등	경찰관이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검거를 위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위장메일을 발송하며 가족을 미행, 감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인정되는바, △ ○○경찰서장에게 개인정보 인터넷 공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 경찰청장에게 위장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미행, 감시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권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 관련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징계 권고	경찰관의 욕설 및 부당한 계구사용 관련	피해자(여성)가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을 때 유치장 근무자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해하여 병원후송을 위해 대기 중 경찰관이 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유치장 근무자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야간에 술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자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머리 위 침상에 묶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유치장근무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이외 피진정인들은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고소장 미접수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준강도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강도피해자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를 접수하지 않고 사건기록에만 편철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압수증명서 미교부 관련 인권침해	○○지방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병원을 찾아와 서류를 압수하면서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물품도 화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로 인정되는 바,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계고조치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경찰서 유치장 난방시설 미비관련 인권침해	피해자는 ○○경찰서 유치장 입감 시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난방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아달라는 말을 들은바 속히 난방시설을 개보수해주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난방시설을 개보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강제임의동행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대현치안센터 경찰관이, 진정인이 임의동행에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3. 5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징계 권고	변호인 접근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견이 안 된다며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3. 19	수용
권고	압수물품 서류누락 및 미반환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물건을 압수하면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방 및 비디오테이프도 함께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계고조치할 것 권고.	3. 19	수용
권고	인권위 면전진정 거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경찰서 유치장 수용 중 인권위 면전진정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유치장에서는 서면진정만 가능하다고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3. 19	수용
권고	심야조사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새벽까지 심야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2	수용
권고	경찰관의 이해관계자 관련 사건수사 미회피의 건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자가 사건 당사자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지 않은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4. 2	수용
권고	경찰조사 시 계구의 과잉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 수감 시 수갑과 포승을 차고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16	수용
권고	경찰관의 체포 시 폭행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욕설을 하고 구둣발로 차고 밟으며 폭행하고 진정인을 경찰차 뒷자석에 태운 뒤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 및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16	수용
권고	구속영장발부사실 미고지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진정인에게 바로 고지하지 않고 약 62시간이 경과한 후 고지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30	수용
권고	체포 시 경찰의 폭행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	4. 30	수용
권고	경찰조사 시 소지품 부당압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소지품(휴대전화, 신용카드)을 아무 설명 없이 압수해갔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권고.	4. 30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진정인이 성폭력을 당해 ○○경찰서 수지지구대를 찾아가 상담하고 온 이후 전화통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신뢰상실, 가정파탄, 가정폭력 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죄책감,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5. 7	수용
권고	소년범 조사 시 보호자 미입회 등 관련	○○경찰서 경찰관이 소년범들을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형사과 사무실 내 흡연실로 데려가 조사하고, 보호자들을 조사과정에 입회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특별교양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의 현 소속 기관장들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5. 28	수용
권고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 관련 인권침해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진정인을 훈계하고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5	수용
권고	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폭언 및 보호조치 미흡 등 관련	피진정인이 피의자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조사하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5	수용
권고	경찰관의 위법한 집회금지통고서 송달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금지통고처분을 하고, 금지통고서도 서면으로 즉시 송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인에게 집회 금지통고 통지서 송달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6. 5	수용
권고	경찰관의 위법한 심야조사 및 타액 채취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하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 타액을 채취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5	수용
권고	집회방해 및 과잉진압 관련 인권침해	대구경북건설노조 노조원들의 ○○경찰서 앞 집회시위 시 경찰이 병력을 집회장소에 사전배치하여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불법시위로 유도하였고 강제연행을 지시하며 곤봉과 방패로 얼굴을 가격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과잉진압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집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및 해당 중대장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18	수용
권고	경찰관의 수색 시 적법절차 위반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강제 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6. 18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심야조사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새벽3시까지 진정인을 심야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18	수용
권고	경찰관의 밤샘조사 및 불공정 수사 등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14시간 동안 밤샘조사하고, 경사 ○○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조사참여관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인 경사 ○○을 주의조치하고, 경장 ○○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28	수용
권고	경찰관의 반말 등 인격권 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반말과 함께 협박조로 말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28	수용
권고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주거지에 대한 영장집행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사전 통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해주지 않았고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친북활동을 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담당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	7. 9	수용
권고	경찰조사 시 진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체포 당시 부상한 상태였으나 ○○경찰서 경찰관이 응급실에 입원한 진정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진료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7. 20	수용
권고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집회 중인 하이텍알씨코리아 노조원을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연행하다가 10분 만에 풀어주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체포과정에 미란다원칙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본래 체포하고자 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설명 없이 풀어준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 및 경비교통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7. 20	수용
권고	집회시위 중인 노조 조합원 연행 시 폭행 및 부당한 계구사용 등	경찰관이 집회시위 중인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집회현장 및 체포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를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캠코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조합원 5명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로 조사 및 외부접견을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위진압 중 폭력을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 체포상황을 근접촬영 만류에 항의한 피해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할 것,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시 수사과 지휘책임자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수사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계구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8. 13	수용
권고	경찰관의 욕설 관련 인권침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당신 체포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시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당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8. 28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경찰관의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인권침해	경찰관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두고 전자충격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청장에게 모든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11	수용
징계 권고	경찰관의 신변보호조치 미흡 관련 인권침해	살인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경찰서에 가해자로부터의 살인 미수 범죄신고 및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그 후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묵살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은 다음날 가해자에게 살해됐다는 내용으로,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경찰청장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함.	9. 14	검토 중
권고	경찰관의 욕설 및 폭행 관련 인권침해	전국건설노조 경기지부 노조원들이 캠코더 촬영을 하며 경찰치안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사복경찰 20여 명이 갑자기 다가와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폭행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0. 16	수용
권고	경찰관의 동의 없는 소변검사 관련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마약복용 여부를 알고자 진정인의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0. 26	수용
권고	경찰조사 시 부당한 계구사용 관련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2시간여 동안 조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10. 26	수용
권고	경찰관의 과도한 체포행위 관련	진정인은 새벽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을 태워 환기를 시키고 잠을 자려는데 소방관이 집안 확인을 요구해 아무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 하자, 잠시 후 경찰관이 또 집안 확인을 요구해 경찰관 1명만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여러 명이 함께 들어오려 하여 현관문을 막아선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며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정인의 목을 졸라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라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0. 26	수용
권고	경찰수사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권침해	2006년 영어학원 강사가 전직 포르노 배우 활동 사건 입건보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이를 언론에 흘려 피해자의 얼굴, 신상 등이 사회에 공개됐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과 웹사이트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할 것, 소속 수사관련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 14	수용

구 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징계 권고	○○경비단 부소대장의 가혹행위 관련	○○경비단 부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축구를 강요하고 축구 중 심한 욕설을 하며, 대원을 강제로 닭장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고, 부대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대원들에게 금지된 기율행위를 실시하고, 위경근무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이빨을 부러지게 한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 지휘감독자인 전 소대장에 대하여 계고조치할 것, 전경대장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기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경비단 기간요원들에게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 14	수용
권고	위법한 임의동행 관련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정인을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체포하고 불법구금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교육 권고.	12. 18	수용
권고	체포 및 조사과정 무단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MBC기자와 동행하여 진정인들의 체포 및 조사과정을 임의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것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방송됐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방송사 등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강구 권고.	12. 18	수용
권고	농성장 비상출입구 등 용접 · 폐쇄 관련	○○ 강남점 등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봉쇄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이 1개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과 방화시설을 용접 · 폐쇄했다는 내용으로, △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할 것, ○○지방경찰청장을 주의조치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물 내 경비분야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할 것을 권고, △ ○○소방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시행할 것 권고.	12. 18	수용 (소방서) 검토 중 (경찰청)

□ 구금시설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수용자 안과치료 소홀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왼쪽 눈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교도소에서 수술을 지연시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내용으로,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 22.	수용
권고	자살한 수용자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건	○○구치소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	1. 22.	수용
권고	치료거실 과밀수용 및 바닥난방 미설치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 거실치료사동이 과밀수용되어 있고 거실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경우 위생 등을 고려하여 '전국교정시설수용구분에관한지침'상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준수하고 병사동과 같이 거실치료사동에 바닥난방을 설치할 것을 권고.	1. 22.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환자수용자에 대한 간병부 활용 등 관련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교도소 측이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수용자 간병부의 역할, 인력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진정내용은 각하하되, 법무부장관에게 간병부가 병사동 내에서 환자수용자를 간호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용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조사 중 ○○교도소에서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외 비공식적으로 '담당근무인수인계부'를 별도로 작성, 임의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교도소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2. 12.	수용
권고	수용자 건강진단 미실시 및 건강진단부 허위기재 관련	○○구치소에서 행형법시행령에 정한 수용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건강진단부에는 이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것에 대하여 ○○구치소장에게 의무과 전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직무 관리, 감독 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3. 12.	수용
권고	수용자의 민사재판 기일 시 미출정 관련	○○교도소는 진정인의 민사재판 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재판 명시 기일에 출정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교도소장에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3. 12.	수용
권고	수용자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인권침해	○○구치소 수용 중인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에는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정인은 정기검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치소장에게 의무과 전 직원에 대한 소관업무교육 실시 및 직무관리 감독 철저,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4. 23.	수용
권고	재판 시 계구사용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중 ○○지방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교도관이 계구를 사용한 채로 재판을 받게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및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5. 28.	수용
권고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관련	○○교도소 교도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5. 28.	불수용
권고	형집행정지자 부당 주민등록이전 관련 인권침해	○○구치소 교도관이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진정인의 주소를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시설(미신고시설임)로 이전하였고, 해당 시설 원장에게 진정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임을 누설하였으며, ○○제2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자가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 전입신고를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 법무부장관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계할 것, 인계 시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구속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시설에 입소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구치소장에게 구속집행정지자가 미신고시설로 인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동의서시설입소신청서 등을 제출받을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집행정지자가 보장시설, 의료기관에 인계되는 것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권고.	6. 25.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관용작업취업자 부당업무지시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 교육교화과 교도관들이 관용작업취업자인 진정인에게 편지 검열 및 분류, 서신대장 작성 등의 업무를 시켜 타 수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 법무부장관에게 직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관용작업취업자가 타 수용자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및 교육교화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	7. 16.	수용
권고	교도관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관이 접견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진정인에게 "이 새끼 상대 못할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8. 10.	수용
권고	교도관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관이 출정자대기실 및 호송버스 안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고, 호송버스가 출발하기 전 포승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의자에 묶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17.	수용
권고	서신발송 불허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서신발송을 불허했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소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9. 17.	불수용
권고	교도소의 외부병원 진료거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현재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 등에 대해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이 외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9. 17.	수용
권고	수용자 간 서신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불가능하다며 불허됐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동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9. 17.	수용
권고, 법률구조 요청	의료조치 미흡관련 인권침해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진정인의 치료를 방치하여 장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11. 16.	수용
권고	의료조치 미흡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중 팔꿈치를 다쳤으나 보건의료과장이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작업을 수행한바, 이후 골절로 판명됐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의 검진 결과 경미한 금이 발견되어 안정을 취함이 필요하고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상 부위가 악화되어 골절에 이르게 된바, ○○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권고.	11.16.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내복반입불허 관련 인권침해	○○구치소가 자체 계획에 의거 특정일부터 수용자들에게 춘추복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추위를 느끼는 것은 수용자마다 개인 차가 있는데 구치소 내부 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특정일자부터 춘추복을 지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되므로 ○○구치소장에게 개선 권고.	11. 16.	수용
권고	징벌위원회 출석통지 지연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가 진정인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1. 19.	수용
권고	보고 전 처리미흡관련 인권침해	○○교도소 교도관이 진정인이 제출한 보고문 및 진정서를 절차에 따라 출원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회수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11. 19.	검토 중
권고	가스총 등 보안장비사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	○○교도소 교도관이 진정인의 얼굴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여 화상을 입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안장비관리규정」에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12. 14.	수용
권고	수용자 면도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형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관구계장이 면도를 강요하여 어쩔 수없이 면도했다는 내용으로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12. 14.	검토 중
권고	교도관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소 치과공중보건의가 진료대기실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12. 14.	수용

□ 보호시설 관련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정신병원의 진단서 무단발부	진정인의 진단서를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부했다는 내용으로, 담당의사가 지원센터 직원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부한 것이 인정되어 ○○병원장 및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재발방지 권고.	2. 12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조각상 관람객 유치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안내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환자들을 강제로 교회예배에 참석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신병원장에게 관광객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강제로 실시하는 예배 등을 중지할 것을 권고.	2. 12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통신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환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강박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신병원장에게 환자의 입원, 전화제한을 포함한 행동의 자유제한, 격리 및 강박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것과 이에 대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구청장에게 ○○정신병원에 대해 경고조치 등 필요한 처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조사 중 ○○정신병원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2. 12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행동자유제한 등 관련	입원환자의 편지 검열 및 발송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불허, 부당 격리·강박에 대한 내용으로 ○○정신병원장에게 제반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광역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12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전화통화제한 등 행동의 자유 제한 등	화장실 칸막이 또는 문이 없고 화장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용변모습과 목욕장면을 간호사실에서 볼 수 있고, 전화제한과 면회 감시 등 환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보건소장을 기관경고할 것,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향후 관리감독 철저를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욕실 등 기본 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정할 것과 정신의료기관의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권고.	4. 9	수용
권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에게 입원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환자입원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법령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시장에게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4. 9	수용
권고	부당한 정신병원 계속입원 관련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진정인 누나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계속입원조치하였고,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환자입원 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직무교육실시를 권고. ○○광역시장에게 정신보건법상 계속입원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과 ○○병원장에게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4. 9	검토 중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정신병원의 퇴원 불허 관련 인권 침해	환자에게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병원장에게 환자입원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5. 14	수용
권고	정신병원 입원 및 입원연장시 규정 위반 관련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진정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퇴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도지사는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심의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원장에게 환자입원 및 입원연장 시 제규정을 준수하고, 법으로 규정된 입원환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5. 2	수용
고발	정신병원의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및 환자 폭행	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고 퇴원 및 입원을 허위기재하였으며, 보호사 김OO과 윤OO은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의 손에 볼펜을 끼우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전·현직 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 전·현 병원장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관할 보건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과 해당 보호사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7. 9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계속 입원심사청구 절차 위반 관련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진정인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규정의 준수를 권고하고,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권고.	7. 16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정신병원의 입 · 퇴원절차 위반 미의료인력 부족 등 관련	부당한 입 · 퇴원 절차, 전화 및 서신 제한, 정원 외 환자 수용, 부당한 작업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환자 입원 및 입원 연장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 입원환자 작업치료에 있어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피진정인의 입 · 퇴원 절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피진정인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	7. 16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전화사용제한 관련 인권침해	1주일에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전화통화내용을 감시한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환자들의 통신제한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7. 23	수용
권고	정신병원 입원시 서면통지 의무 위반 관련	진정인의 입원 당시 입원사유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입원환자의 권리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병원장에게 향후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에 대해 입원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입원환자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8. 23	수용
고발	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등 관련	과도한 전화 제한과 환자수용, 부당한 강제입원과 격리 · 강박을 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행려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 및 지연혐의 등에 대해 고발, ○○광역시장에게 ○○병원의 의료인수 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체계적인 행려환자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타과 전문의 진단으로 환자들의 입원에 동의한 해당 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 관내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권고, ○○구청장에게 ○○병원의 정신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감독철저를 권고, ○○병원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의 즉각적 시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을 권고.	9. 17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관련	부당하게 강제입원됐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정인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제의 동의에 의해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정신병원장에게 재발방지 권고를 하고 ○○시장에게 ○○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9. 17	수용
고발, 법률구조요청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관련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 환자재물 편취, 불법감금,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및 의료비 부당청구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불법입원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 요청.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것 권고. 피진정병원장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행할 것 권고.	10. 8	수용
고발	맹아원장의 생활인 성추행, 폭행 등	전 ○○맹아원장이 생활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생활인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서류상 부부로 만드는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그 폭력행위를 방조한 시설장을 고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시설로 전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생활인 인권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도지사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맹아원의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취할 것 권고.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맹아원장에게 인권침해의 즉각 중지 및 시정,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행을 권고.	10. 18	일부수용
고발, 징계권고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입원절차 관련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환자들을 강박하며 강박일지를 허위기재하고, 미성년자 환자도 장시간 동안 강박하고,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없이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입원동의서 등을 위조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고,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환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으며, 관할보건소 및 구시청은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병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학대, 감금혐의 및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을 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원무팀장 ○○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전 원무팀장 ○○을 감금 혐의로 고발. ○○구청장에게 공무원 ○○에 대해 징계권고. ○구청장에게 ○구 보건소장 및 직원 ○○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아동정신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권고.	10. 25	일부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정신병원 환자 간의 성접촉을 이유로 한 격리조치 관련	진정인이 남자환자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2차례 진정인을 격리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해 와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수강 권고.	11. 16	검토 중
권고	정신병원의 입퇴원절차 위반 및 부적절한 처우 등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있는데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감금생활을 하고 있고 ○○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식판 나르기 등 노동을 시키며 전화 및 편지 규제가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간호사 권한으로 환자를 독방에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신병원장에게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할 것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고 병동 작업치료 관련 자체 계획 마련할 것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환자행동의 자유 및 격리 강박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입원환자들의 진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을 권고.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장이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로서 입원동의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1. 19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관련	입원절차 위반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준수할 것을 권고.	12. 14	수용
고발	아동양육시설장의 폭언, 폭행 등 아동학대 관련	전 ○○원장이 아동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고 단체기합을 주었으며 사택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부모와의 면회 · 외박 · 외출 ·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며 고학년 아동들에게 저학년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시킨 것 등에 대한 내용으로 피진정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구청장에게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2. 14	수용

□ 군대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수사의뢰	군대내 가혹행위 및 의료접근권 침해 관련	피해자는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는데 완치 이전 무리하게 퇴원시키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만기전역 이후 집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폭행부분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 결과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12. 18	검토 중
권고, 법률구조 요청	군복무 시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건	피해자가 ○○사단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본부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사망심의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사단 ○○단장에게 피진정인 2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찰청장, 기획예산처장관, 국방부장관에게 △전의경의 과다출동 및 근무로 인한 만성과로 등에 대한 대책으로 원칙적 주5일 근무제 도입, 휴일사전예고제 시행 △복무 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비민주적 비인권적인 내무생활문화 개선 방안 마련 △소원수리제도 보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강화 및 시스템 구축, 실질적 의료권 보장 △내무반 시설 개선,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교통비 현실화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 책임 강화 △지휘관의 획일적 지휘책임 완화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 개정 △영창제도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 마련 등 권고.	2. 21	수용
권고	해군부대의 위탁이발소에 대한 일방적 영업장 폐쇄공고 관련	진정인은 해군부대 앞에서 이발소를 위탁운영하는 자로, 신규 면도사가 자진해서 그만두자 새 면도사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이발소 출입문에 사업정지공고문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군 ○○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 대한 계속적인 휴직처분 관련	진정인은 공군 ○○비행단 근무 중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바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처분을 계속하고 봉급의 반액만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공군 ○○비행단장에게 진정인에 대해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	5. 28	불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사병의료권 침해 관련	○○사단과 국군○○병원, 국군○○병원이 ○○사단 방공중대 복무 중 허리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의료조치를 지연하고 방치하는 등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파견 및 위로휴가 시 군의관 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국방부장관에게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파견 · 연수 · 휴가 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	7. 9	수용
권고	사병의료권 침해 관련	○○사단과 국군○○병원이 육군 ○사단 복무 중 뇌수막염에 걸린 피해자의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료를 소홀히 하여 병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군병원 후송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후송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었고 3차 의료기관인 군병원에 이르기까지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 여부를 떠나 군의료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판단되는바, 국방부장관에게 입원환자가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	7. 9	수용
권고	군복무 중 농약살포작업 사실확인거부 관련	진정인은 ○○사령부 복무 중 유실수반에서 지속적인 농약살포작업을 하여 제대 후 림프종 암에 걸린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농약살포작업 관련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군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내에서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용하면서 병사들에게 농약살포작업 등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 감독할 것을 권고.	8. 13	수용
권고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관련 정책권고	△ 국방부장관에게 징병단계에서 인성검사 전문성 강화대책 강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복무제 편입 조속히 이행, 시설환경 개선 · 고운말 사용 ·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대책 마련, 간부양성 및 보수교육프로그램에 부적응병사관리 및 상담기법 과목 편성, 기본권상담관제도 이행을 위한 근무환경 및 신분 보장, 비전캠프 관련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대책 마련, 보호관심병사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비밀보장 대책 마련 및 보호자 등과 연계한 관리,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개정 등을 권고 △ 병무청장에게 징병단계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확충 등 복무부적응 예견자를 검사단계에서 선별해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 권고.	12. 18	검토 중

□ 기타 기관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및 관할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수시로 당하였고 해당 학교 및 교육청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교육청교육장에게 피해자의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할 것과 ○○초등학교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 ○○교육청교육장을 주의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 신문 시 사생활 침해	○○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진정인의 가족사항 등을 주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으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두발,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 인권침해	○○고등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시 학생 대부분이 두발규정의 현행 유지를 원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두발규정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을 권고.	1.15	검토 중
권고	교사의 병가불허와 관련한 인권침해	○○중학교장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진정인이 출산 후 몸이 쇠약해져 병가를 신청하자 보류하다 불허했다는 내용으로, ○○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학생 퇴학처분	○○고등학교장이 부당한 절차 및 규정에 의해 진정인을 퇴학처분했다는 내용으로, 학교장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처분 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1. 15	수용
권고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관련 인권침해	탈북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여 신상에 불안을 느끼게 하고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했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권고, 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을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역언론사에 관련자료의 배포를 지시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 23	수용
권고	이적한 학생선수 선수활동 제한 관련 개선 권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수로 전학후 1년 안에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았으나 한국○○연맹이 이적동의서 발급 후에도 1년간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협회장에게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 산하단체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을 벗어나 선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한국○○연맹회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 후에도 1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21	검토 중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보건휴가 신청 시 인격권 침해	○○중학교장이 행정실 직원이 보건휴가 신청 시 생리주기를 물어보거나 '교사들은 보건휴가를 쓰지 않는데 행정실 직원들만 쓴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권고	행정대집행 시 폭력 진압 관련	○○사업소가 ○○공원의 장애인 야시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폭력으로 진압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행정대집행 시 피해자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공동폭행을 당하고, 폭행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행정대집행시 안전사고 방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사업소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21	수용
권고	○○청사 출입 시 전화번호 기재 요구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청사를 방문하여 방문증을 교부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나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아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청사 방문자의 전화번호 기재는 출입허용의 필수사항이 아닌바, ○○관리소장에게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상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소속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5	수용
권고	의무소방원 공상심의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는 ○○광역시소방본부 의무소방원 근무 중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영구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바, 공상인정 및 치료비 지급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피해자에 대한 공상심의 시 질병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바, ○○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피해자의 부상원인이 복무수행 중에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3. 5	수용
제도개선 권고	방송 프로그램의 사생활 침해 관련	국가기관이 ○○와 공모하여 몰래카메라 촬영방법으로 모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하되, 피진정인들에게 방송사의 촬영협조 시 사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19	수용
권고	압류물품 미반환 관련 인권침해	과일노점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진정인의 파인애플 상자를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인정되는바 ○○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압류물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 담당자 주의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3. 19	검토 중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의사면허증 뒷면 행정처분 내역기재 관련 인권침해	의사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호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약사·한약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제3항의 내용도 개정할 것을 권고.	4. 2	검토 중
권고	○○청 종합상담소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요구관련 인권침해	○○청 종합상담소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청 종합상담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조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화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도록 하는바, ○○청장에게 종합상담소에서 민원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4. 2	수용
권고	호적입력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읍에서 미혼인 진정인이 결혼한 것처럼 호적에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 동생의 혼인내용을 진정인의 호적에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호적이 원상회복됐다 해도 호적 기재의 잘못은 진정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직원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4. 2	수용
권고	경찰관의 이해관계자 관련 사건수사 미회피의 건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자가 사건 당사자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지 않은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4. 2	검토 중
권고	교사의 학생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중 담배를 피우고 말대꾸를 한다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난타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4. 16	수용
권고	승용차요일제 신청 관련 사생활 침해	○○동에서 진정인이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전자태그를 수령하여 차에 부착하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과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30	수용
권고	범죄현장사진 배포 관련 인권침해	○○시가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드러난 범죄현장 사진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5	수용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동사무소의 진단서 복사 · 유출 관련	○○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의 진단서를 진정인의 모친에게 복사 ·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구청장에게 ○○사무소장을 주의조치할 것과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8	수용
권고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성전환자 인격권 침해	진정인은 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로, 징병신체검사 시 법원결정문 및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두 명의 의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하체 부위 검사를 받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병무청장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는바,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위 규정 개정 권고.	7. 20	검토 중
권고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 시 국가공무원법 적용 관련	○○교육청이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 체결 시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했다는 내용으로, 방과후 보육교사는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으로 근무하도록 한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8. 13	수용
권고	운동선수 이적동의 불허 관련 인권침해	초등학교장이 야구선수로 활동 중 전학한 피해자의 이적동의를 불허하여 현재 피해자가 선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에게 이적동의서를 발부해줄 것을 권고.	8. 28	수용
권고	교육청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인인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도교육청에 성희롱고충처리심사를 청구한바, 교육청이 조사과정 및 사후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도교육감에게 향후 성폭력사건의 조사과정 및 사후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10. 26	수용
징계 권고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광역시 공무원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의 피켓과 입고 있던 소복을 카터 칼로 찢어 탈취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경찰서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아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징계할 것과 소속 건축과 및 총무과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 14	검토 중

2. 검찰 · 경찰 · 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1) 검찰 수사관의 고소인 용서 강요 및 성추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 이모 씨(여, 51세)는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진정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인을 고소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진정을 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인 검찰수사관이 진정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만나자고 전화하였으며,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을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진정인을 끌어안고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진정인은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만나 검찰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들을 알리고 관련된 녹취록을 보여주었음에도, 담당검사와 지청장은 담당수사관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합의 등의 권유는 양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게는 이득이 없고 진정인이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여성피의자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여성피의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고 끌어안고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점 △담당검사와 지청장이 진정인이 성추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녹취록을 통해 알았음에도 담당수사관이 부인한다는 점과 성추행이 친고죄임을 이유로 방치한 점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헌법」제12조 제1항, 「인권보호수사준칙」제38조, 「헌법」제10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지휘감독자인 담당검사 및 ○○지청장에게는 주의조치할 것을 각 권고했고, 해당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사관에 대하여는 징계(정직)처분을, 지휘감독자들에게는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2)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위원회에는 벌금형의 집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벌금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노역장 유치 관련 진정 등이다. 또한 벌금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구금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벌금형 집행과정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1]에 따라 '벌금형 집행과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송달 및 형집행장, 노역장 유치의 실효성 등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2006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노역장 유치자에 대해 '벌금형 집행과 노역수형자 처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에서 제기된 송달, 집행, 노역장 유치 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먼저, 송달을 받지 못한 채 형집행장에 의해 체포되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신체구금을 당할 정도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미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입력 장치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는 체포·구인과정에서의 문제로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있음에도 체포·구인

1)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 권리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족에게도 체포·구인 및 유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인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제반 권리고지 절차를 이행하고, 가족에게 체포·구인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미납 시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먼저 신체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 12조에 보장된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 집행에 있어서 벌금형의 기본취지와 벌금미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벌금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벌금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집행보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선행하도록 권고했다.

노역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노역유치를 하여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벌금미납자 체포 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노역장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전 건강검진 등 노역장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하였고, 또한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 연납·분납제도, 노역장유치집행 면제제도 등 대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의 활용을 통한 벌금미납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노역장유치자의 일반 처우부분(전화사용, 접견 등)에 대해 현행「노역수형자관리지침」을 보완하여 처우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는 벌금형 집행과정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 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각 권고하게 된 것이다.

(3)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요청 묵살과 관련된 인권침해

살해 위협을 받아오던 피해자 김씨(亡人, 여, 44세)가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고의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재차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것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므로 권리구제를 구한다며 진정인 김모 씨(남, 44세)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07년 1월 10일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신변보호 요청이란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살해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가해자를 구속시켜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며, 경찰관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당해 눈이 충혈되었음을 목격하였고,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구속수사는 어렵고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해 피해자가 결국 신고를 철회한 사실이 당시 경찰서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는 최초 신고일 이틀 후인 2007년 1월 12일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며 살해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살해위협을 당하여 같은 경찰서에 신고했던 사실과 상해진단서까지 제시해가며 진술하였으며, 가해자의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으로 '접근금지'에 대해서도 문의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나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형사과에 넘기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경찰권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명·신체에 해를 입었고, 향후 발생할 염려가 농후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제외)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

이 미온적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인 2007년 1월 13일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묵살한 결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경찰청장에게 수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산하 기관에 소속된 경찰관들에게 '인권·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유족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함께 요청했다.

(4) 1인 시위 및 집회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 조모 씨(여, 50세)와 피해자들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철거민들로서 2007년 5월 28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앞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공무원이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 및 집회 시위자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체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년 1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10일 및 16일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달 29일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한겨레 THE HANKYOREH 2007년 12월 28일 012면

인권위, '1인시위' 방해 광주시공무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회 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경찰관 경고 조처 등을 권고했다.

철거민들인 조아무개(50)씨 등은 "광주시장 관사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하던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인 시위자 등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광주시장 관사 앞에서 1인 시위자 등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앞으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집회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제지 또는 시정하려는 여하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한 사실이 전무한 점에 비추어 이는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의무,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 및 법 앞에서의 평등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1인 시위 및 집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피진정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관련 동료직원 및 부서 직원들에 대하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한편 보호의무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보호의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5)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 A모 씨(남, 25세)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하여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지구대 내 대기석인 도주방지를 위한 철제의자에 한쪽 손목이 수갑과 쇠사슬로 고정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거나 경찰관과 대화를 하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고, 도주를 한다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진정인의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면서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하여 확인했다.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진정인이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권력적 지위에 있는 자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행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경찰서장은 국가인권위의 진정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더불어 범죄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6) 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절차 무시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권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혐의사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며 고모 씨(51세, 남, 전교조부산지부 대표)가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 중이던 피진정인들은 오전 7시경에 진정인이 대표로 있는 빈 사무실을 아무도 없을 때 압수수색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혐의사실과 피해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을 공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거주자 등의 영장집행절차 참여권 및 이 참여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

서울신문 2007년 12월 15일 010면

"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인권침해"

인권위, 통보없는 압수수색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입건도 되기 전에 경찰이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전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조부산지부 대표인 고모(51)씨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사전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7시 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공지 없이 고씨가 대표로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브리핑 자료에서 "관련자 4명 등은 A모임 회원으로 가입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들에 대해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하는 경우'에는 영장집행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찰이 밝힌 막연한 '증거인멸의 우려'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무실 관계자가 근무 중인 일과 시간 중에는 영장집행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형법」이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피공표자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보호보다 중대하고 공표를 신속히 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입건도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헌법」 제10조 전문 및 「형법」 제307조 등을 위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7) 지하매장 농성장의 용접 봉쇄에 의한 인권침해

□ 긴급구제 결정 조치

○○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경찰 등이 농성장으로의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여 농성 중인 피해자들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농성자들의 가족면회 제한 등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있으며, 경찰 및 사측이 방화셔터를 내린 후 용접·봉쇄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신체안전의 위협 및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등을 했다.

현장 조사 결과, 생필품 등은 검사 후 반입문제와 면회제한 등 출입통제는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출입구 여성용품 검사는 부적절하므로 여경을 배치하여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특히 농성장인 지하1층 매장에

대하여 1개의 출입문을 제외한 13개의 출입문과 방화셔터를 쇠막대기나 쇠사슬 등으로 용접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화재 시 등에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출입구 용접봉쇄 조치를 직접 목격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모멸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심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주체의 감독기관인 관할 소방서장과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을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긴급구제조치를 취하였고, 위와 같은 출입구 용접봉쇄 조치가 경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용접봉쇄 지휘·요청 주체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계속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 농성장 비상출입구 등에 대한 용접봉쇄 지휘 주체 등에 대한 조사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용접·봉쇄하도록 한 지휘 요청 주체에 대한 조사 결과, △경찰청 등 상급청 경비지침 및 시달 내용 등 경찰 내부 서류문건에서 1~2개소를 개방하고 여타 출입구를 폐쇄토록 한 점 △회사 측 고위관계자가 경찰의 지휘·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표명 동영상 자료 및 이를 현장에서 취재한 다수 기자의 진술 △당시 경찰의 요청사항 등 정황에 대한 회사 측 관계자 및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비상출입구 등을 폐쇄해달라고 반복하여 사측에 요청했다는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 △소방점검에 참여했던 관할 소방공무원들의 진술과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성장 방화시설 및 출입구 용접 폐쇄는 경찰의 지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 판단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과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및 같은 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당시 농성현장 경비지휘 책임이 있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고 조치하고, 당시 ○○지역 농성 관련 총괄지휘 책임이 있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시설물 내 경비업무 수행 시 유사한 안전 및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하게 된 것이다.

(8) 전경 가혹행위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며 현역 전경대원이 진정을 했다.

조사 결과, 부소대장인 피진정인은 △대원이 부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하였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바벨을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하여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다양한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주 2~3회 등급을 매기어 욕설을 하며 축구를 강요하였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했다. 특히, 경계 근무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 한 폭행사실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은 물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이 △대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눈치는 챘다고 진술한 점 △기율행위를 사전 보고받았다고 한 점 △피진정인이 대원의 치아를 부러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경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대장의

경향신문 2007년 12월 14일 012면

전경부대 '가혹한 얼차려'

뺨때려 이 부러뜨리고 '닭장' 감금

인권위, 인권침해 경장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현역 전투경찰 대원이 낸 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 진정 내용을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실무자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제주지방경찰청 산하 한 전경 부대원으로부터 "소대원에 대한 부소대장의 가혹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건 지난 9월.

조사결과 이 부대의 인권침해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소대장인 ㄱ경장은 평소 근무 기강을 내세우며 부하 대원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해왔다. 지시 불이행, 근무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대원을 부대 내 닭장 안에 가두거나, 팔굽이와 역기를 채운 군장을 멘 채 구보를 시켰다. 근무 중인 대원의 뺨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다.

또 대원 자신이 흡연물을 발로 차 본인의 얼굴에 튀게 하는 기상천외한 얼차려도 이뤄졌다.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조차 매주 2~3차례 실력 등급을 채점 당해가며 축구를 해야 했고, 경기에서 진 팀은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받았다. ㄱ경장은 "대원들 체력향상 및 부적응 대원들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대원을 강제로 닭장에 가둔 것은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행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경찰청이 올초부터 강조해 온 '소대 자체의 얼차려 금지' 지시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ㄱ경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해당 부대 전경대장과 소대장 등에 대해서도 계고 및 주의조치 등 공동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장관순기자

위치에서 용인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휘관으로서 공동책임을 물었고 지휘관인 전경대장 역시 사전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체력단련 및 교육 등을 명목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온 전경부대 부소대장에게는 징계를,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과 전경대장에게는 각 경고조치 및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소속 부대 경찰관들에게 사고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9) 전 · 의경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전 ·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사건, 진급신고식 사건 등 최근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전 · 의경 인권상황에 대해 그동안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의경 인권상황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전·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종합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동 권고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예산지원 및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함께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과도한 출동·근무 최소화 대책,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비민주적·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대책 △전·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 대책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권고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자살사건 등은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로서 현행 전·의경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의심해보기에 충분하며,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바, 위원회는 해당 기관들이 제도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검토보다는 전·의경의 개인적인 문제 및 부대 내의 문제로 한정하여 관련자 징계와 같은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 해결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의경의 인권상황과 제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문별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10) 군의관 출타 시 의료공백 방지 및 환자 후송지연 대책마련 권고

진정인 A씨(여, 49세)는 자신의 아들이 2006년 4월 국군○○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과 후임 군의관 간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후임 군의관이 재활운동을 방치하였고, 또한 후임 군의관이 바로 파견 및 휴가를 가

면서 “환자를 방치하여 수술부위가 경직된 것은 군의관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2007년 3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선·후임 군의관 간에 인수인계를 한 부분,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나 국내 민간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과 비교해볼 때 군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인수인계는 임의적으로 행하여지는 부분이 많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 B씨(남, 24세)는 자신의 동생이 입대 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도 없이 신체 건강했으나 신병교육 중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는데도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뇌수막염을 발견치 못하고 3차례나 똑같은 감기처방만 한 것은 오진이며, 환자 후송차량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켜 뇌경색이 악화됐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에서 조사과정 중 외부기관에 자문을 한 결과 “일반 의사도 뇌수막염 구분이 쉽지 않아 군의관의 조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다”,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는 등의 답변을 받아 군의관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전문영역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환자 후송 부분에 대하여는 차량이 부족하여 지연 후송된 것은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시스템을 보완할 것과 환자 후송 시 차량이 부족하여 급히 후송되어야 할 환자가 지연 후송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11) 군 복무병사에게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A씨(남, 26세)는 자신이 2000년 1월 입대 후 공군○○사령부 급양병으로

배치되었으나 2002년 5월 만기 제대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 부대 내 유실수반에 비편제 인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농약살포 작업 등을 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림프종 암에 걸렸으며 이에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피진정부대에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 부대에서는 급양병으로만 복무사실을 확인해주었고 또한 국가보훈처의 사실확인 요청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7년 3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진정인과 같이 유실수 반에서 근무했던 동료들로부터 "진정인이 군복무 기간 유실수반에 전담 배치돼 근무하면서 1년에 20일 이상, 총 2년 4개월간 60일 이상 농약에 노출되었고, 농약작업 시 농약을 흡입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진정 부대 관계자로부터도 "피진정 부대는 감나무 1,200주, 배나무 200주 등 유실수반을 운영했고, 진정인은 전입 후 제대할 때까지 지속적인 농약살포작업을 했다"는 진술 또한 확보했다. 더욱이 국방부도 2003년 감사를 통하여 피진정 부대가 유실수반을 비편제로 운영하고 있어 부대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실수반의 실체 및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피진정 기관이 병역의무 수행과 상관없는 사역을 진정인에게 부과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유해농약작업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진정 부대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자기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군복무 중 농약작업과 림프종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피진정 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 부대처럼 군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2)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상당수 진정사건이 군복무 부적응병사의 병영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지금까지 군복무 부적응병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개선방안이 검토된 적이 없었음을 주목하고 특히 2005년 GP총기사고에서 보듯이 군복무 부적응병사의 문제는 부적응병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2006년도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군복무 부적응병사의 인권상황'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조사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결과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인권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사건 372건을 분석해보면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107건의 진정사건 중 38.3%에 해당하는 41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혹행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69건의 진정 사건 중 88.4%에 해당하는 61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내부적으로 분석한 사고통계를 보아도 2006년 연간 1,085건의 군무이탈 사고 중 64.2%에 해당하는 697건이 군복무 부적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살사고 및 폭행사고 또한 군복무 부적응과 상당부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다.

△ 징병단계에서 군복무 부적응이 예견되는 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병무청, 훈련소 및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 △복무기간 중에는 부적응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사들에 대하여는 고운말 사용 등을 장려하여 병영생활을 명랑화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에 대하여는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 △기본권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및 신분을 보장하고 조기에 확대 배치하여 장병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그 운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할 것 △ 비전캠프와 관련하여서

는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관심병사제도는 대상자 비밀보호와 보호자와 연계관리 등을 통하여 군 내부 노력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 복무로 결정된 병사들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본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우리 위원회가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권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례가 있다.

□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하여 사망까지 이른 경우

△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군부대 측은 아들이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2006년 6월 부대 안에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아들은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선임병의 구타에 의한 타살이 명백하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라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간부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부적응 증세가 있었고 선임병들의 폭행 및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간부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과 해당 부대장에게 피진정 간부들에 대하여 경고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에 이른 경우

△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동생이 해군 ○○부대 복무 중 선임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홧발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였고 욕설과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전역 후에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부대 측의 책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선임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선임들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을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기관은 이를 수용했다.

3. 구금 ·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 자살우려자 관리감독 소홀, 사망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인 ㅊ씨(피해자의 딸)는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부친이 2006년 5월 25일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2006년 8월 위원회에 진정했다.

○○구치소 측은 사고 당일 새벽 6시 관구 교위와 교사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 내 수도배관에 압박붕대(145cm)로 목이 매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압박붕대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6:20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하고 6:55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7:15경 "소생가능성이 없으며 사망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2주일 전인 2006년 5월 12일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으니 동정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직원들은 CCTV가 설치된 병동실에 입병사하여 경과를 관찰해 왔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구치소는 2006년 5월 12일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해왔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경과 관찰 중이었다고는 하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구조하기로 결정하여 ○○변호사를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했다.

한편, ○○구치소는 관계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직원교육과 근무감독으로 각종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환자 관리 등 보안관리과의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경위서 징구, 경고처분 및 시정조치 등으로 문책했다고 밝혔다.

(2) 교도관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박씨(55세, 남)는 2007년 2월,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아들)를 면회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어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여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00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관련 사건 CCTV 공개자료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관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나중에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속도 및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 화면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교도관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해자를 폭행한 해당 교도관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3) 구속(형)집행정지자 미신고시설 인계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씨(53세, 남)는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구치소가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진정인을 청각장애인 시설로 인계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 시설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2006년 9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구치소 등 17개 구금·교정시설이 무연고 구속(형)집행정지자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아닌 미신고시설로 인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보호요청 후 결정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장기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불가피하게 미신고 시설 등 민간단체에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그 자체가 불법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등에서 정한 보고의무, 시설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설치나 주기적인 평가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피보호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시설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신고 시설에 위탁된 자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생활급여, 의료조치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인계과정에서 절차의 지연, 보장시설 선정의 어려움, 제도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인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병의 시설 인계 시 구두(口頭)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지금의 관행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인계한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 정지된 자의 신병을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기 전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구치소장에게, 구속(형)집행정지자를 미신고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자 보호요청 시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토록 하고, 관할 보장시설 등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감독할 것 △신병 인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생명 위독 등의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병 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최소화할 것 △생명 위독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장시설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할 것 △해당 기초 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초 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 했다.

(4) 관용작업취업자에 대한 서신검열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인 유씨(30세, 남)는 2006년 7월, 교도소 관용작업취업자로 일하면서 서신업무를 보조하라는 교육교화과 직원의 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였고, 서신검열 및 색인 업무 과정에서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어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2007년 3월 위원회에 진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관용작업취업자 신분으로 서신업무보조와 사책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교도소 직원에게 지시받은 일이라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교도

소 직원이 전자서신을 진정인에게 먼저 읽어보게 한 후 부적절한 내용(교도소 비방 등)이 있으면 따로 분류해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안사범에게 오는 전자서신도 따로 분류해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미 출소하였거나 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편지가 발송된 경우 보라미시스템(교정국 전산망)을 통해 수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직접 교도소 직원 PC를 통해 보라미시스템(교정국전산망)에 접속하여 수용자의 이송경력, 입·출소 사항 등을 검색하여 편지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타 수용자의 가족사항, 범죄개요, 재판기록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였음을 확인했다.

진정인이 교정국 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장면

따라서 위원회는 관용작업취업자에게 서신검열을 지시하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19조(양심의 자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용작업취업자에게 서신검열 등을 지시하여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5) 과도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소 수용자 진정인 박씨(남, 33세) 외 7명은 피진정인 한씨(남, 59세, 교도소장) 등 피진정인에 대해 특별히 계구를 씌울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하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2006년 9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교도소 전체 수용자 1,113명 중 25.9%인 289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45명(수거율 50%, 수용인원대비 13%)으로부터 인권위 진정방해,

폭행 및 가혹행위, 과도한 계구사용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적 실태를 확보하였으며 긴 사슬 사용을 재현하였고,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참고인 등 관련자 37명을 면담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과도한 계구사용 관련

피진정인 ○○는 2006년 7월 ○○교도소장으로 부임한 후 작업 거부 및 입실 거부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2006년 8월 일주일 이상 계구 사용 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상항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2006년 8월 계구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06년 9월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 시 계구(긴사슬, 금속수갑)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타 수용자에게 악풍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보안관리과장 및 주요 간부가 확인 서명하였음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됐다. 또한 수용자가 가장 많은 ○○교도소를 포함하여 11개 교도소에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슬을 사용한 시간의 합인 4,886시간보다 ○○교도소는 8,254시간을 사용하여 11개 교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한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교도소가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 계구사용의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교도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 수용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설로, 문제 수용자를 집중적으로 구금하는 교도소는 '△△교도소'로서 △△교도소에서도 긴 사슬 등의 계구 사용은 극히 미미했다. 특히 피진정인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의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의 사슬을 사용하였으나, 부임 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하여 유독 피진정인의 부임 기간 몇 달 동안에 특히 문제 수용자들이 집중 수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또 다른 피진정인은 발로 진정인의 얼굴을 밟은 후 관구실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참고인 ○○ 수용자는 외부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관구실 창문을 통해 뒤로 사슬이 묶인 성명불상의 수용자가 모포에 깔린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머리를 밟히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참고인인 목격자 ○○○ 및 ○○는 2007년 3월경 피진정인 ○○이 관구실에서 피해자 ○○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점, 위원회 실지조사 시 ○○교도소 수용자 중 관구실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다수의 수용자가 관구실에 있는 전기봉에 의해 지짐을 당하거나,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고 모포로 씌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 위원회 진정 방해 관련

수용자 중 불특정으로 289명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응답한 145명의 수용자 중 '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수용자는 57명이었다.

피진정인은 2006년 8월 16일 교도소 직원들에게 "국가인권위 진정 등은 직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위축"시키므로 "국가인권위 진정 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위로·격려토록 하여 사기위축을 방지하고, 보안관리과장은 별도로 위로 격려한 후, 소장실로 안내토록 할 것", 사기 앙양책으로 "피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때는 표창 우선 상신, 해외시찰 기회 우선 부여, 성과급 지급 및 근무 평정 시 우선권 부여 등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위원회 진정을 방해한 ○○교도소 소속 피진정인 5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는 해당 피진정인들을 징계할 것과, 검찰총장에게는 해당 피진정인들을 각각 고발하고, ○○교도소장에게는 ○○교도소 직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6) ○○정신병원 내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정신병원 전직 직원은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학대, 입원동의서 위조, 병원 간 환자 강제 전원, 관계 행정기관의 묵인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2007년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정신병원을 조사하여 동병원의 원장, 직원,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고발 및 권고를 실시했다.

□ 미성년자 포함 일부 입원환자 학대에 대하여 검찰 고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중증 정신지체자인 3인(15세, 19세, 20세)을 입원 시부터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 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 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하여놓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형법」 제273조(학대)와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으로 피진정인을 고발했다.

□ 불법 강제입원과 강제전원, 계속입원치료심사 회피에 대하여 검찰 고발

다수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받아 불법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을 고발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원장과 △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30여 명의 환자를 △정신병원으로부터 ○○정신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고 정신

보건법상 적법한 입원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환자를 버스와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 ○○정신병원으로 전원시켜 불법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된 환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입원동의서 허위작성과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 경고조치 권고

입원환자 7명이 ○○정신병원에 불법입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원서류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입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 작성한 직원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에 대한 학대 및 불법 강제입원이 자행된 것을 방치한 직원에 대하여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정신질환아동의 치료·보호에 있어 인권보호 대책수립 권고

조사 결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성인과 같은 병실에서 강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과 같이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여 정신질환아동을 치료·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7) 정신병원 내 강제입원 서류 위조, 의료비 부당청구 등에 대한 구제

위원회는 행려환자 등을 정신보건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장기간 불법으로 감금한 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한 일,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입원환자를 빼돌리거나 병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소모품비를 받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A병원과 B병원에 대하여 「정신보

건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행려환자 등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입원연장

A·B병원은 신원 불상의 행려환자를 응급 입원시키면서 경찰관 또는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수의 행려환자를 입원시켰고, 시·군·구청장에 대한 입원동의 요청도 72시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시행했다. 특히 B병원의 경우는 김모 씨 외 11명에 대해서 수십일에서 수백일 동안 보호의무자인 시·군·구청장의 입원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한 입원동의서도 확인했다. B병원의 경우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이들(시설장, 시설간호사, 친구 등)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강제 입원시킨 사실과 김모 씨의 경우는 B병원에 입원한 이후 한 번도 퇴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A·B병원은 모두 상당수 강제 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누락시켰다. B병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모씨 외 97명에 대해 총 173회를 누락시켰고, A병원의 경우 행려환자 공모씨 외 15명에 대해서 총 35회를 누락·지연시켰다.

이러한 A·B병원장들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계속입원심사 누락 및 지연,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 입원시킨 것에 대해서는 각 「정신보건법」 및 「형법」을 적용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김모 씨 외 11명이 본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장 및 ○○지사, ○○구청장 및 ○○시장과 피진정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과다한 환자 수용 및 보건소 지도·점검 방해

A병원에서는 ○○구 보건소의 지도·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를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인 이모 씨 등 5인의 환자가 2006년 6월경 ○○구 보

경향신문 2007년 12월 06일 011면

환자 팔·다리 묶어 학대… 불법 강제입원

정신나간 정신병원

인권위, 병원장 등 고발… 감독 공무원 경고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 환자 등을 학대해온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권위는 5일 "환자 학대, 불법 강제입원 등을 일삼으며 치료가 아닌 영리에만 치중한 광주의 A정신병원장 주모씨(51)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학대,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차원의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소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각각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이 병원의 전직 직원 박모씨(36)로부터 "A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 위조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관계 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법조 입원한 박모군(15)과 이모군(19) 등 중증 환자 5명을 한 방에 수용하고, 기저귀만 채운 채 철제침대에 도복 끈으로 팔·다리를 묶어두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 방에는 11세 어린이도 함께 수용돼 있었다. 인권위는 "치료 행위로서의 감금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 측은 묵묵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또 환자 송모씨(57·여) 등 11명을 입원시키면서 입원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기도 했다. 강제입원 시킨 뒤 지자체장으로부터 20일~8개월 뒤 사후 승인을 받는 편법도 썼다. 현행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 자녀의 입원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이 병원은 지난해에는 폐쇄한 인근 정신병원으로부터 이모씨(52) 등 30여명을 전원(轉院) 받으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강제로 버스에 태워 불법입원시켰으며, 6개월마다 광역자치체장에게 최구해야 하는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무시한 채 불법 강제입원을 지속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행정·보건 담당이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담당 조사관은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현장 조사 때 '그런 줄 전혀 몰랐다'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부재가 아쉽다"고 전했다. 장관순기자

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 과다한 환자 입원을 속이기 위해 피진정병원이 40~50명의 환자를 별관에 숨기고 잠금장치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구보건소가 2006년 6월 21일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6년 6월 21일 ○○구보건소 지도·점검 시 A병원은 입원환자 인원을 속여 행정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수십 명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린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등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하면 병원 입원료에 위생 간호(담요교환, 환의교환, 소독포 교환)와 병실비품(수건, 환의, 시트, 담요, 홑이불 등)이 포함되는데, 그동안 B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5만원을 받았다. 2007년 5월부터 7일까지 소모품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불 및 환의 세탁료로 총 1천3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B병원이 개설된 2003년 1월부터 그 금액을 추산하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모

씨는 입원 기간에 산책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총 32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곽모 씨 외 3명에 대해서 퇴원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 달 단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비의 부당 청구 및 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청구된 의료비 환수와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의료비의 환불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고통을 준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A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주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 전화통화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았다. B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를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전화사용(2주에 1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공중전화도 간호사실 내에 설치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후에 공중전화는 간호사실 밖으로 설치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으나, 2007년 9월 21일 추가 실지조사 시 여전히 모든 환자에 대해서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 부당한 작업치료

A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 거동 불편한 환자 도우미, 청소, 봉투작업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임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작업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B병원에서는 간병, 주방(보조), 원예, 세차, 세탁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작업비에 대해서 A병원과 같이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간병, 주방, 원예, 세차 등 일부 환자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어 병원의 정규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을 작업치료로 대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A·B병원의 운영편의(인건비 절감 등)를 위하여 저

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이나 노동력 착취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작업치료의 범위와 시행방법, 평가방법, 특히 작업의 종류와 일일 최대 허용시간, 임금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A·B병원들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환자 권리 미고지, 부당한 격리·강박

A·B병원에서는 강제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등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B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국가인권위의 진정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장모 씨에게서 위원회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임의로 빼앗고, 위원회에 전화를 못 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B병원에서는 병동규칙, 권익체계로 격리·강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격리·강박일지의 내용과 의사지시서 및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상이하며 의사의 지시가 누락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행동은 입원환자의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하고 「정신보건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감독기관 및 피진정인들에게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8)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이 전·현직 시설장의 성폭력,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 허위 혼인신고, 명의도용,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인한 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현직 시설장을 상대로 2007년 6월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추행 및 폭행 관련 전·현직 시설장, 검찰 고발

피해자 김모 씨(여·39세)와 권모 씨(여·38세)를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고, 피해자 권모 씨 외 6명을 상습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직 시설장 손모 씨(남·78세)를 고발했다. 또한 피진정인 손모 씨의 위와 같은 상습적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시설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현직 시설장인 피진정인을 고발했다.

□ 허위 혼인신고에 대하여 전·현직 시설장, 검찰 고발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에 의거해 작성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및 제234조를 적용하여 피진정인을 고발했다.

□ 명의 도용하여 불법 휴대폰 개통 및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생활인 9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를 적용하여 피진정인들을 고발하고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진정인들을 고발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과 개선 필요

조사 결과, 전·현직 시설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인들의 기초생계비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왔음에도 생활인들에 대해 성폭력, 폭행, 허위 혼인신고, 명의도용, 폭언 등으로 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시설운영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다.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이 지속되고 있었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 박○○이 진술 직후 3년 넘게 지내오던 ○○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현직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진정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도지사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인멸 방지를 위해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우선적인 긴급보호조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4호에 의거, 시설폐쇄 등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시설로 전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생활인들의 인권상황실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9)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2007년 7월 아동복지시설 ○○에서 원장이 아동들에게 폭언, 폭력을 했다고 진정이 제기됐다.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원장을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아동 처우개선,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원장은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한 행위,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훈육 명목으로 신체적 체벌을 가한 행위 등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히 해왔음이 인정됐다. 또한 일부 부모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이유로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것 및 통신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아동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 탈북자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 이모 씨 는 2006년 3월경, 일가족 등 4명과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안으로 탈북하여, 해안을 경계하던 군부대에서 탈북 사실 및 인적사항을 언론에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관계기관의 신문에 응하였는데, 당시 진정인 일가족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어 진정인은 신상에 불안을 느껴 마음 편히 살 수 없게 되었고, 탈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도 피해를 보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당시 진정인이 합동신문조의 신문에 응하는 동안 이미 탈북 관련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최초의 언론유출자 및 유출의 경로를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탈북자의 신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엄정한 대외 보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북 관련 보도내용으로 보아, 합동신문조 또는 참여 기관의 상황 보고 또는 유관기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위 사실 관련 최초 보도 이후 각 언론사로부터 확인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경찰서에서 최초 보고받은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탈북자의 신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대외보안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2) 본인 동의 없이 행정청의 개인 식별가능 가능한 보도사진 배포 관련 인권침해

2007년 2월 진정인 이모 씨는 진정인의 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시청이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하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07년 6월 5일 위원회는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행정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된 인권침해

2006년 10월 진정인 이모 씨는 ○○청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고객지원센터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전화상담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민원인에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 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 및 민원의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의 전화상담 시, 그 상담내용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한 행위는「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4) 초등학교 야구선수 이적동의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피해자)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 야구선수 활동을 해오던 중 4학년을 맞이한 2007년 3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는데, 전학 전 학교에서 선수 이적 동의를 해주지 않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야구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기초자원 선수도 부족한 현실에서 어렵게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타 시·도로 전학을 가서, 잔류 선수들의 타 학교 전학으로 인한 이탈 방지 및 학교 야구부 육성 활성화 차원과 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선수 관리지침에 의거 피해자의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전남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위원회는 2007년 9월 7일 피진정인이 합법적·합리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게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줄 것을 권고했다.

(5) 방과 후 보육교사 채용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로서 수년간 동일직무를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수행하였으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당초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일방적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

였으며 임금산정 체계의 변화로 인해 임금, 고용 등의 근로조건이 심대하게 후퇴했다면서 2007년 4월 11일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서울시는 2007년 4월 1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을 시교육청으로 이관하였는바, 이는 서울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이관하여 비정규직인 진정인의 희생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주체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의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자료'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신분인 진정인과 체결하려는 ○○초등학교장의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하고, 채용계약서 내용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진정인은 동일 장소 및 동일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 등으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행정기관 및 수요자 측면에서의 불편 해소와 동일 시설에서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 보육프로그램, 교사 처우 등이 달라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일원화를 통해 운영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이관하게 된 사항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육교사, 학교장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보수 및 경력인정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지원예산외 추가로 지원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진정인의 인권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 의거해 방과후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 장학자료에 게재된 계약서는 예시자료로 학교장과 보육교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내용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방과후 보육교사인 진정인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 신분으로 「근로

기준법」 상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채용 계약을 정하는 방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복무'부분의 제55조(선서),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반근로자와의 계약보다 불이익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채용계약서'내용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방과후 보육교사는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상의 복무규정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비정규직 민간신분인 방과 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 시 현행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치 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고용허가제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권고	위원회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내용 중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결정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에게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	1.22	수용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 사고 직권조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는 보호 수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원회는 그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보호실이 구금시설처럼 운영된 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선 구제 후 통보'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많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 여러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	4.9	일부 수용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뒤늦게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하라고 통지한 것은, 그 혼인의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혼인 및 그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진정인의 남편에게도 발급할 것을 권고.	4.11	수용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위원회는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 목적에 부적합한 보호시설의 환경, 보호소 내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 보호소 내 생필품 반입의 제한, CCTV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확인했고, 교정시설에서는 면회 시 자국어 사용의 제한, 전화 사용의 제한, 고충상담 시 언어 문제, 식생활 문제 등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인권침해를 해소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2.17	검토 중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 사고 직권조사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위원회는 2월 27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보호 수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2명의 경비용역만 근무하고 있었고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시건되어 있었음이 확인됐다. 한편, 보호의 이유는 대부분 임금체불이었는데, 노동부 지침인 '선 구제 후 통보'의 원칙과 임금체불 상담과 관련해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화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김모 씨(사망자)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상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

한국일보 2007년 04월 10일 a10면

"보호조치 외국인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

여수화재 피해자에 위자료·치료비 배상키로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체불임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가 행정처분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범죄피해 등으로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온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선(先)구제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여수 화재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 17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한편, 병원측이 청구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불키로 했다. 다만, 배상금을 받은 부상자들은 7일 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 이후라도 진단서를 통해 후유증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고 기족 1명이 보호자로 동반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수습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in6p@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다.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고 그로 인해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했고, 사고 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국가기관들에 개선 권고를 했다. 법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에 대해서 '보호'의 법적 성격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아울러 보호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절차상에 있어서 보호 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과, '선 구제 후 통보'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대책 및 실질적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외국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도 위원회는 여수출입국사무소장, 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여수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보호 외국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했다.

(2)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제3부 특별사업에서 자세히 기술함.)

(3)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권고

위원회는 2006년 11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결정한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 내용 중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

련하여 그 결정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에게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산업연수제 하에서 인력 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에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선택방식에 대해서도 대행기관 및 사용자가 현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면접·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건설업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은 외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면접·선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추후 대행기관 선정 및 구체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국무총리에게 고용허가제도 도입 취지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도입 창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사용자 위임에 의한 대행기관의 현지 면접·선발 대행 업무를 불허해야 하며,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행기관의 업무내용 선정 시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에 일정 업무를 대행시키고, 업무대행기관의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를 사업주 단체에서 일괄 대행할 경우 철저한 사후 감독을 하고,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선정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취업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만들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교육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들을 총괄하는 기관을 확대 운영하며, 대행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주 업무 위탁기관'이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 감독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이모 씨(여)는 2003년 9월 파키스탄인과 결혼하고 파키스탄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 뒤에 혼인 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을 알게 되어 2005년 12월 남편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8월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하라고 통지한 것은 가족의 결합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진정인과 남편은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음을 확인했고, 진정인이 거주했던 주소지의 이웃 주민들로부터 진정인과 남편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거나 동거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그들의 동거 사실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헌법」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우리나라가 비준한「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및「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혼인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진정인의 남편에게도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6. 구금 · 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2007년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교도소 6개소(영등포·의정부·대전·공주·전주·목포교도소), 소년원 2개소(광주·안양소년원), 경찰서 유치장 2개소(남원·부산진경찰서), 군 영창 3개소(해군진해사령부, 공군계룡대, 군26사단), 총 13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동 방문조사는 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위원회가 기 권고한 내용에 대한 현장 반영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해 진정 제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계, NGO 활

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문조사를 통해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직원·수용자 직접 면담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애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도소의 경우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소장 등 간부들을 면담하여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교도소의 공중전화실 차폐문 설치와 같이 즉각적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었고, 방문조사를 거듭할수록 조사·징벌실의 환경 등이 개선되었으며, 방문조사 이후 시정·보완이 완료된 경우들도 많았다.

또한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부랑인보호시설 3개소(성경원, 인성원, 은평의 집)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 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와 위원회 내부 조사관 등 총 15명의 방문조사팀을 구성해 인권보장 실태, 생활 실태, 시설환경, 의료 서비스 등 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인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시설생활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인 인권 실태를 확인해 향후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시설 관계자 및 감독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시설 관계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영등포교도소 방문조사 2007. 8. 28.

위원회는 2007년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권친화적인 시설 운영과 생활인 처우가 자리 잡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2007년 위원회는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국제 기준을 국내에 도입,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위원회의 조사 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했다.

(1) 집회시위 금지통고제도 및 집회사전차단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문회

위원회는 2007년 10월 30일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집회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전차단조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참가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와 이기창 경찰청 정보4과장은 현행 법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의 법리적 검토를 주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희훈 선문대 법대 교수와 이상수 서강대 교수는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현행 집회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인지 여부, 폭력집회 금지 규정(집시법 제5조제1항제2호), 교통불편 금지규정(제12조), 장소경합 금지 규정(제8조제2항)의 위헌 내지 인권침해성 여부, 이의신청의 실효성 여부 및 사전차단조치의 인권침해성 여부,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이었으며 쟁점별로 열기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집회신고제도가 허가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장소

경합 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선 신고 집회의 97%가량이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집시법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경찰의 중복집회 조정이나 동시 개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의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폭력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단지 과거 폭력집회, 전력만으로 금지통고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통소통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금지 통고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포괄 위임이라는 논란도 있고, 시행령 규정상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의신청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결청을 맡는 방안, 집회신고 접수처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 현재 자문기구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재결기관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사전차단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분분하였으나 집회장소로부터 상당히 원거리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은 목전의 위협 등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청문회는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이후 관련 집시법 관련 정책권고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 군복무 부적응병사 정책권고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2006년에 군복무 부적응자 발생 시 본인은 물론 그 주변 병사 및 간부들도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화여대 산학협력팀과 공동으로 군인의 징병·복무·전역 단계에서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 실태조사 보고서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였고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리기기 이전에 그 정책권고안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2007년 8월 13일 군인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먼저 위원회 최재경 침해구제1팀장이 조사결과보고서(정책권고안)를 보고하였고 건국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 전북대 법학과 송기춘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이상영 교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전문위원장인 원형은 인권위원이 논의내용을 종합 및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군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기본권 전문상담관, 비전캠프, 관심병사제도의 성과 등을 국방부에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및 고충상담 창구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결정문 작성 시 주문에 개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침해구제본부장은 필요시 국방부 측과 협의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권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

(3) 교정전문위원회 개최

2006년 6월 7일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이상희(변호사) 교정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정전문위원회(위원장 정재근 인권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자료축적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차기 회의에서 전문위원 각자 조사표의 일정부분을 맡아 검토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7월 4일 김덕진, 이호중(한국외대 교수), 조은경(한림대 교수) 교정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표'의 틀을 유지하되 기존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가 양적평가를 기준으로 개발되었기에 '질적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나 대폭적인 수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정보권, 건강검진, 정신장애 등 소수수용자, 의료부분,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등급별 처우, 분류직원 전문성, 분류심사 과정 공개 정도, 여성 고려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4)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인권의 핵심 이슈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확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체계'라는 주제로 2007년 7월 20일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안경환 위원장, 김칠준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정신보건 관계자와 당사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하대 법과대학 서경석 교수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에 대해, 울산대 의대 정신과 홍진표 교수가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확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 상지대 법과대학 김명연 교수, 서동우 박사, 한울지역정신보건센터장 송경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장 이원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 결과를 통해 위원회는「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여 향후「정신보건법」개정 및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추진 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2007. 7. 20.

(5)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 개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2006년 12월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2007년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가 4회 개최됐다.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경환 위원장이며 전문위원은 정신과 교수, 법학교수, 법조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8명으로 구성됐다.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는 2. 28, 5. 10, 8. 28, 11. 19, 개최되어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사업 제안, '「정신보건법」 제24조 검토안'논의,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고 회의가 운영됐다. 특히 전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는 2008년 위원회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제3절 평가

2007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활동 성과는 처리건수에서는 4,758건으로 2002년 1,365건, 2003년 3,137건, 2004년 4,931건, 2005년 4,132건, 2006년 3,251건으로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2005년, 2006년 다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7년 다시 대폭 증가(52.0%)했다. 해마다 큰 폭으로 늘던 양적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진 경향을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첫째, 2007년 진정처리 결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용사건은 238건, 인용률은 16.4%로, 2003년 11.6%, 2004년 10.2%, 2005년 15.6%, 2006년 18.2%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7년에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용 건수가 증가(32건 증)되었음에도 인용률이 약간 감소한 것은 진정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

(52.0%, 1,734건 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정사건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장기 미결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진정사건 처리시스템 재정비로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진정사건 종결건수도 대폭 증가(2006년 : 3,249건 → 2007년 : 4,758건, 1,509건 증)됐다.

둘째, 2007년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및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욕구가 강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향후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활동은 물론 구조적·제도적 인권침해 사안들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셋째, 2007년 위원회는 전년도에 이어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의 사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에 주력하고자 노력했다. 국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 취약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성을 강화해 일상적으로 점검돼야 비로소 인권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와는 별도로 2007년 총 16개 구금·보호시설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적 권리구제 활동을 펼쳤다. 이는 특히 향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가예방기구가 수행해야 할 방문조사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그 방법을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전 해에 비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한편, 그 내용도 더욱 복잡화·다양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위원회 조사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만족스러운 권리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인권 신장을 위한 기회의 부여를 강구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리구제의 바람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위원회는 개인 등이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진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개의 사유를 이유로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 등)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2005년 7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위원회는 총 1,159건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실시해 111건을 시정 권고하고, 37건을 합의종결했으며, 264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 시정 권고한 사

항들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했고, 권고 사항이 수용되도록 피진정인들을 설득하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신원조회와 전과 차별에 대한 조사 등 총 8건의 기획조사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등 총 5건의 직권 및 방문조사도 실시했다.

2007년 위원회는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차별 시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국내 법규범에 부합하는 풍부한 내용의 차별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6년에 착수한 차별판단지침 작성 사업을 완료했다. 그밖에도 위원회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적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였고, 2005~2006년 차별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그밖에도 2007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고, 차별 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인권단체 및 유관 정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000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1,845건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고,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848건(21.2%), 교육시설 등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299건(7.5%)이었다. 이러한 차별사건 접수 현황은 2007년에도 예

외는 아니어서 총 1,159건의 접수된 진정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498건으로 43.0%를 차지했고,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288건(24.8%),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정이 103건(8.9%)이었다. 이를 놓고 볼 때 고용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고용 영역의 경우, 총 498건 중 모집 관련 진정이 124건(24.9%), 채용이 98건(19.7%), 해고가 58건(11.6%), 임금이 51건(10.2%), 배치가 27건(5.4%) 접수되었고,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는 총 287건 중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관련이 124건(42.9%), 재화 관련이 110건 (38.3%), 상업시설 관련이 22건(7.7%) 접수됐다. 교육시설 이용 영역의 경우, 총 103건이 접수됐는데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96건(93.2%)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270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1,845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848건)						교육시설등 이용차별(299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외 금품	자금융자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접수	02년	189	18	10	6	17	5	1	9	6	–	1	0	1	30	3	2	2	0	1	7	3	67
	03년	358	54	61	21	26	9	14	11	4	–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년	389	22	17	51	12	34	18	9	4	–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년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06년	824	97	26	101	52	34	21	14	8	–	18	13	2	91	50	15	3	0	6	83	4	186
	07년	1,159	98	58	124	51	71	27	20	13	1	12	17	6	110	124	17	22	–	15	96	7	270
	계	4,000	437	217	393	208	239	98	99	47	1	52	39	15	451	276	45	42	6	28	275	24	1,008
	구성비(%)	100	10.9	5.4	9.8	5.2	5.9	2.4	2.5	1.2	0.0	1.3	1.0	0.4	11.3	6.9	1.1	1.1	0.2	0.7	6.9	0.6	25.2
종결		3,755	415	207	369	194	219	93	91	45	1	50	36	14	423	243	40	40	6	25	261	22	961
미결		245	22	10	24	14	20	5	8	2	0	2	3	1	28	33	5	2	0	3	14	2	47

※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2) 사유별 접수 현황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성별	성희롱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력	기타
접수	02년	189	11	2	6	33	7	48	5	20	–	2	2	–	1	1	1	4	7	4	10		25
	03년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	–	7	3	2	16	28	98
	04년	389	25	–	8	54	57	64	6	10	–	6	7	4	4	–	–	–	7	1	7	12	117
	05년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06년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07년	1,159	76	163	12	245	107	117	8	37	1	20	3	16	13	4	1	2	17	3	31	27	256
	계	4,000	245	332	50	586	351	809	53	133	2	87	47	49	43	7	3	20	69	19	115	139	841
	구성비(%)	100	6.1	8.3	1.3	14.6	8.8	20.2	1.3	3.3	0.0	2.2	1.2	1.2	1.1	0.2	0.1	0.5	1.7	0.5	2.9	3.5	21.0
종결		3,755	229	296	47	529	337	793	52	119	2	80	46	44	42	6	3	19	65	16	110	135	785
미결		245	16	36	3	57	14	16	1	14	0	7	1	5	1	1	0	1	4	3	5	4	56

※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2007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유에서 진정사건의 접수 건수가 증가했고 일부 사유에서만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이 중 전년대비 접수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장애 차별 사건, 성희롱 사건과 나이 차별 사건으로, 각각 약 2.2배(115건 → 245건), 1.6배(104건 → 163건), 1.6배(69건 → 107건)씩 증가했다. 그밖에도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이 2.2배(117건 → 256건), 성 차별 사건이 1.7배(44건 → 76건),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사건이 2배(10건 → 20건) 증가했다.

장애 차별 사건이 증가한 것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와 유사하게 나이 차별 사건이 증가한 것은 2007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나이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희롱 사건의 접수는 성희롱 시정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된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에 비하여 눈에 띠게 접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사건으로서 각각 2.2배(208건 → 117건), 7.7배(22건 → 3건)씩 감소했다. 그 중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사건의 감소는 2007년 위원회가 사회적 신분과 기타 차별사유의 개념을 실무적 차원에서 재정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그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타 차별사유에 의한 사건은 증가했다.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007년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159건으로 전년의 824건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4,000건 중 3,755건이 종결 처리(93.9%)됐고, 245건이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다.

종결 처리된 3,755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돼 제도 개선 또는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것이 340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9.1%이고,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종결된 사건이 76건으로 2.0%,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615건으로 16.4%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2,655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70.7%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설득,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건은 2002년 7건, 2003년 16건, 2004년 46건, 2005년 116건, 2006년 152건, 2007년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기각 이하				조사 중
			권고	합의종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중지	
2002년 이전	189	102	8	2	–	18	73	1	–	–
2003년	358	296	30	3	–	48	215	–	–	–
2004년	389	368	21	4	1	74	263	3	2	–
2005년	1,081	837	55	7	–	121	650	2	2	–
2006년	824	899	115	23	10	182	553	11	5	3
2007년	1,159	1,253	111	37	3	172	901	22	7	242
총계	4,000	3,755	340	76	14	615	2,655	39	16	245

※ 권고 : 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 · 정책 ·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007년 접수된 주요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시정을 권고한 사건이 111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종결된 사건이 37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이 264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접수되고 종결된 사건 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제도 및 관행 개선, 인권교육, 손해배상, 편의시설 개선 등을 권고한 사건 수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나이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23건, 사회적 신분 17건, 성희롱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 장애 차별 시정 권고 건수(9건 → 23건)는 2006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조치유형 / 차별유형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 시정권고(111건)	합의종결(37건)
합계	111건	37건
성별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권고(4건).	–
성희롱	해외 NGO봉사센터 소장이 여직원에게 음담패설 등 저속한 성적 표현 등을 하여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혐오감과 모멸감을 준 것은 성희롱이므로, 직원 및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15건)	27건
임신·출산	보건소 계약직 의사로 근무해온 여성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당 직위에 대한 공개채용에 재차 응시하였으나 면접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면접 때 보건소장이 "출산을 앞둔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2건).	–
가족상황	○○시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생애 통산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되 재혼 등의 사정으로 현재 자신이 출산한 자녀 셋을 모두 양육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1건).	–
장애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업에 필요한 수화통역사의 비용을 분담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거부한 차별행위이므로,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을 권고함(23건).	5건
병력	회사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그들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4건).	1건
나이	공단이 신입 간호사 공개모집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준 것은 차별이므로, 해당 나이 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29건).	4건
출신국가	레스토랑이 특정 국적의 특정 인종의 사람들이 과거 레스토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당 국적의 해당 인종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동일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1건).	–
사회적 신분	직원 대상의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인 상담원들을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17건).	–
학력	항공사가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므로, 해당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5건).	–
종교	교수 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수 채용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3건).	–
기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당해 구역에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구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 출마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7건).	–

※ 상기 시정 권고 및 합의종결 건 숫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것임.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할 경우 권고 건수는 112건, 합의종결 건수는 37건으로 증가함.

(2) 2007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차별행위에 대한 사유별 중요 진정사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 성별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차별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별에 따라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을 달리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 행위이므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별에 따른 분리 모집을 중지하고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	8.27	검토 중
	○○전자 임금지급에 따른 성차별	여성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에서 남성 근로자들과 노력, 기술, 책임, 작업조건 등의 차원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절히 손해 배상을 하도록 ○○전자에 권고.	10.8	불수용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시 성차별	○○시가 여성을 무형문화재인 ○○○춤 보유자후보, 예능보유자, 또는 전수조교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능 또는 예능이 해당 지정에서 핵심적 기준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단지 특정 성을 이유로 행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장에게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기능 또는 예능을 그 지정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	10.30	수용

□ 성희롱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청소용역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직장 상사인 ○○협회 ○○지부장과 본부장이 회식 자리 등에서 청소용역 담당자인 여성 진정인들의 가슴에 수차례 손등을 가져다대고, 진정인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고, “사귀자”는 등의 말을 하며, 춤 출 것을 강요하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그들 가해자들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7.13	검토 중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해외 NGO봉사센터 간부의 성희롱	○○봉사단 '캄보디아 문화 복지센터' 소장이 센터 파견 직원인 진정인에게 음담패설과 저속한 성적 표현을 하고 진정인이 들을 정도로 포르노 영상물의 볼륨을 높이는 등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심한 성적 혐오감과 모멸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봉사단 사무총장에게 직원 및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성희롱 발생 시 처리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8.30	일부 수용
	논술학원장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논술학원장이 원장실 및 차 안에서 첨삭 강사인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학원 로비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9.20	검토 중

□ 임신 · 출산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보건소 의사 채용 시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구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해온 여성 진정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당 직위에 대한 공개채용에 재차 응시하였으나 면접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면접 때 피진정인인 보건소장이 "출산을 앞둔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한 것과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임신 및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3.9	수용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시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진정인처럼 생애 통산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되 재혼 등의 사정으로 현재 자신이 출산한 자녀 셋을 모두 양육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장려금의 출산 장려적 성격과 다출산자들의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해 볼 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시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되 세 자녀 모두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11.13	수용

□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역 장애인 이동권 차별	피진정인인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의 휠체어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은 이동권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	1.31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통합교육 실시 차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진학시키고자 학교 측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이 학교건물의 노후에 따른 장애 편의시설 설치의 어려움,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여건의 불비, 장애학생의 실습용 기계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 차별이므로 해당 학교 측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고 해당 교육청에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28	검토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시험 차별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이 한국○○(주)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장애로 인한 필기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실시 전에 미리 회사 측에 시험시간의 연장, OMR 답안지의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 등의 시험편의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상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이므로, 회사 측에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5.29	수용
	국가자격시험 시각장애인 차별	피진정인인 대한○○가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1년에 단 2회만 실시하는 수시검정에서만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매일 실시되는 상시검정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이 시각장애인도 14인치 모니터만을 사용하게 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상시검정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권고.	6.22	수용

조치유형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한 후 수업에 필요한 수화통역사의 비용을 본인과 학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학교 측에 수화통역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 및 다른 대안적 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하여 장애 차별에 해당하므로, 학교 측에 대해 수화통역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수화통역사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7.13	검토 중
	채용필기시험 가산점 부여에서의 장애인 차별	부산○○공사가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우대를 위한 필기시험 가산점의 부여 대상자를 경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5급과 6급으로 제한함으로써 진정인과 같이 장애등급이 4급 이상인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등급을 그 목적과 다른 고용 관련 기준으로 사용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특정 장애등급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장애인 가산점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피진정기관에 대해 해당 가산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11.13	검토 중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손해보험회사가 5급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의 운전자 보험 청약을 승낙한 후 다음날 이를 취소한 것은, 보험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점과 그의 과거 진단력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12.14	검토 중

□ 나이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제한	한국○○공단이 신입 간호사 공개모집에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고 그 이전 출생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해당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단 측에 신입 간호사 공채 시 응시 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6.11	수용
	설계·감리 용역 경쟁입찰 시 감리원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한국○○공단이 감리 용역에 대한 경쟁 입찰을 할 때 감리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만 65세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한 감리자에 대해 감점을 하는 규정은,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인 건설교통부장관 및 공단 측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8.30	일부 수용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응시 자격으로서 나이를 특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의 학업수행능력 이외의 기준을 자격 요건으로 삼는 것으로 헌법상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고 학생선발권의 행사에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학교 측에 나이로써 응시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10.9	수용
	프로 입문 골프대회 참가자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	한국○○협회가 프로 입문 골프대회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와 체력 또는 나이와 경기력 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수의 경기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인 최저타수 등과 방식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협회 측에 50세 이상인 자도 입문 골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1.13	검토 중

□ 출신 국가 및 인종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 거부	레스토랑이 특정 국적의 특정 인종의 사람들이 과거 레스토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당 국적의 해당 인종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한 것은 국적 및 인종에 의한 차별이므로, 피진정 레스토랑에 대해 그와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9.11	검토 중

□ 학력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 차별	○○청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식품직 7급의 경우 응시원서에 출신 학교명을 쓰게 하고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채용에서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할 소지가 크고, 학력만이 해당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교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개선하고 학력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2.20	수용
	외사요원 채용 시 학력 차별	○○청이 외사요원 채용 시 영어, 프랑스어 등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나 해당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나 공인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함이 없이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등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학력 차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공인 자격증 제도가 없는 언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외사요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국한하지 말 것을 권고.	4.30	수용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항공이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업무가 본질적으로 유사하고 그 둘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응시 학력 요건에서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해당 항공사에 대해 문제의 응시자격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10.9	검토 중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사내 교육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배제	한국○○○원이 직원 대상의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인 상담원들을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교육 내용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양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상담원들에게 수강을 허용할 경우 그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원 측에 대해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	10.30	검토 중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차별	○○데이콤이 조합원 범위 규정,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 규정을 계약직 노조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노조원과는 달리 적용하고,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을 계약직 노조원에게는 지급·적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 적게 또는 달리 지급·적용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에 대해 해당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	11.12	검토 중

□ 종교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교수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대학교가 교수 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정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종교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 측에 대해 해당 교수 채용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	10.22	검토 중

□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재개발지역 거주 여부에 의한 조합임원 출마자격 차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당해 구역에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구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합임원 출마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임대사업자들도 당해 구역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이므로, 해당 조합장에게 정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그 정관의 모범이 되고 있는 표준정관의 해당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	10.9	검토 중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으로 금지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별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한 대우, 즉 직접차별이 포함된다. 이때 차별의 의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남녀에게 모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성의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적 차별인 간접차별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속한다.

(1) ○○전자 임금에서의 성차별

○○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모 씨 등 여성 근로자 9명은 '생산라인에서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차별'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전자의 생산부서는 조립, 검사, 포장 등의 공정을 담당하였고 각 공정의 단계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부품 테스트나 납땜 등 특정 작업을 하여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연속작업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생산단계에서 어떤 업무는 특정 성만이 해야 한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고유한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반품 정도, 결원 등의 상황에 따라 성별 및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업무가 주어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는 남성 근로자들이 힘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를 담당하여 그들에게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상차업무는 일주일에 1~5회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상차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호출에 의하여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남녀 근로자들이 함께 상차장소를 오가며 물품을 적재한 것으

로 조사되어, ○○전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자 생산직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남녀 모두 계약직 근로자로서 책임의 측면에서 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남녀 근로자가 하나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 근무했으므로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며 △설사 ○○전자의 주장대로 남성 근로자들이 상차업무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을 요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할 만큼의 많은 노력과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자에 진정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2)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차별

시민단체인 한국○○는 현행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성별이 관련 직무의 필수적 자격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이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남성에 국한하거나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인원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요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문제된 성별 분리모집 제도가 양성평등을 위한 일종의 여성 배려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소방업무는 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업무로서 절대 체력을 요하는데, 정책적 배려 없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여성들은 체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녀 간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현재와 같이 행정·구급 등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 대해 특정 채용 비율을 할당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화재진압, 수관관리,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의 소방업무가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을 요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로부터 남녀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논거가 곧바로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위원회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남녀 지원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개인별로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 많고 그래서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소방업무에서 남성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남녀를 구분 모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을 달리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모집을 중지하고 양성에게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3)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시 성차별

○○시 무형문화재 ○○○춤의 전수조교인 진정인 김모(여) 씨는 보유자후보 등을 선정하는 ○○시가 ○○○춤 보유자후보 심의에서 진정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보유자후보로 선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여성을 예능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 등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여성을 ○○○춤의 예능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원형 보존이라는 문화재 보존의 원칙 때문이고 ○○○춤의 구음은 원래 여성이 담당했던 분야이고 춤은 원래 남성이 담당했던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춤이라는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에서 특정 성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원형 보존과 관련하여 ○○○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애초에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남성들만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전승해왔던 점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형대로 보존'은 춤의 체득 정도와 같은 기능 또는 예능의 보유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보유자후보 등을 지정할 때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시가 보유자후보 등을 지정할 때 추천된 자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에 대해 ○○○춤 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를 지정할 때 여성을 배제하지 말고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기능 또는 예능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고용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제관계, 군대의 명령체계에서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1) 해외 NGO봉사센터 소장에 의한 성희롱

진정인 이모 씨(여)는 사단법인 ○○봉사단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문화 복지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동 복지센터 소장인 피진정인이 자신의 딸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음담패설과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 '진정인이 목욕하는 소리에 여인네의 나신이 상상됐다'는 등 진정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표현을 지속하였고, 진정인에게 들릴 정도로 포르노 영상물을 크게 틀어놓거나 공용물인 노트북 컴퓨터에 자신의 포르노 영상물을 저장시켜 진정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심한 성적 혐오감과 모멸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근무할 때 진정인이 본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앙심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내 및 캄보디아에 있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이 이전부터 성적 언동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사실과 진정인 외에도 두 명의 전 '캄보디아 문화 복지센터' 여성 직원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유사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귀국 이전부터 동료직원 및 ○○봉사단 등에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단법인 ○○봉사단 사무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 및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성희롱 발생 시 처리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 청소용역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통공사청소 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인 진정인 조모 씨(여)는 ○○○협회 ○○지부 소속 청소용역 담당자들인 피해자들이 관리자인 동 협회의 지부장과 본부장으로부터 회식자리 등에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회식 때 노래방에 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나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행위를 들었다고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리고 직장상사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의 가슴을 손등으로 수차례 접촉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뺨에 뽀뽀를 하는 행위, 직장상사이며 유부남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에게 "사귀자", "애인하자"라고 수차례 말한 행위,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며 몸을 밀착시킨 행위 등은 보통의 여성들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3) 논술학원장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논술학원에 첨삭 강사로 근무하는 진정인 손모 씨(여)는 학원 근무 중에 학원장인 피진정인이 차 안 및 원장실에서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학원 로비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껴안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2006년 6월에는 진정인이 다른 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진정인을 만난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2006년 6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동료 강사 A는 "2006년 중반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일부 여자 강사들에게 성희롱으로 오해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진정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동료 강사 B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끌어안았고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말을 진정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장 동료 C는 "2006년 10월 17일경 진정인에게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여러 여자 강사 및 직원들과 말하는 도중 그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고 피진정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5.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했다는, 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 사유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성별'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임신·출산을 하지 못하는 남성과의 불합리한 차별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보건소 지방계약직 의사 채용 시 임신 ·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인 김모(여) 씨는 ○○구 보건소에서 12년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의사로서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동 보건소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재차 응시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당시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던 진정인은 채용과정에서 ○○구 보건소장에게서 "출산을 앞둔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요지의 말을 들었으며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보건소장은 진정인이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소의 전문의 채용계획, 진정인에 대한 근무평가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고,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이 임신 중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면접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적 발언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탈락 사유가 채용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음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이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진정인의 예정된 출산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

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6.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가족형태'또는 '가족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의 가족 내 위치,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등을 말한다. 즉 그것은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의 가족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가족 내의 특정한 역할이나 책임 등에서 비롯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나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생애 통산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진정인 나모 씨(여)는 ○○시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2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재혼 등의 사정으로 현재 자신이 출산한 자녀 셋을 모두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시는, 출산지원금의 목적은 셋째 아이를 양육하게 된 가정의 출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만약 동일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의 유지와 상관없이 생애 통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남녀가 이혼 후 재혼하여 각각 새 가정을 꾸렸을 경우 재혼 이전 출생한 아이가 양쪽 가정에서 중복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양육을 방치한 부모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만 양육하였을 경우 그 기

간을 일일이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인 출산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고 금액도 2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양육지원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 번째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축하금의 의미가 크고 출산지원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시 출산 횟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세 명이나 낳아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족상황 때문에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시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되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지 않는 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7.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가진 적이 있다는, 또는 가질 것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질병의 이력을 이유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역 장애인 이동권 차별

한국○○○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 씨(여)가 2006년 9월 4일 인천지하철 ○○○역의 휠체어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것은, 1999년 설치된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역의 휠체어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전동휠체어에 부적합하고 안전하지 못하여 피해자 김모 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많은 장애인이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서 다른 대체 이동 수단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휠체어리프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5년 4월부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고가 보장구 구입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면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인천지하철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에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신형 리프트로 교체하고 ○○○역을 포함한 2~3개 역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2011년까지 인천지하철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의 편의시설 증진 계획을 환영하면서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통합교육 실시 차별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구와 ○○○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들 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학교로 지명된 한 고등학교 측은 학교건물이 40년 된 노후건물이어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실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습에 사용하는 기계가 중장비 기계, 고속으로 작동하는 컴퓨터기기, 무거운 측량기계, 복잡한 컴퓨터 회로 프로그램을 갖춘 기계들이어서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이런 기계로 실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피진정 학교 측은 학교건물이 33년 된 노후건물이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교구(敎具), 교실 등의 제반 여건과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아 특수학급 설치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교 1층에 이동통로의 턱 제거, 미끄럼방지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고, 재개발과 관련하여 학교 신축 또는 이전은 단기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 신청을 연기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습용 기계들이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데다 고가여서 장애학생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회는 피진정 학교 측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과 지도, 적절한 편의제공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비장애학생과 같은 기준에서 장애학생들의 실습이 어렵다고 본 것으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일반학급의 설치에 우선하여 특수교사 등 인력과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중식비 등 일체의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고등학교들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시험 차별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 씨는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어 채용시험 실시 전에 미리 시험시간 연장, OMR 답안지의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채용 주관 공사인 한국○○(주)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시험에서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답안지는 제공하지만 답안지 대리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미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교원자격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일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리표기, 노트북 사용 등의 시험편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진정인은 대학 시절 학과시험을 볼 때 손 떨림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험시간 연장,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지 작성 등의 편의를 학교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왔음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하여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므로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피진정 회사에 권고했다.

(4) 국가자격시험 시각장애인 차별

시각장애3급인 김모 씨는 "대한○○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해당 실시시험의 상시검정은 매일 실시되는 반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회만 실시되어 자격증의 취득이 시급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진정인인 대한○○○○○가 수시검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는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상시검정에 응시한 진정인에게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 모니터로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상시검정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17인치 모니터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권고했다.

(5)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진정인 변모 씨는 청각장애 2급으로 ○○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했다. 진정인은 수화통역사 없이는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이루어지는 최고지도자 과정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40%, 학교 측이 60%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화통역사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진정인은 수화통역사를 지원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였고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대신 강의안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강사의 동의를 얻어 녹화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정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은 해당 과정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등록금만으로 유지된다고 하면서 진정인이 제의한 분담방식으로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경우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수화통역비가 진정인의 등록금(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진정인의 제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대화식·참여식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과정의 수업에서 진정인에게 강의안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강사의 동의를 얻어 녹화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편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편의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요구한 수화통역비의 60%에 해당하는 분담액이 등록금 500만원을 초과한다는 학교 측의 계산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학교 측은 그 금액에 수화통역사에게 지급할 교통비나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정규수업이 아닌 해외 세미나 및 원우회 자치행사에서의 수화통역비까지 포함시켰으나, 그러한 비용은 피진정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니며 진정인 역시 해당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예상 총 수화통역비는 580만원이었고 그 60%에 해당하는 대학 측 분담액은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그 금액이 진정인의 등록금인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학교의 해당 최고지도자 과정의 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끼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학교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해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을 거절하고 수화통역사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수화통역사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6) 채용필기시험 가산점 부여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장애등급이 4급인 지체장애인 위모 씨는 부산○○공사가 2007년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장애인 우대를 위한 필기시험 가산점의 부여 대상자를 장애등급 5급과 6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정된 사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위원회는 첫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종류와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자립생활 보호 및 각종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며, 이러한 기준을 채용이나 모집 시 직업수행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획일적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둘째, 특정 장애등급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원래의 장애인 가산점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며, 셋째, 개별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더욱 확산시키는 폐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단지 장애등급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부산○○공사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7)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5급 지체장애인 진정인 이모 씨는 ○○○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 청약을 마친 후 제1차 보험료를 자동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날 동 보험회사 전화상담원에게서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이모 씨는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은 진정인이 직접 '척추염 하지마비'진단 사실을 고지했고,

'척추염 하지마비'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첫째, ○○○손해보험회사는 4~5급 장애등급에 대해 장애 원인 및 진단명에 따라 사안별로 선별 심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진정인은 보험가입 청약 시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척추염 하지마비'진단이 현재의 장애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고지하였고 당시 전화상담원도 이를 확인한 바 있었음에도 다음날 상담원은 보험계약 취소를 안내하면서 "이모 씨가 청약 당시 척추 진단과 장애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던 점, 넷째,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 상품은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동 건강진단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심사 과정에서는 피진정인 보험사에서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동 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사실로 인정되고, 보험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점을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취소 결정은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8.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나이'는 '32세 미만' '24~35세' '20대'와 같은 특정 수준의 나이뿐만 아니라, '연소자'나 '연장자'등과 같이 상대적 나이를 가리키는 것과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등과 같이

나이와 연관된 것들도 포함한다.

(1)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제한

진정인 박모 씨는 한국○○공단이 ○○병원 신입 간호사 공개모집에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77년생인 자신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선후배 간호사들이 같은 조에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그러한 필요 때문에 타 공공병원 및 종합병원들도 신규 간호사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각종 공무원, 대학교원, 항공사 여승무원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해오던 관행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왔다. 본 사건에서도 위원회는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리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위계질서나 협조관계가 간호사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배 간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보면서,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나이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일정 나이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신입 간호사 공개채용 시 응시 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 설계 · 감리 용역 경쟁 입찰 시 감리원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인 이모 씨는 한국○○공단이 감리 용역을 경쟁 입찰할 때 감리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한 감리자에 대해 감점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가 된 감점 기준은 공단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있는 것으로 그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였고, 참여감리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기술능력과 활동능력이 필요하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 감점 기준을 도입한 것일 뿐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년을 기준으로 감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일반 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및 항만건설공사 등의 감리자 선정에 소속 감리원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 및 관행에 대하여, 나이와 감리원 업무 수행능력 간에는 본질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시정을 권고해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 · 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크고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현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규정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07. 5. 2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72호) 의 [별표] 중 감리원 연령에 따른 감점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또 다른 피진정인인 한국○○공단이사장에게 건설교통부의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감리원 연령에 따른 감점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3)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진정인 박모 씨는 ○○대학교가 2007학년도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에서 병역미필자는 1987년 1월 1일(만 20세)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1983년 1월 1일(만 24세)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해당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과정의 특수성,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하는 군 조종 장교의 임관 나이 제한 및 민간항공사에서의 입사 후 기장 승격까지의 긴 복무기간,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고령일 경우 예상되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생들이 해당 학과 입학 후 타과로 전과하기도 하고 해당 학과의 졸업생들이 군 조종사 및 민간항공사로만 진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항공사 조차 조종사를 채용할 때 해당 학과의 나이 제한 기준과 연동하여 나이 제한을 하지 않으며,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고 피진정인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정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응시 자격을 나이에 의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4) 프로 입문 골프대회 참가자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

진정인 유모 씨는 "한국○○협회가 프로 입문에 필요한 대회인 퀄러파잉스쿨과 프론티어 투어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프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대회 참가 가능 나이를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첫째, 과거 테스트 기록에서 50세 이상의 선수가 응시·통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둘

째, 대회참가 비용이 커서 프로무대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회원 선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 셋째, 프로경기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더불어 상당한 체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는데 만 50세 이상의 선수에게는 무리가 따르고 골프 경기의 특성상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평균수명의 급격한 상승 및 의료·보건 인프라의 선진화로 인해 나이와 체력 혹은 나이와 경기력 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나이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계 위협의 위험은 당사자인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인적 문제일 뿐 자격 제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경기력이 낮은 선수들의 경우 경기 진행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 공인 최저타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여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력 평준화를 시도해야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협회에 대해 50세 이상인 자가 퀄러파잉스쿨 및 프론티어 투어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9.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출신 국가'는 과거의 국적, 즉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이전의 국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국적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혼인이나 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된 자를 과거의 특정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고, 특정한 기본권의 영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내국인에 비해서 또는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인종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 거부

○○○○인인 피해자들은, 이태원동 소재 ○○레스토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특정대륙인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흑인이라고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이처럼 흑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 이용을 거부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레스토랑 측은 최근 레스토랑에서 ○○○○인들과 직원과의 마찰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영업상 손해를 준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국적 혹은 인종을 이유로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러한 식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정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의 참고인은 피해자들이 레스토랑 출입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의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과거에 ○○○○인이 레스토랑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 모두를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보는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레스토랑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1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학력(學歷)'은 "졸업장이나 학위 등에 의해 표상되는 제도교육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지적 능력이나 실력을 의미하는 학력(學力)과는 구분된다.

(1)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차별

진정인 박모 씨는 ○○청이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서 식품직 7급의 경우 응시원서에 출신 학교명을 기재하게 하고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은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개경쟁 채용 방식과 자격증 또는 학력 등에 의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식품위생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연구직 등 전문 인력의 충원은 청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방식 중 학력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학력 제한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력란에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의 채용 관행상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크고, 학력란이 기대하는 목적을 넘어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학력만이 식품직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의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연구 · 근무 경력자, 학위 소지자 등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력차별의 소지 없이 우수한 전문가를 공직에 입문시키려는 특별채용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교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개선하고, 학력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 외사요원 채용 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차별

전문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진정인 이모 씨는 ○○청이 외사요원 채용 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해당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 조치하였으나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학력 차별을 방치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청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가 없고 또 해당 자격증의 대외 활용도도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소지를 응시자격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대신 해당어권 거주 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인된 자격증 제도 없는 경우에도 필기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해당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청장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 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인 진정인 박모 씨 등은 "○○항공이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공은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채택한 인사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이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 조사 개시 후 ○○항공은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항공 승무원의 업무 매뉴얼인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에서 승무원의 업무가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고, ○○항공의 승무원 채용 공고에서도 국제선과 국내선 승무원 모두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다만 서비스 절차,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과 관련한 업무에서 두 승무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차이가 학력 요건에서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국제선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 능력, 체력, 수영 능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 능력과 업무 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피진정인에게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피진정인 스스로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전략의 실체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최근 도입한 전환제도는 직무전환에 필요한 국내선 승무원 근무경력 기간과 세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러한 전환제도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국제선 승무원으로 입직할 기회에서 차별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이 국제선 승무원 모집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항공에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신분'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등급적인'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를 의미하는바, 이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된 신분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간 점'한다는 것은 해당 지위가 하나의 표식처

럼 그 점유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닌다는 의미 이외에 낮은 등급의 사회적 평가를 받는 지위를 점한 자가 그 지위로부터 벗어나기가 일정 정도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1) 사내 교육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배제

한국○○○원의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 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원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은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소비자 상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담원의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상담 업무의 능력 향상과 관계가 없는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됐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일반 소비 생활 분야는 물론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였고, 상담원의 신분이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년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66.7%였고 10년 이상을 근무한 상담원도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은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직장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교양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정규직만 수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원의 「교육훈련규정」에서도 훈련교육 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교육대상 직원의 범위가 정규직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었다. 나아가 위원회는 ○○○원의 상담원 21명이 최대 두 과목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이 연간 300만원 내외로 ○○○원이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규직 상담원들에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한국○○○원장에 대해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차별

박모 씨 외 312명은 ○○데이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원으로서 회사 측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조합원의 범위 규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조합전임자 규정 및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한 임금인상률 및 해고 여부 결정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에게는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업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직원들 중 계약직만 해고하고, 가족수당, 월동보조비, 귀향지원비, 병가, 재해보상, 종합건강진단, 휴직 및 휴직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제도를 지급 또는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조합원들을 배제하거나 달리 대우하며, 계약직의 직무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최대 상한연봉을 정하여 계약직의 경우 아무리 평가를 잘 받고 장기 근속하여도 최대 연봉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오던 것으로 나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추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을 포함하여 진정 내용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으며, 가족수당 등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수당 등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회사 측은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시정하기는 했지만 조합원의 범위 규정,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 규정 등을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했고,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도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회사 측에 대해서 계약직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

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장기근속휴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해당 휴가를 실시해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직 조합원을 달리 대우하지 말 것을 회사 측에 권고했다.

1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종교를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종교'는 "기존의 확립된 종교만이 아니라 신흥종교, 무종교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적 또는 무종교적 신념이 일정 정도 진지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 ○○대학교 교수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대학교 해직 교수인 조모 씨는 ○○대학교가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여 실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대학교 측은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설립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학교 역시 정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상의 설립 목적이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교수 채용 공고문상의 응모자격은

‘○○교 정신을 구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이며, 지원서는 세례 유무, 세례연도, 신앙 관련 추천인 3인의 연락처, 신앙관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며, ○○대학교 전임 및 비전임 교원 178명 중 ○○교인이 177명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대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교인으로 제한하였고 ○○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해당 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응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인정되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지원자를 ○○교인으로 제한하고 ○○교인인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차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대학교의 설립 목적, 교과목 등의 종교성 정도에 입각하여 ○○교인이어야 함이 해당 교수 직위를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검토해볼 때 12개 학부의 교과과정 중 1개 학부를 제외한 11개 학부는 ○○교 교리와 쉽게 연관되지 않는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고 있는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종교인인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든 학부 교수에 대해 특정 종교인 여부가 필수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학교에 대해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13.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기된 19개의 차별 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기타'차별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기된 19개의 차별 사유와 공통된 특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바, 그 특질은 그 사유로서 구분되는 비교 집단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비교 집단 간의 구분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힘에 의한 것이며, 해당 구분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재개발지역 거주 여부에 의한 조합임원 출마자격 차별

본 사건 피해자인 백모 씨는 진정인의 아내로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거주하지는 않았는데,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조합인가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장 등 조합임원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조합 측은 문제가 된 정관의 규정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피진정인인 건설교통부는 표준정관에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임원의 자격을 당해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당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임원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참고한 것이고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 행정, 부동산 시세 등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보다 거주한 자가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안다는 이유로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임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비록 지역 거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오래 거주한 자가 적임자일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 적임자를 비거주자의 출마 제한으로 미리 선별해내기보다는 일단 비거주자에게도 출마자

격을 부여하면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그들에게 조합임원 출마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해 해당 정관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록 표준정관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각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들의 정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표준정관의 해당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14. 간담회 · 토론회 · 워크숍 등 개최

2007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며, 차별 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표 2-4-6]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연번	구분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1	간담회	비정규직 경력 호봉 산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1.9	· 호봉 산정 시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그 70%만 인정하는 것의 차별 여부
2	토론회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2.21	· 성전환자 성별 변경의 문제점, 관련 법률의 입법화, 성별 변경 관련 판단기준 등
3	간담회	지역별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	2.28	· 장차법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쟁점사항, 위원회와 장애단체와의 협력 방안
4	〃	이주인권 관련 기관 정책 간담회	3.9	· 이주인권 관련 정부기관 정책현황 및 협력 방안
5	토론회	여성 공무원의 배치 및 승진 차별에 관한 토론회	5.2	· 여성 공무원의 승진 및 배치 차별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6	〃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토론회	5.22	· 이주민 자녀의 인권 실태 및 차별 개선 방안
7	청문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관련 청문회	8.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필요성, 보호 입법의 내용 및 쟁점 등
8	토론회	국내 거주 장애 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8.30	·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 관련 정책 과제 및 외국 사례
9	〃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 인권 토론회	9.12	·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숙학원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10	워크숍	난민 보호 워크숍	10.23	· 난민 보호의 국제 동향과 전망
11	토론회	독일 이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 이주 관련 토론회	11.6	· 재독 한인의 이주사 및 인권운동
12	간담회	여성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업 관련 간담회	12.18	· 여성 비정규직 차별 실태 및 정책 대안 모색

(1) 비정규직 경력 호봉 산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1월 9일 호봉 산정에서 정규직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경력은 70%만 인정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험절차를 통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호봉 산정에서 정규직 전환자들의 비정규직 경력을 70%만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전문적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고 호봉 산정에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정하게 인정되므로 엄격하게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진정된 내용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잠정적 조치의 대상자들의 호봉만을 70%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호봉산정 규정 자체에서 비정규직 경력을 70%로 규정하였으므로 차별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비록 이 진정사건은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각하 처리되었지만,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장을 정리하여 앞으로 들어올 유사한 진정사건의 해결에 활용할 예정이다.

(2)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위원회는 2월 21일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진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전환자 당사자의 증언에서는 성별 변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기성형 수술과 관련된 증인, 결혼 및 자녀와 관련된 증인, 청소년 증인 등이 성별 변경과 관련하여

朝鮮日報

2007년 02월 22일 a09면

"자식 있다고 성전환 인정 안해줘"

성전환자들, 인권위 토론회서 고충 털어놔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호적 고쳐줘야"

성(性) 전환자들이 공개석상에 나와 어려움을 토로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성전환자 성별(性別) 변경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성별 호적을 고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성별 호적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학교 입학하기 사흘 전부터 밤낮을 울었습니다. 치마 교복을 입고 싶지 않았거든요. 2차 성징(性徵)이 시작되고 가슴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부턴 붙을 켜고 샤워하지 못했어요. 칼로 가슴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남자가 아닌 제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20대 초반에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FTM·Female to Male)을 한 한무지(가명·20대 중반)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청소년기 내내 방황을 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술·담배를 하며 거칠게도 살다가 여고를 중퇴했다"며 "청소년 때 성별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렇게 큰 좌절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가명·30대)씨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살아오다 성(性) 정체성을 깨닫고서 이혼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론 아직 여성이 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아이가 처음엔 내 달라진 모습에 곤란해했지만, 이젠 나를 '엄마'로 받아들인다"며 "이젠 호적으로도 '엄마'가 됐으면 한다"고 발표문을 통해 말했다. 사정상 이 날 토론하지 못한 김씨의 원고는 대리인이 읽었다.

김명인(가명·38)씨는 성기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성별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침을 꼬집었다. 그는 "남자로 살기 위해 생식기 제거와 가슴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유증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서 "친구 중 1억여 원을 들여가며 성기 성형수술을 한 이들도 너무 잦은 수술로 인해 죽음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혁진기자 enavel@chosun.com

김경은기자 larrisa0204@chosun.com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토론회'에서 성전환자 김은주(가명)씨의 대리인(왼쪽)과 한무지(가명)씨가 성전환자로 겪어온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 이태경객원기자 ecaro@chosun.com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증언을 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사회적·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기본권의 측면에서, 그리고 의학적 측면에서, 성전환자 성별 변경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관련 법률의 입법화의 현 단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성별 변경 및 개명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판단 근거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특히 대법원 호적 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헌법과 국제 기준 등에 비추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행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3) 지역별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위원회는 장애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쟁점과 위원회의 관련 업무 방향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별로 장애인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 28일 용인에서 시작하여 12월 12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총 12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차별 개선을 위한 대전지역 단체 간담회 2007. 5. 22.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는 지역의 장애인 차별 및 개선 사례, 단체 활동사항 등을 파악했고, 위원회와 지역 장애단체와의 업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차별 조사 및 구제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들의 위원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4) 이주인권 관련기관 정책 간담회

위원회는 3월 9일 이주인권 관련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위원단, 이주인권포럼 운영위원회의 위원단, 그리고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4개 정부부처와 함께 이주인권 관련기관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이주정책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계획 및 전략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들 간의 상호 협력과 유기적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개최됐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이주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 시스템 구축하며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주인권에 관한 통합예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5) 여성공무원의 배치 및 승진차별에 대한 토론회

위원회는 5월 2일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차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와 향후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의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주희 교수는 공직에 여성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는 남성들이 수행하고 지원부서나 민원업무는 여성들이 주로 맡는 경향이 높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2.1%에 불과하는 등 여성의 공직생활에 장애가 작용되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은 아직도 견고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중앙인사위원회의 담당자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공직에 진출한 여성 공무원이 능력을 발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현재 5.4%에서 2011년에는 10%까지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부처 및 시·도의 여성정책 및 인사담당자, 공무원노동조합 및 사무노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여성이 공직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의 실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직에서의 유리천장과 유리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6)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토론회

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정체성의 문제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새터민 청소년 및 몽골학교의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이민자 2세 사회통합 정책', 여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정책', 통일부의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제도', 교육부의 '새터민 청소년 지원계획' 등 이주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맞이하여 이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관련 청문회

위원회는 8월 17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각계 진술인들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보호의 필요성, 보호입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 내용, 보호입법의 내용 및 쟁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청문회에 앞서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게 했으며, 청문회 결과를 검토한 후 9월 17일 국회의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8) 국내 거주 장애 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장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화교 장애인의 차별 실태에 대한 논의와 국내 거주 장애 외국인의 제도적 차별과 해소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의 영주권 소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및 입법례 등을 조사하여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9)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 인권 토론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군이 운영하는 공립학원 형태인 기숙학원이 공교육과 학생인권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관련 당사자인 ○○군수, 기숙학원 입실자 학부모, ○○군민, 전교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군은 2003년부터 농촌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중고생 가운데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뽑힌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 인재숙이라는 공립 무료 기숙 학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공립학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이 공교육과 학생인권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0) 난민 보호 워크숍

위원회는 10월 17일 난민 관련 국제동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고 난민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사무소 대표와 법무관을 강사로 하고 위원회 조사관 및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약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 보호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난민 보호의 기본 원리 및 사례, 한국 및 아태지역에서의 난민·이주민 인권 현안,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기준과 해결 노력, 구금시설의 난민문제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강의와 참석자들 간의 의견 개진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난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11) 독일 이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 이주 관련 토론회

위원회는 1960~70년대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 및 간호사의 이주 사례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민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파독 광부 및 간호사의 이주민 운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고 '독일 이주민 2세의 교육과 문화', '독일의 이주정책', '독일 이주사'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의 이민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이주사례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 한인이주자 초청 포럼 2007. 11. 6.

(12) 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업 관련 간담회

2007년 위원회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여성 비정규직 차별사건이 여러 건 진정됐다. 위원회는 여성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2월 18일 여성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여성정책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상황 공유와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 실무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비정규직들이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으나, 간접고용화, 여성 업무의 주변 업무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차별이 가려지고 있어 이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성차별 및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3절 평가

2007년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대한 평가는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활동,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그리고 차별시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007년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에서는, 첫째, 전년도에 대비하여 진정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크게 단축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07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04일로, 전년도의 159일보다 55일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차별 진정사건의 인용률은 2006년 44.8%, 2007년 45.3%로 매우 높은 편이나, 수용률은 2007년 12월말 기준 87.8%로 다소 낮은데, 이는 권고 사안들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위원회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권고 사건 중 검토 중이거나 미회신인 것에 대해 이행 현황을 일체 점검하고, 권고 등에 관한 사후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7년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차별 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진 차별 사유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접수된 사건들 중 전년 대비 접수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 차별 사건(2.2배), 성희롱 사건(1.6배)과 나이 차별 사건(1.6배)인데, 그 중 장애 차별 사건과 나이 차별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움직임과 함께 해당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 사건의 증가는 점점 활발해지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성 평등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 사유의 사건들은 관련 법들이 통과되거나 발효되면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계속 증가하면서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여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7년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획조사에서는, 위원회는 '수사, 재

판, 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차별시정 정책을 제시했고, 시청각중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 및 한센인 자녀에 대한 교육권 차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기획조사는, 그 주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사유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기획조사가 8건밖에 추진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기획조사는 진정사건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조사와 같이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업무는, 그리고 진정사건의 처리 업무도 이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2007년 위원회는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우선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차별전문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등 4개의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를 총 11회 개최했다. 또한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국내 법규범에 부합하는 풍부한 내용의 차별판단지침을 발간하여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적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했고, 차별사건 결정례집, 성희롱 결정례집, 장애 및 병력 차별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조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APF 지원 조사관 역량 강화 훈련'을 포함하여 각종 조사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지원 업무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내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2007년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조사에서는 사건처리일수를 대폭 줄이는 등 효율성을 제고했으나 권고 수용률이 여전히 낮아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2007년 위원회는 기획조사를 그리 많이 실시하지는 않았던바, 기획조사가 갖는 적극적이고 큰 차별시정 효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좀 더 많이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별 시정 업무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에서는 2007년 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러한 지원 업무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1절 개 요

유엔은 인권교육을 인권실현의 출발점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극복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의 이런 취지에 맞게 2006년부터 조직과 업무를 인권교육 대상별로 학교교육, 공공교육, 시민교육으로 팀을 구분하여 모든 사람이 평생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교육대상별 내부 업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대학·사회복지·기업·언론인 등 교육대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초·중등 정규교육과정과 직장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고,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하여 대학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고, 군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의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2006년에 권고한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인권교육 분야 내용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사회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담당해야 할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여 향후 5년간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공무원 4,800여 명 등 총 9,000여 명이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교육관련 세부 추진실적을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시민부문 인권교육 확산 순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

(1)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교육원 설립 추진

위원회는 법안을 확정하기 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4월 23일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입법 방식으로 국무총리 법률안 제출을 건의한 이후 2차 부처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이 제시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법무부와는 장·차관 면담을 통하여 이견을 해소하였고, 특히 법무부와는 국무조정실·청와대의 조정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교육원 설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최종 7개 조항으로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런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와 함께 유엔이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인권교육에 관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시행 책무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5-1] 인권교육 법제화 주요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07. 3.12.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초안) 확정 ('07. 3. 12, 전원위원회)
2007. 3.16.~ 3.30.	– 의견수렴(홈페이지 게시, 중앙부처 · 지자체 및 시민단체 의견조회)
2007. 4. 2.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2007. 4. 4.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개최
2007. 4.23.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확정('07. 4. 23, 전원위원회)
2007. 5. 9.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출 건의(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실)
2007. 5.11.~ 5.23.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2007. 5.15.~ 6. 4.	– 입법예고 관보게재
2007. 6.~ 7.	– 이견에 대한 부처(행자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협의
2007. 7.~ 10.17.	– 법무부 협의 및 국무조정실 · 청와대 주재 이견조정
2007. 11. 2.	– 정부안 확정(10.31.) 후 국회 제출(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논의 중)

위원회는 2006년 실시한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권교육원 설립 방안을 작성·보고하고,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소속 및 산하의 29개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기관별 설립일자, 설치근거규정, 조직 및 인력, 교육시설 규모, 2007년 예산, 2006년 교육인원 등)했다. 인권교육원 설립 전단계로서 2008년 예산에 인권교육센터 운영 예산을 반영하고 2007년 11월에 인권교육 훈련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보고했다.

(2) 인권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는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인권교육법 입법 추진 등 그 어느 해보다 인권교육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학교 영역, 공공기관 영역, 시민사회 영역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 20명(외부위원 17, 내부위원 3)으로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추진단(종합계획수립TF)을 구성해 운영했다. 종합계획수립TF는 총 4회의 전체 회의와 6~7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인권교육 여건 분야, 학교 분야, 공공기관 분야, 시민사회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향후 5년간의 인권교육 실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은 제3부 특별사업 편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3)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의 디딤돌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 교원, 공무원, 학생 대상으로 인권이해, 장애차별예방, 성차별예방, 행정과 인권 등의 사이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2006년 월 평균 162명이던 사이버 인권교육 신청자가 2007년에는 월 평균 734명으로 353% 증가했다. 사이버인권배움터는 2007년 8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추천되기도 했다.

[표 2-5-2]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대상 / 총계		일반시민		공무원		교 사		학생 (사이버강좌+원격화상)	
회수	총(명)	회수	교육인원(명)	회수	교육인원(명)	회수	교육인원(명)	회수	교육인원(명)
37	**9,435**	9	783	9	4,895	2	1,430	17	2,327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학습자모드(수강신청, 학습, 시험 및 과제제출, 증명서 관리 등), 교수자모드(강의계획, 과제 및 평가, 성적, 진도관리 등), 관리자모드(학습자, 강사, 학사관리, 통계관리, 운영관리 등) 3가지 유형의 사이버 학습관리 시스템과 인권교육 포털을 2007년 12월 구축하여 2008년 사이버인권교육의 기반을 재구축했다. 또한, 2007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사업으로 『한국사회와 인권』(15차시)이라는 1종의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 중 인권의 이해, 장애차별예방과정의 내용을 보강하고 학습 참고교재를 재작성하여 사이버학습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제공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다수 부처 공통 전문교육과정으로 『인권의 이해』(9시간-1점), 『장애차별예방과정』(10시간-1점), 『성차별예방과정』(10시간-1점), 『행정과 인권』(15시간-2점) 4과정이 지정되어 공무원의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 학교 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하려면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내용의 반영, 둘째 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 능력, 셋째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친 인권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학생(아동) 관련 4개 중앙부처 및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6개 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통해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과장급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했다.

제1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2007.10. 5

2007년 개정교육과정(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은 중시되

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인권교육이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각 교과 중 도덕과의 경우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인권을 비롯하여 정보윤리, 생명윤리 등이 강조되어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 들어 있고 사회과의 경우에도 인권 단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타 과목에서도 인권과 연결된 내용이 강화됐다.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2007. 9. 19

위원회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될 교과서에 인권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교과서 인권내용 체계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교과서 집필기준 및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07년 시·도 교육연수원의 인권강좌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17개 교육연수원(16개 시·도 교육연수원 및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총 435과정-3,543시간-의 인권 관련 과목을 편성 운영해 3만4,000여 명이 수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관련 강좌의 수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2005년의 경우 인권관련 과목의 대부분이 특수교육(49.6%) 및 양성평등교육(40.2%)에 편중되고 인권교육 일반에 대한 강좌는 4.7%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인권교육 일반(아동,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강좌의 비율이 8.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연수기관에 인권강좌가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또한, 2006년 9월 8일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장 인권교육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07년 12월 12일 연수기획 실무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기관장과 실무자 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인권가치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대학을 육성·확산하여 인권의 주류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을 2007년 1월에 마련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및 학위과정 운영, 인권관련 기구 설치,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학교의 친인권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했다.

위원회와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전남대학교와 영남대학교는 인권전담기구 설치(공익인권법센터, 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전문지 발간(『인권법평론』, 『인권이론과 실천』), 인권자료실 개설 등을 통해 인권기반을 구축하고 위원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 위탁운영,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용역 수행, 인권교육 지역실천대회 및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인권연구와 인권교육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지역 내 인권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2-5-3]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교류협정서 체결 현황

학교명	체결일	체 결 내 용
전남대학교	2006.12.06.	1.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지역 내 인권교육연구의 발전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 수행 2.인권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권교육 시행에 노력하고, 위원회는 이에 협력 3.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 내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4.양 기관은 인권에 관한 자료 등을 상호 교환하고, 대학교는 인권자료 비치공간을 마련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이에 협력 5.인권 연구 또는 조사 등의 현장 업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소속 직원의 인적 교류 추진 6.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인권관련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인권실무수습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영남대학교	2007.04.27.	
인하대학교	2007.10.31.	
한양대학교	2007.11.01.	
이화여자대학교	2007.11.21.	
고려대학교	2007.11.22.	
전북대학교	2007.12.21.	

위원회가 전국 4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강좌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58개 대학에서 113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45개 대학에서 77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응답 했다. 강좌 개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법학 관련 과목이 높은 비중(39%)을 보였으며, 국제·평화·NGO 관련 인권강좌 및 『현대사회와 인권』과 같은 일반사회 영역의 인권강좌가

교양과목으로 개설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 관련 인권강좌와 정보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는 강좌도 새롭게 개설되는 추세에 있다.

[표2-5-4] 학문영역별 인권강좌 개설 현황

영 역	대학원			학부			합 계
	개설중	개설계획	소계	개설중	개설계획	소계	
국제 · 평화 · NGO	7	5	12	11	5	16	28
법 · 정치 · 경찰	16	13	29	28	13	41	70
사회복지	2	–	2	5	4	9	11
일반사회	–	1	1	16	1	17	18
사회적 약자	4	2	6	15	5	20	26
기타 · 일반 · 정보	3	2	5	6	12	18	23
합 계	**32**	**23**	**55**	**81**	**40**	**121**	**176**

(3) 인권교육 촉진 · 지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학교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원회는 제2기 인권교육연구학교에 대한 운영자 워크숍(2차) 개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보급, 강의지원, 연구학교 운영 관련 기술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해당지역에서 지역교육청, 교육관계자들의 참여 아래 인권교육 연구과제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와 제2기 연구학교 운영성과물의 종합 전시 및 종합발표를 통해 연구학교의 성과를 상호비교 평가하는 종합보고회(2007. 12. 12. ~ 13.)를 통해 2년간의 운영과정을 정리·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했다.

인권교육연구학교 종합보고회 2007. 12. 12~13

[표 2-5-5]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기 간	구분	학교명	연 구 과 제
2006.3~2008.2	전남	세풍초등학교	체험중심 인권교육을 통한 인간존중 의식의 함양
	전북	옥구초등학교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경북	옥곡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권 존중 의식 함양
	충남	신양초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한 바른 인권의식 함양
	충북	동락초등학교	체험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권 의식 함양
	경기	복창초등학교	다양한 인권체험활동을 통한 인권존중의식의 내면화
	경남	수산초등학교	통합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권문화 정착
	울산	화봉중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청소년 인권의식 생활화
	경남	산청중학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경남	월산중학교	체험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권존중 의식 함양
2007.3~2009.2	인천	서흥초등학교	실천중심의 인권교육 활동을 통한 인권존중 의식의 내면화

위원회는 학교 교육현장 및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다양한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권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교육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지역 인권교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별 실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표 2-5-6] 권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개최현황

구 분	광주 · 전남지역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수도권지역(강원, 충청 포함)
일 시	2007.11.28.(수)	2007.11.29.(목)	2007.11.30.(금)	2007.12.13.(목)
장 소	전남대	부산문화회관	영남대	KSA인재개발원
발표사례	7개 사례	8개 사례	11개 사례	16개 사례

위원회는 26건의 공모사례 중 9개 사례와 20건의 지역 발굴 자유사례 중 2개 사례를 2007년 인권교육 우수 실천사례로 선정하고, 그 중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권 영역의 인권교육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연극영화매체를 이용한 청소년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임동헌)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표 2-5-7]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

분야 (입상내역)		수상자	단 체 명	제 목
학교 분야	평등상 (최우수)	임동헌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연극영화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
	인권상	정병남	효양중학교(경기 이천)	인권존중 우리가 지키며 함께해요
	인권상	황희선	참 NIE 연구회	장애인 도서를 활용한 NIE인권교육
	인권상	김지원	문현초등학교(부산)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다운 약속
	인권상	나은임	월성초등학교(전북 김제)	토론과 동화를 통한 사랑 감전 프로그램 운영
	인권상	김수현	부천북중학교(경기)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 학생 동아리(인권사랑방) 운영
	인권상	이은주	신서중학교(서울)	학생회와 함께한 '인권교육' 체험
	인권상	이필우	마산합포고등학교(경남)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인권 신장방안
시민 분야	인권상	이재현	인권교육활동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
	인권상	채종걸	장애인인권센터(서울)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인권상	김완규	장애인생활시설가온들찬빛(부산)	생활시설 내 장애인 인권교육 실제

한편 위원회를 학생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해오던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콘텐츠를 보강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방문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기본프로그램과정,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과 도시문화체험을 연계하는 지역학교 프로그램과정,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에 사이버 인권교육을 연계한 blended learning 과정(사이버 교육 + 방문교육)으로서 수료 후 인턴쉽 자격을 부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30회에 걸쳐 1,170명이 위원회를 방문해 체험과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및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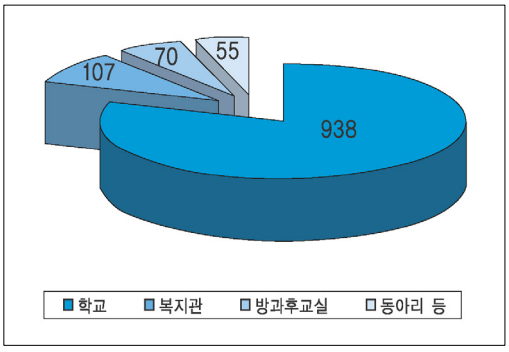

[그래프 2-5-1] 방문프로그램 유형별 인원(명)

그 외에도 학교 현장 및 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1회에 걸쳐 위원회 직원 또는 외부 강사 파견을 통해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실시했다.

(4)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위원회는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이해하고,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기본과정(5과정), 심화과정(1과정) 등 2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사이버강좌(5시간)와의 혼합과정(blended)으로 구성·운영했다.

[표 2-5-8] 2007년 교원 인권 연수과정 운영 현황

과 정	위탁운영기관		일 정	이 수		
				초등	중등	계
기본과정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서울)	7. 30 ~ 8. 2	10명	30명	40명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수원	(광주)	8. 7 ~ 8. 10	26명	–	26명
	신라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	(부산)	8. 7 ~ 8. 10	6명	25명	31명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경북)	8. 7 ~ 8. 10	15명	8명	23명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광주)	8. 7 ~ 8. 10	–	36명	36명
심화과정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서울)	'08. 1.14 ~ 1.17	12명	17명	29명
합 계				69명	116명	1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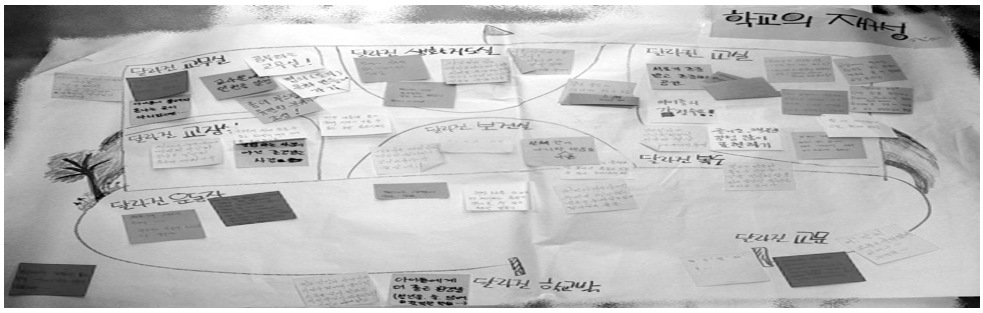

학교의 재구성 – '인권'이 흐르는 학교 문화 조성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기초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소통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실현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주한 영국대사관,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담당 장학관·연구관 및 인권교육 연구학교 교장·교사 등을 주 대상으로 2007년 2월 서울, 부산, 광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국제워크숍

주 3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했다. 영국의 스타키(H. Starkey) 교수와 오슬러(A. Osler) 교수를 초청해 '한국·영국 인권교육정책 및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교육 실천사례에 대한 상호교류'란 주제로 실천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의 학교운영 및 교실수업 등에서 인권적 관점의 도입과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사인권이 약화된다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반비례적 관계 인식에 대한 학교 내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와 한국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등장한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키스(M. Keith) 교수와 매카시(L. McCarthy) 교수를 초청하여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대구(12. 6)와 광주(12. 7)에서 개최했다. 영국의 다문화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 방안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존중과 관용의 바탕이 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교육 이론의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인권전문가, 교육전문가, 학계, 교육현장, 행정 정책가 간 소통과 충전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권교육포럼을 제안하여 2007년 12월 14일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인권교육 포럼은 인권교육 담론 형성, 인권교육 현안 발굴, 발굴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제1차 포럼을 통해 포럼의 위상,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토론회, 워크

숍 등의 개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인 호주의 짐 아이프(Jim Ife) 교수를 초빙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 '사회복지분야 인권 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 관련단체 등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인권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토론회 2007. 12. 14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의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인권과 사회복지의 두 영역이 통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2006년에 개발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연구자,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을 순회하며 교재 활용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개발된 교재 및 프로그램을 실무에 적용하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군대, 경찰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교재 6종을 개발했다. 종래 연구용역에 의한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위원회가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여 직접 개발했다. 개발팀은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6개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에는 외부 전문가 및 국방부·경찰청·협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개발팀 회의를 통해 실무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쟁점사례들을 발굴하고, 사례별 인권보호 직무가이드를 도출해냄으로써 교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문교육교재는 군인, 수사, 군 의료, 경찰 경비, 정신장애 및 노인 등 각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5-9] 개발교재 주요 내용

교 재 명	주 요 내 용	교 육 대 상
국군 인권교육 교재	· 현대사회와 군인의 인권 · 전쟁 · 분쟁 및 지휘권과 인권 · 군인의 권리 사례연구 · 인권침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군인, 군무원 등
군 의료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	·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및 쟁점사항 · 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 군에서의 환자 인권보호 방안	군 의료 종사자
수사와 인권	·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 내사, 불심검문, 범죄수사 활동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가이드 · 피의자 신문, 강제수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가이드 등	경찰 및 군 수사업무 종사자
경비 경찰 인권교육 교재	· 인권 최우선 집회관리 원칙 · 집회단계별 인권보호 요령 ·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집회 참가자 인권보호	경비업무 종사자
노인인권교재	· 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 ·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인권 이해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 지침 ·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방안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교재	·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중요 쟁점 · 정신장애 치료관련 인권 · 시설,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인권실천방안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2)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 제도화는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유인 없이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므로 인권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 마련이 요구된다. 2007년에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군대,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분야의 인권교육 제도화에 역점을 두었다.

군 분야는 위원회가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전반을 담은 '군 인권교육 규정'(초안)을

개발하여 국방부가 자체 인권교육 훈령화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11월에는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교육 제도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 제도화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였고, 국방부는 군 인권교육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군 제도화 사업은 군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구성하여 군 인권교육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당해기관이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방부와 공동개발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2006년에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이래, 사회복지 현장 투입 이전단계(Pre-service 단계 :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현장 투입 이후단계(In-service 단계 : 사회복지사 대상 직무교육)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오고 있다. 2006년에 「사회복지학교과목 지침서」 상 6개 과목에 인권 관련 내용이 삽입됨에 따라 2007년에는 Pre-service 단계인 대학 사회복지학 과정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됐다. 그리고 In-service 단계의 제도화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행사를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인권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일반 행정 분야는 2006년에 3회에 불과하던 인권특강 요청 횟수도 총 12회(1,975명)로 증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는 군대, 사회복지 등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인권교육 내용 등을 담은 인권교육 제안서를 작성하여 각 교육기관의 교육장 혹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다. 추진 현황은 2007년에 광주, 대전, 경기, 경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7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경기, 경남, 대구, 부산, 강원)가 2008년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인권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관한 워크숍'개최(2008. 3. 개최 예정) 등을 기반으로 행정 분야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관련 기관과의 공동개최를 통한 공공부문 연수과정운영

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군 분야의 인적 인프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에는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및 복지행정공무원 등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운영 방식은 위원회 직접 운영 2회(2박 3일 과정), 위 탁 운영 16회(1일 과정) 실시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인권교육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군대의 경우 인권교육 교관 및 업무담당자, 육군·해군·공군 사령부 소속 지휘관(대대장급)을 대상으로 숙박(2박 3일 과정) 및 권역별 순회교육 4회(1일 과정) 형태로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 병영 내 인권 쟁점에 대한 토론, 인권 친화적 의사소통, 리더십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표 2-5-10]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연수과정

교육과정	대 상	인 원	교육기간	비 고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인권교육 교관 및 업무 담당자	40명	2007. 7. 10 ~ 7. 12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	육군, 해군, 공군 지휘관 (대대장급)	170명 (4회, 순회교육)	2007. 7월, 11월	
정신요양시설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정신요양시설 사무국장	60명	2007. 11. 13~11. 15	
노인복지시설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24명	2007. 11. 21~11. 23	
장애인생활시설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214명 (8회, 순회교육)	2007. 10월	위 탁
복지행정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복지행정공무원	193명 (8회, 순회교육)	2007. 10월, 11월	위 탁

이번 연수과정을 기획하면서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회의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했고, 군 분야는 국방부 인권팀, 사회복지 분야는 한국정신요양협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위원회는 참가자 대다수가 "인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각 영역에서 어떻게 인권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수요조사,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기획회의 등을 통해 교육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4) 인권교육 협력 및 지원

위원회는 워크숍 개최, 연수과정 운영 등 인권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방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함으로써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당해기관에 위원회의 기술이전을 도모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확보 및 축적 관리하여 인권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서는 공공·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고, 인권교육 교재 개발 시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기 개발한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중 국제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찰인권교육방법',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등 2종의 자료를 영문화했다. 이 자료는 인권교육 경험이 적은 개도국 인권기구에 대한 기술지원, 외국 주요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교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에 법무, 행정, 군대, 사회복지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향상을 위해 총 179회 강사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101회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강사풀과 표준강의안을 작성하였으며, 2008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총 475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군인, 사회복지학과 학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16회, 468명을 대상으로 방문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전년도 13회, 354명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회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에게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표 2-5-11]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원 실적

(단위:회/명)

구 분	경찰		검찰/교정/출입국 등		군대		일반행정등		사회복지		기타		합 계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인권교육 강사지원	59	6,011	25	3,059	7	1,176	14	1,989	72	5,124	2	95	179	17,454
방문 프로그램	11	349	–	–	–	–	1	23	4	126	–	–	16	498
합 계	70	6,360	25	3,059	7	1,176	15	2,012	76	5,250	2	95	195	17,952

2007년 10~12월에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과 인권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10.31), 부산(11.20), 광주(12.10) 3개 지역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권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영화 상영, 재즈·해금 공연, 시 낭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권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향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문화 향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시민부문 인권교육 확산

(1) 기업 대상 인권교육

지구적 차원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기업은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Global Compact를 주도하고, 10개 원칙 중 6개를 인권 관련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세계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표준화 제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인권가치를 수용하는 데 있어 경제 선진국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 친인권적 기업경영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한편 사회적 의제화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의 CSR 논의를 토대로 기업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 및 시민일반 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기업이 인권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소비자, 투자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CEO 모임(2007. 5. 16.)과 주요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특강을 시행했다. 특히, '인권'에 대한 기업들의 생소함과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Business & Humanrights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인 Aron Cramer(미국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대표), Alan Knight(영국 AccountAbility 이사), Michael Wright(미국 변호사, UN 기업인권 특별대표인 John Ruggi 교수와 함께 Fortune 500대 기업에 대한 인권정책 실행 현황 조사 실무진행)를 초청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2007. 9. 18.)했다. 또한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경영'교재를 개발했다.

(2) 언론인 인권교육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UNDHRE : Plan of Action for the 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에서는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집단인 언론의 역할에 주목해 언론인들이 인권 관련 의제를 생산하고 파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조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 언론인 인권교육을 도입하면서 언론사와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식 확산에 주력한 결과 2007년에는 중앙 및 지방 언론사 신입기자 및 중견기자 대상 인권교육을 24회 실시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인권보호·증진에 있어 언론인에게 요구하는 역할 △미디어에서의 소수자 표현과 관련한 지침(BBC 에디터 가이드라인, 유니세프 아동에 관한 보도원칙 등) △의제 형성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언론보도로 촉발된 인권위 직권조사·권고 사례,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학습 등)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토대가 됐다.

이에 따라 MBC, YTN 등의 방송사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등 중앙일간지 및 지역일간지 신입기자 대상 인권교육 20회,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등 중견기자 대상 인권교육을 4회 실시했고,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과 함께 여기자 세미나 및 대의원대회 인권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언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견기자 및 독립PD 등에 대한 직접교육의 한계가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하여 장애, 여성, 이주, 노인, 아동, 성소수자 분야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는 보도 사례를 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2006~2007 기간 중 개발해 시행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인권교육 확산 노력을 기울였다.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평생교육은 제도교육의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로 노인,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주요 학습자로, 교육 내용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인권친화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위원회는 2006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인권교육을 도입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연간 1천 3백만여 명이 2천여 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인권 관점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상황으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과 인권친화적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워크숍과 인권특강을 추진했다.

또한 영화를 매개로 성, 장애, 청소년, 나이,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인권 문제를 풀어낸 '영화와 인권'시민강좌를 개설해 10회 운영했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강사풀을 축적했다.

[표 2-5-12] '영화와 인권'프로그램 및 강사풀

주 제	강 사	활용 영화
오리엔테이션 : 생활속 인권	오지혜 (영화배우) ※ 담임강사	-
연령주의 "불혹 아닌 유혹"	정희진 (성공회대, 여성학자)	· 죽어도 좋아 · 집으로 등
성소수자 "다른 것과 틀린 것"	신윤동욱 (한겨레21 기자)	· 브로크백마운틴 · 메종드히미코 등
청소년	김종휘 (하자센터)	· 센과 치히로 · 〈별별이야기〉 사람이 되어라
외모 차별 "아름다움에 대한 천 개의 시선"	이애림 (애니메이션 감독)	· 〈별별이야기〉육다골대녀 · 브리짓존스의 일기 등
장 애 "18년 만의 외출"	윤희윤 (성공회대)	· 〈여섯개의 시선〉대륙횡단 · 조제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등
성차별 "당신과 나 사이"	유지나 (동국대)	· 미녀는 괴로워 등 · 〈여섯개의 시선〉그녀의 무게 등
개인정보 "더 없이 소중한 권리"	김기중 (변호사)	· 애너미오브스테이트 · 네트 등
종교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주류에 속한 특정집단의 횡포"	김두식 (경북대)	· 알리 · 방문자 등
촬영장에서의 아동인권 /종강식	오지혜(영화배우) ※ 담임강사	-

(4)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가 인권교육

위원회는 2007년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가 인권교육을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 인권교

육은 그 당위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자원봉사자, 방과후 학교 교사, 생활복지사 등 사회적 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활동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인권 옹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자원봉사 분야에 주목해 자원봉사협회 관계자 간담회, 전라북도, 강릉 등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 가치에 기반한 자원봉사 △자원봉사 실천 과정에서의 인권 이슈 등 교육 콘텐츠를 축적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방과후 학교 교사 및 이용시설 생활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 사회적 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자원활동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이들의 인권의식 제고, 인권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인권 관점에서의 실천 활동 내실화 등을 도모했다.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인권영화 제작 및 보급

□ 인권애니메이션〈별별 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 인권영화〈시선 1318〉 제작

위원회는 사회 일반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적 틀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인권을 주제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2007년에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와, 네 번째 영화 <시선 1318>을 제작했다. 박용제, 권미정, 홍덕표, 정민영, 안동희·유정우, 이홍민·이홍수 감독이 참여한 <별별이야기2-여섯빛깔 무지개>는 결혼이민가정, 장애, 성차별 등의 주제를

인권애니메이션〈별별 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

담고 있으며,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시민들을 비롯한 국제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극장개봉과 DVD 보급 등을 통해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방은진, 이현승, 전계수, 윤성호, 김태용 감독이 참여한 네 번째 영화 <시선 1318>을 기획·제작하였고, 2008년 극장 개봉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 인권문화콘텐츠 보급

위원회는 2001년부터 기획·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 포스터, 만화, 사진 등의 인권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데 있어 직접 보급 방식 이외에 일반 시민의 접근성과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VD 출시, 출판 등을 통한 대중 유통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인권 영화 <다섯개의 시선>, <여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과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는 카이로국제영화제, 도빌 아시안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초청 상영되는 한편, 보급용 DVD로 제작되어 비디오 대여점, 서점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었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위원회의 직접 보급 건수도 2007년에만 6,000여 건을 넘어섰다. 한편 <세 번째 시선>은 KBS 2TV와 영화 전문 케이블 방송 OCN에 방영됐다.

인권 만화 <십시일反>은 2003년 발간 이래 22쇄, 총 109,500부가 발행되었고, <사이시옷>역시 발간 2년 만에 4쇄, 총 23,000부가 발행되는 등 일반 대중의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위원회의 직접 보급 건수도 500건에 달했다.

또한, 2004년과 2006년에 개발한 26점의 포스터를 학교와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15,800여 곳에 보급하는 한편,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한 기획 보급에도 힘썼다. 아울러, 2006년에 이어 인권만화·사진·영화·포스터展 '달라도 같아요'전시회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개최하였고, 광주지역 각급학교의 단체 관람을 비롯해 1,600여 명이 관람했으며, 전시 기간중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2년부터 개발한 인권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여준 본 전시는 인권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했다.

한편 위원회가 제작한 인권문화콘텐츠는 2007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부 가정의 달 행사, 각 지역 여성영화제, 다문화축제, 부산어린이국제영화제, 여수인권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으며, TV 퀴즈프로그램의 문제로 출제되거나 논술교재로 활용되는 등 자발적인 활용 수요도 높다.

(2) 인권 영화 · 애니메이션 학습지도안 개발

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인권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왔고, 특히 인권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 교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적절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초 · 중 · 고등용 학습지도안을 개발해 보급했다. 본 학습지도안은 2007년 서울시 교육청 논술지도 교사 양성 연수에 보급되는 등 각급학교 교사들의 호응이 높았다.

영화 교안

가톨릭공부방협의회, 합포고등학교 학생 대상 인권교육

제3절 평가

인권교육 영역별로 학교·공공·시민 3개 팀으로 나누어 인권교육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장된 인권교육의 집중성과 전문성은 우리 사회 각 영역으로 인권교육 확산과 제도화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어느 해보다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먼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독립위원회도 소관 법률을 가질 수 있다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 계류 중인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국회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인 '인권교육원'을 설치하기 위해 그 근거를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초안에 두어 정부부처 협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부처의 반대로 삭제되었지만 인권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했다. 그리고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TF'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5개년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인권교육도 사이버인권교육과정운영지침, 사이버인권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사이버인권연수과정이 다수 부처 공통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이버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인권교육 수강인원은 작년에 비해 353%가 증가하여 월 평균 734명이 됐다. 그리고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를 구축하여 위원회 자체적으로 더 많은 사이버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이 사이버 인권교육제도 운영,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과정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학교·공공·시민 3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후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인

권교육 제도화 전략을 추진했다. 학교 인권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친인권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가이드 개발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인권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체계적인 협의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전남대에 이어 2007년 수도권 4개 대학(고려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및 영남대, 전북대와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인권의 주류화와 지역사회 인권증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공공 분야 인권교육의 경우 2007년에는 군대,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분야의 인권교육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군 분야는 위원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전반을 담은 '군 인권교육 규정(초안)'을 개발하여 국방부가 자체 인권교육 훈령화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면서 공무원대상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대상 직무교육에도 인권교육이 도입됐다.

시민인권교육의 경우 인권옹호집단으로 기업과 언론을 택해 인권교육 도입을 추진했다. 기업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인권적 관점 도입과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과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했다. 2006년부터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을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중앙 및 지방 언론사 신입기자 및 중견기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도 인권교육 도입 필요성을 알리고 '영화와 인권'시민강좌를 운영하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인권교육 확산의 기초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시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영화 〈시선 1318〉과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2- 여섯빛깔무지개〉를 제작하여 극장 개봉을 하였고, 인권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지도안을 개발, 보급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및 '다문화사회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안', '친인권적 기업운영'등 인권에 관한 워크숍 등 국제행사를 6회 개최해 선진 외국의 친인권적 경험 및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인권교육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권교육의 국제적 협의 채널을 마련했다.

그러나 분야별 인권교육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전략적인 대외교섭 역량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인권교육이 사회 영역별로 인권교육 도입이라는 인권교육의 양적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왔는데, 인권교육이 도입된 영역에서는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은 개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입법, 사법 등등) 인권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 인권교육의 효과는 수준 높은 인권강사와 인권교육 콘텐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능한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 또한 인권 관련 사회 현안을 주제로 하는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회적 환기 유도 및 인권 의제 형성을 꾀하고, 전 국민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 1 절 개 요

2007년은 위원회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한 해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교류협력 활동은 2007년을 계기로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심화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류가 부족했던 지역단체 및 종교계와의 협력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및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위원회는 2007년에도 국제적으로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국제조정회의(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에서 2년 임기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의 부의장기구로서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넘어 국제인권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새롭게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준비 중인 국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등 해외의 국가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에게 인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위원회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0,000여 명의 정책

고객을 확보해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국·영문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2007년 예산 삭감에 따라 격월간지로 전환한 <인권>은 보다 대중적인 편집 기획으로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담아냈다.

위원회 홍보활동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라디오 공익 캠페인 추진,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8개 국어 진정안내 리플릿 제작 등은 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한 홍보방식이었다. 또한 위원회는 주요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강화하고, 사형제 등 중요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였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1) 총 평

2007년은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 및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와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수도권 중심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외에 원주, 거창, 대전, 전주, 제주, 홍성, 강릉 등 지역에 소재한 인권단체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들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인권단체와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 해로 평가된다.

또 종교계와의 인권협력도 눈에 띄는 활동이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권위원장 방문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종교계와 기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2박 3일간 개최한 불교인권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인권주간 공동예배를 실시하는 등 종교계와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한 해로 평가된다.

(2) 지역인권단체와 협력업무 외연 확대

위원회 주요 협력대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의 인권단체에 집중해 있었다면 2007년은 수도권외 지역단체와 협력업무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2007년 총 14회의 간담회 중 지역단체와의 간담회가 8회 열렸는데 대구, 홍성, 제주, 거창, 강릉, 대전, 원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고루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인권단체들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와의 접근성 문제로 의사소통의 창구가 미비했지만, 지역단체와의 간담회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위원회에 대한 업무설명 및 정보제공으로 위원회가 지역에 소재한 인권단체를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3) 행사 참석 등 교류 사업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의 행사 참석·축사, 위원장 면담, 국내외 인권단체의 위원회 방문 안내 등 100여 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교류활동을 벌였다.

(4) 인권 취약 현장 방문

위원장 등 정책 결정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소외 계층을 방문해 이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인권 취약 현장 방문이다. 2007년에는 총 9회의 현장 방문에 나섰다. 위원장 등 인권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직원 등도 현장 방문에 함께 참여하고 방문 평가서를 위원회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 과제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표 2-6-1] 2007년 인권 현장 방문 현황

방 문 일 시	방문 단체명	소 재 지	시 설 성 격(주제)
1. 14	다리공동체	경기 안산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3. 30	마음사랑정신병원	전북 완산	정신장애인 인권
4. 24	장성광업소, 진폐협회 등	강원 태백	진폐환자 인권
6. 21	청주여자교도소	충북 청주	교정시설
8. 6	농촌지역 장애인 주택	충북 보은 등	농촌지역 장애인 주택
8. 16	성가정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국내 유아입양시설
9. 17	마석샬롬의 집	경기도 남양주	국제결혼 이주민 인권
11. 9	양지노인마을	강원 신북	노인 시설
12. 23	두레방	경기 의정부	성매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5) 종교계와의 협력강화

국내 종교인구가 2,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종교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하고, 또한 종교 자체가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인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원회가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협력계획과 종교와 인권을 접목시키려는 구체적 시도는 미흡했다. 이 같은 반성과 문제의식에 따라 위원회는 종교계 내 인권기구를 통하여 종교계 최고지도자에 대한 위원장 예방, 불교 승려를 대상으로 한 '불교인권학교'개최 등 종교계와 함께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과 함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주간에 맞춰 '인권기념공동행사'를 개최했다.

(가) 위원장 종교계 예방

방문일시	방문 단체명	소재지	벙 문 주 제
9. 3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종로	위원회와 종교계의 협력방안 등
9.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종로5가	상 동
10. 26	천주교 명동성당 (정진석 추기경)	명동	상동

(나) 개신교 인권주간 공동예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전국공동예배 행사를 개최하여 개신교계 내에서 인권의 대중화를 도모했다.

또한 위 행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최초의 공동사업으로 2007 인권주간 전국예배를 개최했다. 1만 5,000부의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는데,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행사포스터 및 공동예배 안내문(설교문)을 소속 교단을 통해 개별 교회에 배포하여 일반종교인들의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다) 불교인권학교 개최

2007년 10월 4일(목) ~ 10월 6일(토) 2박 3일 일정으로 법주사에서 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관련스님 및 관계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인권학교'를 개최했다.

위 행사는 위원장의 총무원장 방문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불교계와 최초의 공동사업으로 기존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인권연수프로그램을 불교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위원회 인권협력의 대상을 불교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불교계의 인권 관련 활동에 구체적인 인권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도모했다고 평가되며, 전체 참석자 중 스님 50명, 일반대중 28명등 총 78명이 참석하여 불교계의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시발점으로 불교계와 지속적인 인권 관련 교육·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향후 장기적·일상적인 협력 관계를 뿌리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6) 공동 협력사업 추진

2003년부터 시행해온 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공동 협력사업은 2005년까지 인권단체 협력사업과 시민실천 프로그램 용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것을 2006년에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시행했다.

이 사업은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한 위원회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권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에 한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국제조약 관련 및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역 연대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특화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인권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07년에는 중간평가회를 처음으로 실시해 중간 점검을 내실화했다. 공모를 통해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29개 단체에 총 2억 6천 13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사업 및 단체는 [표 2-6-2]와 같다.

「중증장애여성 활동가 양성교육」(장애여성공감), 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학부모, 학생 인권 교육을 위한 학부모 상담원 교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빈곤여성 사회권 확보를 위한 지도력 강화 교육」(한국여성노동자회), 「신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등 유엔인권기구의 활용에 관한 안내 매뉴얼 제작 및 인권활동가 교육훈련프로그램」(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 전남·북 장애인인권상담가 양성교육프로그램」(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인권 관련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예비노동자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학교교육」(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1회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실」(광주비정규직센터) 등은 사회에 진출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권리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적으로 소외·고립되거나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는 교육사업으로「민우어린이 인권캠프 '꿈

꾸는 달팽이'」(춘천여성민우회), 「인권교육강사단 재교육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이 있었다.

「남북청소년 길 위에서 아름다운 다름을 노래하다」(셋넷학교),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과 문화적응 프로그램」(다리공동체), 「북한인권 조사 및 여론화 활동」(좋은벗들)과 같은 새터민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프로그램과 북한 인권조사 등의 사업은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고 북한인권을 여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이동권 문제, 청소년 자살, 난민문제, 성매매 문제 등의 인권 현안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 이슈를 제기했다.

[표 2-6-2] 2007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
1	세계속의 한국,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보급 사업	장애인문화공간	10,235
2	중증장애여성 활동가 양성교육	장애여성공감	8,575
3	제3회 전국장애인권활동가 대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6,760
4	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10,149
5	남북청소년 길 위에서 아름다운 다름을 노래하다	셋넷학교	9,170
6	청소년 인권함양을 위한 자살예방 대안 교과서 제작/배포 및 현장교육	생명인권운동본부	10,487
7	학부모, 학생 인권 교육을 위한 학부모 상담원교육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0,285
8	민우어린이 인권캠프(꿈꾸는 달팽이)	춘천여성민우회	4,800
9	SAY NO! 인권의 시작 – 이주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7,830
10	난민인권 전문자문활동 지원사업	피난처	10,200
11	빈곤여성 사회권 확보를 위한 지도력 강화 교육	한국여성노동자회	8,559
12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활동이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 국내 훈련장 중심	녹색연합	7,071
13	신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등 유엔인권기구의 활용에 관한 안내매뉴얼 제작 및 인권활동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유엔인권정책센터	10,380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
14	예비노동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영상물제작 및 학교교육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10,500
15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인권축제 '여성인권 쑥쑥!'	대전여민회	10,460
16	성적 소수자 인권지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가이드북 발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8,830
17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다리공동체	10,150
18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의식조사 및 연대 개념에 관한 연구	인권연구소 창	9,605
19	북한인권 조사 및 여론화 활동	좋은벗들	10,842
20	정보사회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대중적 교재개발	진보네트워크센터	8,500
21	HIV/AIDS 감염인 인식개선/인권돋움 프로그램 "우리는 세상의 중심"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10,274
22	인권교육강사단 재교육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울산인권운동연대	6,996
23	평등을 위한 삼색마당 – 비정규직 여성노동실태조사와 교육, 청소년 노동교실 및 노동문화한마당	부산여성회	7,700
24	'인권도시'를 향한 제3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개최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진주협의회	9,450
25	범죄피해자! 법에 말을 걸다! – 폭력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 양성을 통한 사법절차 모니터링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10,145
26	제1회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광주비정규직센터	6,255
27	광주전남·북 장애인인권상담가 양성교육프로그램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048
28	전국현장활동가 비전 워크숍 : 우리, 날개를 달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7,580
29	취약계층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9,490
	합 계		**261,326**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1) 국제조정회의(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위원회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조정기구인 국제조정회의(이하 ICC)에서 아태지역의 대표로서 활동해왔는데, 2007년에는 ICC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 출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ICC 연례회의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ICC 연례회의(2007. 3. 17.~25.)에 ICC 아태지역 대표 중 한 기구로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2년 임기의 ICC 의장기구로, 위원회는 부의장기구로 선임됐다. ICC 의장 및 부의장직은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라, 미주지역이 2007~2010 의장, 아태지역이 2007 ~ 2009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위원회는 아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과 위원회 위상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ICC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네바 ICC 대표자(ICC representative)의 상주 필요성이 제기됐다. ICC 회원기구들은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9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케냐가 주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1991년 파리에서 제1차 회의 개최 후 2년마다 지역별로 순환하여 개최되며, 2004년 제7차 세계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나) ICC 집행이사회

ICC 집행이사회는 ICC 회원국 간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실무적 논의를 위하여 의장국, 부의장국, 4개 대륙 지역대표 기구, ICC 사무국(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NI 팀)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1~2차례 개최되고 있다. 2007년에는 6월과 12월 2차례 개최됐다.

ICC 집행이사회 1차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유엔이사회 발언권 등 지위에 관한 현안에 매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향상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동시에 이에 따르는 ICC 차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2차 집행이사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이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논의, ICC 부의장 기구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ICC의 역할 구축과 4개 대륙 국가인

권기구 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개별국가 및 지역 국가인권기구 조정기구에서의 현안업무 논의와 함께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ICC승인소위 개최 관련 절차규정,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당면한 긴급 인권 상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ICC 제네바 임시대표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발표했다.

ICC 구조(governance) 확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승인등급 A 국가인권기구 전체회의 명칭의 필요성과 함께 거버넌스 확대에 관한 초안을 2008년 4월 연례회의에서 채택하고, 9월 세계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러한 작업을 위한 실무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ICC 제네바 대표의 운영비를 한국, 멕시코, 프랑스 NI 등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의장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전체 회원기구에 즉각 배포하여, 회원기구 간 원활한 정보소통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 ICC 승인소위원회

- **3월 ICC 승인소위(3. 19. ~ 21)**

동 회의의 참석자는 캐나다, 한국, 덴마크, 나이지리아의 국가인권기구 대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이고, ICC 회원 재승인과 신규승인, 파리원칙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이 안건이었다.

승인소위 심사 결과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말라위, 페루의 국가인권기구가 재승인되었으나 필리핀과 포루투갈은 서류 미비로 심사 유예됐다. 또한 네팔, 피지,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이 특별심사 대상으로 심의됐다. 승인소위의 평가와 관련된 승인심사 논의는 주로 파리원칙의 강조 즉 위원과 직원구성의 다원성, 재정적 안정성,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ICC 승인소위가, 당해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그 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여타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정부와 별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승인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 **10월 ICC 승인소위원회(10. 22. ~ 26)**

참석자는 캐나다, 한국, 독일, 르완다 인권위원회 대표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이고, 덴마크와 나이지리아 대신에 독일과 르완다가 각각 대륙별 승인소위 대표로 새롭게 참석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재승인 및 신규승인 문제를 결정했다.

승인소위 심사 결과로는 르완다: A, 콜롬비아: A, 덴마크: A, 프랑스: A 등 14개 위원회가 재승인되었으며 국내 사정으로 인한 스웨덴의 심의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신규승인 국가인권기구 중 아프가니스탄, 그루지아는 A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슬로바키아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B 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네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가 특별심사 대상이 됐다. 나이지리아는 2006년 사무총장 소환 이후 소환 이유에 대한 수사중단 및 이에 대한 승인소위에 정보 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스리랑카는 인권위원의 지명이 위원회법과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각각 B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번 승인소위는 21개 국가인권기구를 심의하면서 파리원칙 적용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체계와의 상호작용, 국가인권기구의 유급 상임구성원, 국가인권기구 고위직의 파견직 충원 금지, 운영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 등에 관한 일반견해를 채택했다.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위원회는 2006년 말 피지의 군부 쿠데타 이후, 피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문제됨에 따라 피지인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직을 2007년부터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피지 상황에 대한 APF 차원의 대응, APF사무국 직원 채용, 제12차 APF 연례회의의 의장직 수행 등을 하였으며, 9월 연례회의 이후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가) 중국국가인권기구 설립준비방문단 학습프로그램

위원회는 APF, 스웨덴 라울월렌버그연구소와 함께 중국 정법대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국국가인권기구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의 학습프로그램을 5월 개최했다. 준비단은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정 및 실제 운용과정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이미경 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독립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고히 했다. 준비단은 한국 방문 결과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 방문, 세미나 결과 등을 통하여 중국 내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안 초안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 제12차 APF 연례회의

제12차 APF 연례회의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됐다. 연례회의에서 피지, 네팔, 아프가니스탄 인권기구의 상황이 논의되었고, 동티모르인권기구가 정회원이 되었으며 몰디브인권위원회가 준회원이 됐다. 아울러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논의되었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한편 법률가자문회의(ACJ)는 환경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및 각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2008년에는 초국가기업과 인권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 국가별 국내법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3)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사업

(가) 직원 교류

위원회 직원들이 위원회 중점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선진사례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국가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 기관에서 실무 연수 및 연구를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총 8명의 직원이 주로 유럽의 선진 인권기구를 방문, 현장 경험을 학습하고, 선진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직원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았다.

[표 2-6-3] 국가인권기구 간 직원 교류 현황

기 간	교 류 연 수 내 용
6.25~7.5	○ 제목 : EU고용평등지침·이행실태 ○ 방문 : 벨기에(EU본부), 독일(독일의회), 영국(의회, 장애위원회) ○ 목표 : EU고용평등지침 이해 및 국내 차별판단지침 작성에 활용
6.25~7.4	○ 주제 : 외국인보호시설 실태파악 ○ 방문 : 독일(구금소), 네델란드(공항보호소), 영국(IOC 등) ○ 목표 : 유럽의 외국인 단속·보호 절차 및 법제연구를 통한 국내제도 개선
9.3~9.11	○ 제목 : 고문방지위원회 활동성과 연구 ○ 방문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목표 : 구금시설 고문방지를 위한 조사·권고의 전문지식 습득
9.22~10.3	○ 주제 : 친인권적 교과서 도입 ○ 방문 : 프랑스(교육부, 유네스코, 인권위원회) ○ 목표 : 프랑스 인권교육 내용을 국내 교과서 집필진에게 전달하여 인권 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도모

(나)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위원회는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의 인권기구 및 법무부 직원 등 총 6명을 초청하여 일주일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정책권고, 침해 및 차별조사, 인권교육과 인권상담 등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수립 과정, 군·경찰관련 결정례와 주요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례,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법 전수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그간 축적한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국가인권기구에 전수하였으며 이는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4) 아시아 국가인권기구(NI) 공동연구 사업

2007년 위원회는 아시아지역 NI 공동연구 사업으로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 및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 사업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아시아 지역 두개의 대표적인 송출국인 몽골 및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 및 국민으로 편입될 사람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몽골과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브로커들에게 과다한 송출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많은 빚을 져 경제적 예속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주의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자유로운 선택이 허락되지 않는 결혼중개 구조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를 유도당하며, 이주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부부 간의 사적인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간주되고 결혼 이주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개선 및 정부의 당해 국가와의 MOU 체결 시 인권적 시각이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권고 자료 및 이주인권 관련 부서의 업무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1)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02건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출범 이후 지난 6년간의 위원회 활동이 축적되면서 그간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 평가 작업이 미디어 · 학계 ·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언론은 이후 인권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적극적인 브리핑 제도 도입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권고의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홍보 창구를 확대했는데 2007년에는 총 20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또한 매월 기자 정례간담회를 열어 인권위 주요 사안 및 특히 인권정책 사안

의 경우 심도 있는 설명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달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특히 인권을 지속적이고 쉽게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소구력이 높은 방송 중 라디오 매체를 적극 활용 다수의 시사, 장애, 인권 전문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기획하여 위원회 업무와 '인권'의 개념을 알리는 데 주력한 한 해였다.

또한 2007년은 위원회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가 안정된 시스템으로 구축돼 독자에게 쉽고 빠르게 위원회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언론을 상대로 위원회 홍보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언론 대응 관련 개선점 및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해 홍보 업무에 반영했다. 또한 인권위 기능과 역할, 업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안별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 홍보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권위 업무에 대한 언론 주목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매우 적은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제작해 여러 매체(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 잡지 등)를 통해 광고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주제로 한 3편의 시리즈 광고물을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했다. 장애차별, 나이차별, 성차별을 주제로 한 이 광고를 통해 위원회가 이러한 차별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2) 〈인권〉 잡지 발간

위원회는 2003년 8월 위원회 활동 홍보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정기간행물 <인권>을 창간해, 그동안 위원회 소식과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을 취재, 기고, 인터뷰, 만화, 사진, 르포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월간 <인권>은 2007년 예산이 삭감돼 3월부터 격월간 체제로 바뀌었다. <인권>은 2007년 12월 현재 통권 47호를 발행(총 발행 부수 약 142만 부)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요 발송처는 국가기관(2,446), 공공기관(1,143), 학교 및 동사무소 도서관(9,371), 은행(1,496), 언론기관

(1,158), 인권시민단체(776), 일반 구독신청자(5,431) 등이다. 또한 매호 2,000부 정도는 위원회 행사 및 인권 관련 행사 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웹진 <인권>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한 인권 홍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자도서 및 녹음CD도서를 각각 600권씩 제작해 점자도서관, 맹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했다.

[표 2-6-4] 2007년 〈인권〉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기타 주요 기사
2007.1월호 (통권 41호)	지역인권운동 현장을 가다	울림과 떨림의 전도사	현장 – 빼꾸기 둥지 안의 그들은
2007.2월호 (통권 42호)	없는 이들의 겨울나기	아버지의 물음	내안의 사람 – 네 명의 몰도바 이주노동자
2007.3/4월호 (통권 43호)	오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수요일, 낮 12시의 외침	세계의 창 – 환경도 인권이다
2007.5/6월호 (통권 44호)	우리 안의 외딴 섬 '탈북청소년'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사람	이슈 – 막장 밖 더 무서운 막장 진폐증
2007.7/8월호 (통권 45호)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슬픔을 녹이는 마술사	이슈 –구타=승리? 웃기지 마라
2007.9/10월호 (통권 46호)	대한민국 2등 국민 悲정규직	흙 위의 자유인, 윤구병	길에서 만난 세상 –무서운 쓰레기, 두려운 새벽거리
2007.11/12월호 (통권 47호)	이 땅의 어머니를 만나다	인권은 고통에 대한 연민이겠죠	동향 – "한국 사회권 상황, 우려스럽다"

(3) 위원회 정책고객시스템(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ant : PCRM) 구축

위원회는 2007년 국민들에게 위원회 활동 및 인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토대로 한 정책고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업무에 다양

한 형태로 의견과 관심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인권고객을 330여 개 DB로 분류해 20,000여 명의 고객 리스트를 만들었고 전체 고객을 상대로 월 2회의 기관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제별 자료는 해당 팀에서 수시로 보내고 있다.

(4)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방송과인권 연구회'와 공동으로 9월 13일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권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방송매체가 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뉴스와 인권, 사회사건 보도와 인권, 방송 드라마와 인권 등의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방송과 인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송이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3절 평 가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은 해가 바뀔수록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응과 위원회 활동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007년 말 이후 진행된 소속 논쟁에서 다시금 독립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단체 및 종교계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점은 향후 범국민적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 광주, 대구에 설치된 3개 지역사무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사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왕성해지면서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ICC 부의장국이자 APF(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부의장국인 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 정부의 국제적 활동까지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아직까지도 위원회 활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이 요청된다. 위원회는 정책고객시스템 활용, 뉴스레터 및 <인권> 잡지 배포, 인권을 주제로 한 기획홍보 강화, 대국민 인권 캠페인 기획 등을 통해 대국민 인권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7 장
지역사무소 활동

제1절 개 요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권리 구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는 2005년 10월 부산지역사무소와 광주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수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6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 개정으로 2007년 7월 2일 대구지역사무소를 개소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대구·경북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조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의 점검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금·보호시설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각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권 상담전화 1331'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사무소 관할 지역 내에서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는 경우 각 지역사무소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은 특히 부산지역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1년 2월 부산지역 '열린 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의 시작으로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그로부터 6년여가 흐른 2007년 법 제정 및 2008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무소는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하나 2007년 사업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무소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민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는 '인권조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지역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그러한 문화 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과정을 듣고 국내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개최한 '일본의 인권조례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도 '인권조례'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 △꾸준히 증가하는 상담·민원·안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향상 △진정사건 대비 인용률 증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안정적 홍보매체 발굴 △인권공동체 외연 확대를 위한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친숙한, 균형감과 책임감을 지닌 인권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1)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

2007년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 진정·상담·면전·민원은 총 2,544건으로

2006년 2,117건에 비해 20.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매월 격주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권고사례 소개, 매주 금요일 지역 내 주요일간지 1331홍보, 지하철 광고 등을 들 수 있으며, 다수인 보호시설의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접수 대비 인용률이 2006년 3.1%에서 10.1%로 크게 증가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있을 보여준다.

[표 2-7-1]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 상담 · 안내 · 민원 접수 현황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5년	54	126	170	350
2006년	266	1,648	1,552	3,466
2007년	322	1,959	1,690	3,971
총 누계	642	3,733	3,412	7,787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권리구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권 순회상담 실시

울산 · 마산 · 창원지역에 비해 비교적 원거리로 인식되는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해 2007년 6월 16일 진주에서 상반기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말을 이용, 인권포스터 전시 등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10월 23일 실시한 하반기 순회상담은 인권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주관, 공업도시인 울산의 동천체육관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차례 순회상담의 경우 지역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진주지역 순회상담 2007. 6. 16

(3)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면전진정접수와 관련하여 특이할 사항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다수인보호시설(부산·울산·경남지역 입원환자 정원 100인 이상 정신보건 시설) 진정함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의 영향으로 2006년 17건에 그쳤던 다수인보호시설 입원환자의 면전진정신청이 2007년 139건으로 811%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 후 상담까지의 면전진정처리 소요일수가 오히려 9.1일에서 7.8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 2-7-2]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신 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미처리	평균 소요일수
2005년	88	59(100.0)	15(25.4)	16(27.1)	28(47.5)	–	13.0일
2006년	762	775(100.0)	124(16.0)	137(17.7)	514(66.3)	–	9.1일
2007년	931	935(100.0)	154(16.5)	176(18.8)	605(64.7)	12	7.8일
총 누계	1,781	1,769(100.0)	293(16.6)	329(18.6)	1,147(64.8)	–	–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표 2-7-3] 다수인보호시설 상담 및 면전진정 건수 변화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면전진정 신청 건수	17건	139건	811% 증가
전화 및 대면상담 건수	234건	450건	192% 증가

※ 총 누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지역사무소는 2006년 9월부터 관할지역 내 구금시설의 면전진정을 통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관련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09건으로, 2006년 16건, 2007년 93건이 조사 종결됐다. 종결 사건 중에는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수용자 면도 강요 등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7-4] 부산지역사무소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조사중	종결 소계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소계	합의 권고	권고	고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2006년	28	–	16	–	–	–	–	–	16	11	–	5	–
2007년	124	43	93	2	–	2	–	–	91	58	5	28	–
총누계	**152**	**43**	**109**	2	–	2	–	–	**107**	69	5	33	–

※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 취약 지역 방문 및 진정함 실태조사

2006년에 이어 2007년 2월까지 경남지역 100병상 이상 정신보건시설 32개소에 대한 진정함 설치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부산 동암학교, 아미정신보건센터, 아시아 공동체 학교, 부산가톨릭 공부방협의회 소속 공부방과 밀양경찰서 대용감방, 김해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양산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등을 방문하여 위원회의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안내하고, 지역사무소와 효율적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행했다.

(3) 조사 지원 및 공조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이주인권팀 주관 '출입국보호실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부산·울산·경남 관할 지역 내 보호실에 대한 방문조사를 기획·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방문조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 밖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침해·차별사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본부와 공조하여 10여 차례 이상 조사활동을 펼쳤다.

3.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

2006년에 이어 검·경찰, 철도공안, 교도관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예방노력에 주력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저소득층 공부방 아동 대상 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분류되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 등 방문교육·찾아가는 인권교육·요청교육·기획교육 등 인권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2005년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한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강사단'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2007. 2. 23

[표 2-7-5] 부산지역사무소 인권교육 방법 · 대상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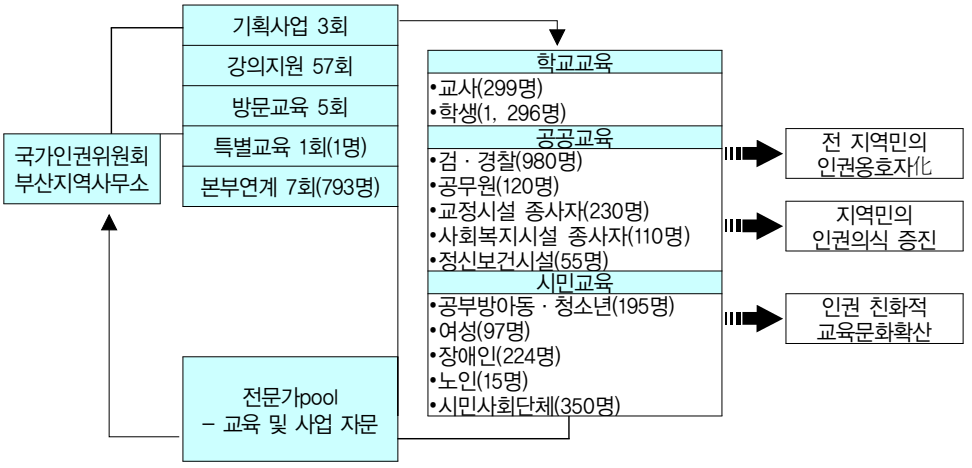

[표 2-7-6] 부산지역사무소 강의 지원 현황

대상	교사 · 학생	기관	시민 · 단체	여성	정신보건	복지 · 아동	방문교육	특별교육	총계
횟수 (명)	12회 (1,501)	13회 (1,100)	4회 (350)	4회 (97)	2회 (55)	17회 (477)	5회 (75)	1회 (1)	58회 (3,656)

(2) 인권의식 및 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화 상영, 인권 포스터 전시 등을 기획하였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지 및 지하철 광고판, 라디오 방송, 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식지 원고 게재 등을 진행했다. 특히 2006년에 이어 부산광역시청 전광판, 지역

일간신문(부산일보)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권상담전화 '1331'을 홍보하였으며, 기존의 메일링 서비스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고객서비스(PCRM)와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역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는 지역사무소 웹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에 이은 제2회 인권영상공모전은 1회 공모전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이는 신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70여 회)와 함께 지역설명회 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교육'실시 등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권침해·차별을 영상에 담고 공유함으로써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당선작 20편은 DVD로 제작, 일반시민 및 학교, 기관에 배포하여 인권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 2-7-7] 부산지역사무소 홍보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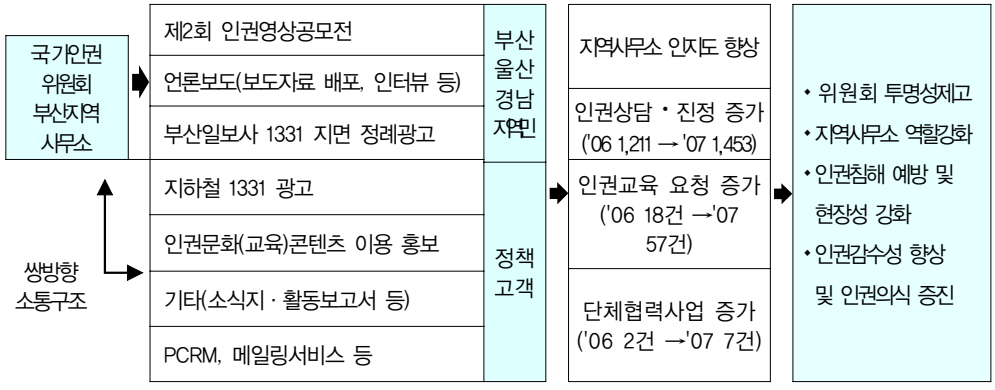

[표 2-7-8] 부산지역사무소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품 및 수상자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대상	독립만세	윤한민(부산)
	두 개의 시선	강신우(동명대학교)
우수상	청춘, 할머니와 만나다	박경배(부산)
	휠체어의 외출	한울타리(안순희 외 6명, 울산)
	알바권리 찾기	울산청년회(울산)
인권상	홈에버투쟁, 그들의 울부짖음	이원석(울산)
	숨은 천사를 찾아서	경남시청자미디어제작단(경남)
	귀로	지세환(부산)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김형민(경남)
	조선소 견학	김현수(경남)
시민미디어상	원폭 2세, 그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	최석훈(부산)
	나도 교육을 받고 싶다	지용찬(경남)
	삼분의 절망	박연정(경북)
	가까운 곳의 비정규직을 찾아서	김은철(경남)
	한걸음만 더	박경태(부산)
	그녀의 구두	여수진(부산)
	팬옵티콘	조만규(경남)
	대학생 曰	류용수(부산)
	메타그리에이션-작가ver.2	신용철(부산)
	교실이데아	김수용(울산)

4. 교류 협력

지역사무소의 교류 협력사업은 시의성, 지역성, 본부와 지역의 매개역할 등에 중심을 두었으며, 인권공동체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일상적인 교류 사업 및 후원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표 2-7-9] 부산지역사무소 인권교육 방법 · 대상 및 기대효과

시의성		·장차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인권 사업 추진(장차법 설명회 및 토론회, 장애인 인권실태 토론회)	
지역성		·인권관점으로 지자체 조례 진단(일본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토론회)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확대
매개역할		·위원회 이해 및 지역요구 전달(위원장 초청 간담회, 침해구제1소위 간담회, 지역인권 100분 토론회	상담 및 진정건수, 교육수요 대폭 증가
피진정기관 교류		·피진정대상기관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제62회 식목일 인권나무심기(구치소), 찾아가는 교육문화행사(교도소)	지역인권전문가그룹 형성(50여명)
일상적 단체 교류	배움터 개방	·활동보조인 설명회, 동화읽기모임 등 36회 470명	지역특화사업과제 발굴 및 실시
	일상적 교류활동	·50여 단체와 연계한 인권문화한마당 및 후원(6회), 인권관련행사 참석(32회), 토론회(7회) 등	

(1) 인권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위한 분야별 기관 · 단체 협력사업

2007년 4월,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부산구치소와 함께 직원 및 수용자들의 인권다짐을 되짚어보기 위해 '인권나무심기'행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는 국립경상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상 위원장 특강에 즈음하여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의 인권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개소 2주년 기념 100분 토론'에서는 언론 · 장애 · 이주노동자 · 사회복지 · 학계 · 교정 · 수사 · 법조 등 10개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의 인권실태와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구치소 내 '인권나무'심기 2007. 4. 5

2006년 부산지역 인권교육 활동가 워크숍에 이은 2007년 11월 10일 경남지역 인권교

육 활동가 워크숍은 인권교육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역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

(2) 인권 존중 및 보호 문화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조례 외빈토론회 개최

2007년에는 지역의 지역사무소 역할에 중점을 두어 조례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 부락민 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과제를 점검하고자 일본 인권조례 전문가인 도모나가 겐조 선생을 초청하여 2007년 11월 13일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외빈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 설문결과 시·군·구청 의회 등 관련기관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 91.7%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인권조례 외빈초청 토론회 2007. 11. 13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지역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2007. 4. 27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 차별시정기구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4)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문화행사 및 토론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을 맞아 2006년에 이어 지역 내 50여 단체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부산인권문화제」기간 중 시설생활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인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한국해양대학교와 연계하여 '참관수업'을 진행, 수강학생들이 직접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4개월여 앞둔 12월 '경남지역 장애인 교육권·이동권·자립생활 실태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장애인 차별실태를 점검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 놀자' 2007. 11. 24

5. 평 가

2007년 진정·상담건수는 2006년 대비 20%가량 증가하였고, 인용률도 2006년과 비교하여 높아졌다. 그러나 차별 관련 진정·상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차별 관련 수요개발 및 과제발굴이 요구된다. 면전진정의 경우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소요일수는 2일 이상 단축함으로써 시설수용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고, 정신보건시설의 진정함 설치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측의 진정권 보장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의무를 환기시키는 등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를 다졌다.

전년도에 비해 인권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

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의 결과이며, 향후 이러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인권교육 강사단 구축 및 인권교육연구회 등을 통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광판, 신문, 라디오, 단체 소식지, 전시회, 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해왔으나, 2008년에는 더욱 안정된 매체개발 및 쌍방향 소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토론회, 워크숍, 기관·NG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차법 제정 시행에 따른 시의성 있는 토론회(장차법 제정 토론회,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 토론회 등) 개최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무소의 공조가 요구되는 조례 분야를 주제로 한 '인권조례제정 외빈초청토론회'등은 향후 지역사무소의 중장기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지역의 인권역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2005년 10월 지역민들의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2006년은 개소 후 1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교류 사업과 홍보업무를 추진했다. 2007년은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내 인권의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먼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이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에서는 지역내 인권 관련 전문가 그룹(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30여 명을 '인권교육강사단'으로 구성하여 2차례의 워크숍을 갖고, 지역내 인권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꾀했다. 그 결과 총 39회에 걸쳐 검·경, 교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281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지역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에서는 2007년 5월 '인권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9월부터는 '2007 호남 인권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인권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6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일간지에 '사례로 본 인권'이라는 코너에 위원회 권고 사례들을 기고하여, 지역민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셋째, 이미 발생된 인권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에서는 상담과 진정접수, 면전진정, 교정시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한 조사 등을 하고 있다. 먼저 상담은 지역내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담의 기법 실습 및 의사 소통을 통해 위원회 상담의 특징 및 관련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전진정은 2005년 10.1일, 2006년 5.9일, 2007년 5.5일로 평균처리 소요기간(신청→출장)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위원회에 진정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7년 202건을

접수하여 189건을 조사 종결 처리했으며,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45일로 신속한 접수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넷째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정책과제 설명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1)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

[표 2-7-10] 을 통해 살펴보면, 2005년 지역사무소 개소 이후 진정,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안내 및 민원은 2007년 다소 감소했다. 이는 2007년 업무계획 수립 시 단순한 안내(잘못 걸린 전화)에 대해서는 안내사항으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기 때문이고, 진정·상담은 지역사무소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할 지역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짐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10]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내/민원	합 계
2005년	74	104	107	285
2006년	280	1,086	1,468	2,834
2007년	373	1,282	1,305	2,960
총 누계	727	2,472	2,880	6,079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현장 방문 상담 실시

인권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표 2-7-11]와 같이 현장 방문 상담을 4회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희망원, 송광녹지원에서는 종사자 및 생활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교육 2007. 3. 28

순회상담 2007. 3. 28

[표 2-7-11] 2007년 순회상담 대상 시설 및 지역

회차	일 정	시설명 및 지역	대 상
1	2007. 3. 28~29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다수인보호시설생활인
2	2007. 7. 12~13	전라남도 여수금강원, 여수부영아파트	시설생활인 및 지역민
3	2007. 9. 6	전라북도 송광녹지원	다수인보호시설생활인
4	2007. 10. 19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농아인협회	지역민, 장애인

(3)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2006년 2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07년은 상담에 관한 이론 및 기법실습을 통해 지역내 상담분야 종사자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지역 내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아동, 노인 분야에 대한 상담분야 종사자들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내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모색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심화된 상담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표 2-7-12] 2007년 광주지역사무소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현황

회차	일 정	전문상담 교육 내용	강 사
11	2007. 2. 27	상담의 기술 – 효과적인 상담자 되기	윤관현(광주심리상담소 소장)
12	2007. 3. 27	상담의 기술 – 집중하기와 따라하기	정은의(호남대학교 교수)
13	2007. 4. 24	상담의 기술 – 질문하기(개방형 질문)	정의석(미래학습상담센터 소장)
14	2007. 5. 29	상담자의 능력개발 – 프리젠테이션 기법	이득연(전남대학교종합인력개발센터)
15	2007. 6. 26	상담의 기술 – 반영하기(감정, 내용, 심층)	정의석(미래학습상담센터 소장)
16	2007. 7. 24	상담의 기술 – 즉시성	이미라(미래학습상담센터 실장)
17	2007. 9. 18	상담의 기술 – 해석	정의석(미래학습상담센터 소장)
18	2007. 10. 23	상담의 기술 – 직면과 도전	신기숙(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4)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관할구역내의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한 경우, 면전진정 평균 처리 소요기간(신청→출장)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1일이었으나 2006년 5.9일, 2007년 5.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표 2-7-13]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신 청	미처리	종 결 처 리				평균 소요일수
			소 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2005년	112	–	85(100.0%)	25(29.4%)	24(28.2%)	36(42.4%)	10.1일
2006년	621	–	635(100.0%)	115(18.2%)	133(20.9%)	387(60.9%)	5.9일
2007년	863	9	867(100.0%)	125(14.4%)	256(29.5%)	486(56.1%)	5.5일
총누계	1,596	9	1,587	265(16.7%)	413(26.0%)	909(57.3%)	–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6년 9월 1일부터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지역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006년에는 총 58건을 접수해 38건을 조사 종결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이 소요됐다. 2007년에는 202건을 접수하여 189건을 조사 종결 처리했으며,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45일이었다.

실지조사 진행(광주교도소 2007. 10.)

(2) 인권 취약 지역 방문 및 진정함 실태조사

2006년 진정함 실태조사(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07년에는 그 중 50개소에 대해 점검(조사관이 직접 현지에서 진정함 및 안내문 확인)을 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설별로 진정함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2회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자들의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06년 6개 시설 6건이던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이 2007년 19개 시설 6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 조사 지원 및 공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원회 실지조사를 지원했다. 또한 담양 ○○병원 실지조사(2월), 광주 ○○병원 조사지원(6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조사 지원(6월), 전주교도소 방문조사 지원(9월) 등을 실시하여, 위원회 해당 팀과 공조하여 지역내

인권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3.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2007년 3월 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인권교육강사단을 구성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4월, 8월 2차에 걸쳐 인권교육 방법 및 기법실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권교육강사단은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5회, 다수인 보호시설 및 단체교육 16회,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회, 해남지방검찰청, 전남지방경찰학교 등 수사기관 5회, 광주교도소 경비교도대 2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인원 2,281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했다.

특히, 구금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3월 광주교도소·군산교도소, 6월에는 순천·목포교도소, 7월 장흥교도소 등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2) 홍보활동

인권교육강사단 2차 워크숍(2007. 8. 24. ~ 25. 화순금호리조트)

2007년 광주 지역 일간지 '광주드림'의 '사례로 본 인권'이라는 고정란에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 3개 분야의 18개 사례를 20회에 걸쳐 연재하여 지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언론보도 244회, 방송출연 11회, 강연 및 녹화방송 3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5월에는 '인권문화콘텐츠'를 전시하기도 했다.

(3) 인권영상공모전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고 경험하는 인권에 대한 이해를 영상을 통해 직접 이야기하고, 지역내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역사무소,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영상공모전을 개최했다. 지역 내 인권현안인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를 담은 〈저기요 바꿔볼래요〉가 인권상으로 선정되어 광주인권영화제 폐막일인 12월 9일에 상영됐다.

차별금지법 논쟁과 인권 현주소

사례로 본 인권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우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별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4년동안 각종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법무부에 입법예고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기본법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기대가 컸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차별 금지 범위를 성별, 장애, 나이 등 20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로 법안을 넘기는 과정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조항이 삭제되어 13개 차별 금지 범위를 설정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은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한 사회악"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비위생적"이라며 삭제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며 인권·시민사회·여성·종교·성소수자 단체 등 101개 단체와 개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6년 7월 인권위의 법안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제이행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무부 안에서 삭제되고 차별범위마저 축소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인권의 문제 중 차별에 대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좀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 또는 관습에 따라 감수하고 살아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처럼 차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회구성원간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권이 성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재를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례들에 녹아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현재의 차별금지법 논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식의 발전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인권은 강화되어 갈 것이다.〈끝〉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광주드림 2007. 11. 26(월)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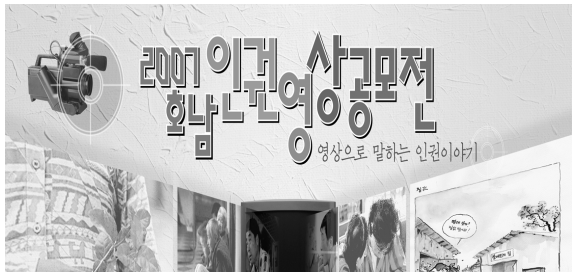

[표 2-7-14] 2007 호남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

순 위	작 품 명	연 출 자
인권상	저기요, 바꿔볼래요	이정훈 (팀명:비상)
최우수상	너희가 정신장애인을 아느냐	서준하
	같이 가게요	박래창
우수상	여자로의 여행, 그리고 발견	전주 영시미
	천막 속에서 키운 희망	김미경 (민언련)
	숲속 공주의 외출	김미경
	어느 김씨의 하루	윤수안 (상상공작실)
	청춘, 청춘답게	이경진
시민미디어상	Secret 외 9개 작품	김종민 외 9인

4. 교류 협력

(1) 분야별 간담회

아동인권 관련단체(1월),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1월) 여성인권단체(2월), 시민사회단체대표자 간담회(10월) 등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관할 구역내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업무협의 및 교류를 20여 회 진행했다.

(2) 활동가 토론회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활동가들과 지역내 인권 현안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활동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6년에는 활동가 토론회를 성폭력, 장애차별, 학교폭력, 비정 규직과 관련하여 4회 개최하였으며, 2007

제5차 활동가토론회 2007. 3. 28

년에는 이를 이어받아 아동인권, 청소용역, 전북지역 이주여성 인권실태, 광주전남 이주여성 인권현황 등 활동가 토론회를 4차례 개최했다.

[표 2-7-15] 2007년 광주지역사무소 활동가 토론회 개최 현황

회차	일 시	주제 및 내용	장 소
5	2007. 3. 28	· 주제 : 아동인권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내용 :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적 기준과 과제분석	광주은행 본점 20층
6	2007. 6. 14	· 주제 :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 · 내용 : 청소용역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방안	광주 YWCA 4층 소회의실
7	2007. 7. 26	· 주제 : 전북지역 이주여성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내용 : 전북이주여성 지원정책 분석과 인권개선방안	전주민촌아트센터
8	2007. 11. 22	· 주제 : 광주전남 이주여성 인권현황과 과제 · 내용 : 광주전남 이주여성 지원조례 분석 및 인권개선방안	광주은행 본점 4층

(3) 정책과제 설명회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정보의 전달 속도도 느리고 그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정책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에서는 위원회 해당 팀과 공조하여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5월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워크숍', 11월 '2007 인권교육실천사례대회', 12월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등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2007. 4. 29

(4)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인권 행사

2007년 2월 장기수 설날맞이 만찬모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행사, 12월에는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 및 인권음악회를 개최했다. 특히,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및 인권음악회를 KBS광주방송총국과 공동으로 주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관계자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 시간을 함께했다.

2007 인권음악회 2007. 12. 10

5. 평 가

2007년은 사무소의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홍보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교류협력사업 역시 2006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비롯하여 정책과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인권현안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인권상담전화를 개통하고, 면전진정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을 2005년 10.1일, 2006년에는 5.9일, 2007년 5.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06년 9월 1일부터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 중 교정시설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6년 58건 접수해 38건 조사 종결처리, 2007년 202건을 접수해 189건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조사 종결 평균처리 소요기간은 45일이었다. 면전진정 및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는 지리상의 위치 및 지역사무소 조사관의 끊임없는 역량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내 인권현안은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에,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지역사무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의 조사 영역을 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내 인권·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무소의 조사 영역을 현재의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해나가고, 이를 위해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는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지역내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무소의 조사 영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인권의제 발굴 및 이에 대한 실태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7년 사무소에서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 실태조사', '새터민,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에는 관할 구역내 '지방의원 인권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내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 실태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사무소 외에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자료들을 생산하고,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대구지역사무소는 2007년 7월 2일 개소 후 6개월 동안 내적으로는 업무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기관·단체,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대구지역사무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1)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

2007년 7월 2일 개소 이후 6개월간 다자협력체계 업무기조를 토대로 전 직원이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를 담당하여 상담 서비스 향상에 노력했다.

진정 접수 2007. 7. 2

[표 2-7-16] 대구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 상담 · 안내 ·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7년	72	321	232	625
총 누계	72	321	232	625

※ 총 누계는 2007년 7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의 합계임.

(2) 현장 방문 상담 실시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주간행사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29일 및 8월 30일 이틀간 인권상담센터와 방문상담 총 3회(대구성서공단, 대구 2·28공원, 안동 문화의 거리)를 실시하여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에 노력했다.

인권순회상담 2007. 8. 30

(3)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07년 10월 1일 면전진정 업무 개시 후 처리 평균 소요일수가 8.8일로, 업무이관 직전 3개월간 인권상담센터의 평균처리 소요일수(17.8일)보다 5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2-7-17] 대구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신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미처리	평균 소요일수
2007년	308	292(100.0)	59(20.2)	75(25.7)	157(53.8)	17	8.8일
총 누계	308	292(100.0)	59(20.2)	75(25.7)	157(53.8)	17	8.8일

※ 총 누계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인권 취약 지역 방문 및 진정함 실태조사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할지역 내 다수인보호시설 총 30개소를 방문하여 진정함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12월 13일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태조사 결과 안내 및 위원회 정신보건분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진정함 실태조사 2007. 10.~11.

(2) 조사 지원 및 공조

'반월당 횡단보도 폐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및 '정신보건시설내 인권침해'등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지원했고, 상시적으로 침해·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활동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이후 지자체 공무원, 군인·전의경, 지역 단체 및 공공기관 인권(교육) 담당자, 이주민·장애인·사회복지 관련 단체 활동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일반 시민 등 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위원회 소개, 분야별 인권 내용, NAP, 대상별 인권실천방안 등을 내용으로 활발한 인권교육이 진행됐다.

정신보건 워크숍 2007. 12.~2008. 2.

아울러 교육활동의 지역화 측면에서 대학생·일반인으로 구성된 교육홍보 서포터즈(15인)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강사단(20인)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권교육 실천가들을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특히 신규분야로서 새터민, AIDS 관련 분야에 대해 지역 단체 활동가와 협의하여 인권교육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 홍보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개소 자체 홍보, 개소인권주간행사 홍보, 홍보 대상 및 외연 확대를 위한 홍보매체(방법) 다양화, 2007년 하반기 대구지역사무소의 자체 행사 관련 홍보 등을 통해 총 117건의 언론보도 및 기사가 게재되었고, 기관·언론·단체·일반 시민으로 구분하여 총 2,235명의 홍보고객 리스트를 구축했다.

또한 홍보매체(방법) 다양화의 시도로서 기존 우편발송 방식도 적절히 이용함은 물론, 행사 관련 웹 포스터 및 웹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홍보협력팀 주관으로 구축한 PCRM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홍

보방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기자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 대구지역사무소 홍보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주요 업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업무 관련 홍보물(웹 포스터, 팸플릿 등)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홍보 방법 및 매체 다양화를 꾀했다.

4. 교류협력

(1) 분야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2007년 7월과 8월에는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KBS대구총국장,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총 19회에 달하는 대구·경북지역 기관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와 업무 내용을 알리고, 개소식 행사, 인권음악회, 다문화시대 국제세미나,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등의 참여와 업무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주인권단체 간담회 2007. 8. 28

또한 개소 인사와 더불어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KNCC대구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대구지역사무소에 대한 이해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민변대구지부와의 간담회, 개소기념 대구·경북지역 이주인권단체 간담회, 경찰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대구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제1회 인권음악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예총대구지회와의 간담회, 인권교육강사단 구성을 위한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2) 개소 및 인권주간행사 개최

대구지역사무소의 개소와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홍보하고, 지역 각 기관·인권시

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다채로운 기념·참여 행사를 배치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인권주간행사는 이주인권단체 간담회, 인권순회상담 (경북, 대구 2회), 인권자료전시회, 인권사진 및 포스터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 기자 간담회, 개소식 및 현판식, 내외빈 간담회(다과회), 지역인권실태 설명회 및 각종 참여프로그램 ('인권지킴이 약속해', '인권의 메아리', 개소기념 스티커 제작·나눔) 등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했다.

현판식 2007. 8. 31

(3)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인권음악회 개최

2007년 10월 31일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개최한 인권음악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비롯한 지역민 400여 명을 초청하여 음악을 통해 인권을 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인권음악회 2007. 10. 31

(4) 인권카페 및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정례적 인권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인권카페를 개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강사단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및 역량이 뛰어난 인권활동가들과 교육분야의 협력 틀을 구성함으로써 인권의 현장성 증대와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5. 평가

상담 및 면전진정 분야의 경우 교육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업무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가 이루어져 지역민,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이 향상됐다.

또한 원활하고 다양한 개소기념 인권주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기관·단체·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었고, 이후 기관단체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조적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강사단 및 인권카페 등을 구성하여 업무력 증진을 위한 대외적 기반이 조성됐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사업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지역민에게 위원회와 지역사무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지난해의 성과인 유관기관, 인권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여 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부

특별사업

제 1 장 주요 인권현안 TF 운영

제 2 장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제 3 장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제 4 장 외국인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제 5 장 APF(Asia Pacific Forum) 지원 조사관 훈련

제 6 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입법 지원 · 모니터링

제 1 장
주요 인권 현안 TF 운영

1. 국제협력 TF

국제협력 TF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위원회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고, 한국 인권상황과 위원회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홍보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인지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기획됐다. 2007년 국제협력 TF는 2007년 3월 ~ 11월까지 총 1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의 구성은 고문으로 박경서 위원회 전 상임위원, 전문위원으로 정인섭 서울대 교수(인권위원), 신혜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인권위원), 선미라 변호사, 이성훈 포럼아시아 총장, 최혁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후반기)로 이루어졌다.

이 TF에서는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과 우리 위원회가 당면한 국제협력 현안이 논의되었는데, 국제기구 및 NI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 사업의 5년 평가 및 국제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논의
2)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방안 제시
3) 영문조직명칭(안) 논의 및 확정
4) 세계인권선언 59주년 외빈초청행사 준비 자문
5) 2007년 국제세미나 '국제인권제도의 최근변화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개최 안건 논의
6) 2008년 국제심포지엄 추진 계획 및 의제(안) 논의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의 출범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체제에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앞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 TF 최종보고서는 유엔 및 전세계 70여 개 국가인권기구, 국제인권 관련 NGO들에 배포됐다.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

위원회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이하 피해자 TF)는 200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 9월 20일 위원회 제38차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회복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1) 의견표명의 배경

위원회는 발족 이래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특히 '피해자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특별히, 그리고 신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지난 2006년 1월 대통령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

범죄로부터의 1차 피해 방지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인권 사안이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일 경우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자화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피해자 TF는 당초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보안하는 개정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법무부가 2006년 말 그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쟁점 사항들을 대부분 망라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의 중요성을 감안, 범죄 피해 당사자 등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 활동 방향을 수정·확정했다.

(2) 활동 경과

위원회는 2006년 7월 피해자 TF(위원장 김호준 상임위원, 김인숙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총 8회의 전문가 간담

회와 한 차례의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TF의 검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TF 세부 활동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6. 7. 14. 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코자 범죄피해자보호 TF 구성, 운영방안 마련
2006. 8. 18. 예산검토 및 위원 추가 위촉, 실태조사 계획 검토
2006. 9. 21. 피해자보호법의 쟁점사항 검토
2006. 12.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발표
2007. 2. 9. 토론회 개최안 검토 및 발제자 토론자 확정
2007. 3. 27.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
2007. 4. 12. 의견표명 초안 검토
2007. 7. 19. 초안 검토
2007. 7. 30. TF안 확정
2007. 8. 16. 위원회 제33차 상임위원회 심의
2007. 9. 20. 위원회 제38차 상임위원회 의결

(3) 의견표명의 주요 내용

(가)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는 단기적 지원체계로부터 장기적 지원체계를 모두 포괄한다. 단기적 지원체계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이고, 장기적 지원체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에서 다시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된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 사건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체계를 증설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3) 단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인 치료지원과 상담, 나아가 교육 및 취업의 알선 등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고,

4)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5) 피해실태와 지원제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6) 장·단기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하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제도를 운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강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강화하고, 공판정 출석권 및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의 활성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활발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지나친 관리감독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라)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특별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해서는 조사 절차의 전문화 등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한 후유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큰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범주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도 효과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3. 차별판단지침 마련 TF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07년 한 해 동안 차별판단지침 TF를 운영해 차별 판단 지침을 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했다. 차별판단지침은 국제기준 및 국내 법규범에 부합하는 풍부한 내용의 차별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주고 향후 법규형식의 차별판단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2) 추진 과정

차별판단지침 TF는 위원회 상임위원 1명(TF위원장), 교수,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 9명(TF위원), 차별시정본부장 등 위원회 내부 인력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그

중 TF위원 및 위원회 내부 전문 인력이 지침을 분담해 집필했다. TF는 매월 1~2회씩 회의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2007년 TF회의는 2006년 말에 거의 작성 완료된 차별판단지침 초안을 상호 검토하고 보완할 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성 완료된 차별판단지침은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의 보고를 거친 후 책자로 발간됐다.

(3) 주요 추진 실적

2007년 차별판단지침 TF회의는 총 13회 개최되었고, 매 TF회의에서 1~2개의 차별사유에 대한 지침이 검토됐다. 11월 23일 TF회의를 끝으로 작성 완료된 지침은 편집을 거쳐 12월 6일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고, 12월 17일 전원위원회에 보고됐다. 전원위는 보고된 내용의 차별판단지침을 TF 명의로 발간할 것을 의결했다. 발간된 차별판단지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차별판단지침 TF 제24차 회의 2007. 11 .16.

차별판단지침은 크게 총론과 14장의 차별 사유별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직접차별·간접차별의 정의, 차별 예외, 차별 심사 척도,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 간접차별의 입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별 사유별 지침 부분은 대개 해당 차별 사유의 정의와 네 가지 영역, 즉 1) 고용 2)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의 공급 및 이용 3) 교육시설 및 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 4) 국가 법령 및 정책에서의 차별 판단 기준과 차별 예외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 사유 중 '출신 지역'과 '사회적 신분'은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았다.

(4) 향후 계획

발간된 차별판단지침은 국회, 정부부처, 대학교 등 연구기관, 인권단체 등에 배포될 것이

며, 위원회 조사관의 교육 자료 및 위원회 외부의 차별 예방 교육 자료와 향후 법규형식의 차별판단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4.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TF

(1) 추진 배경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 5년 동안 인권교육 관련 연구, 인권교육 자료 개발,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왔고, 인권교육 수요 창출 등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도덕(윤리)·인성교육과는 차별화된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역사성이 담겨 있는 보편적·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인권교육 대상별·영역별 확산 정도에 따른 차등화된 역량투입 계획 수립 등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청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과제의 하나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 발전에 관한 5개년 중기계획으로서 대상별, 영역별 인권교육의 목표선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실천적 계획으로 인권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2007년 인권교육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2) 주요 추진 실적

위원회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07년 5월 인권교육에 대한 총체적 시각과 마인드에 중점을 두어 분과별(학교, 공공, 시민사회 분과) 7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TF)을 구성했다. TF는 5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추진단 전체회의 및 6~7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위원회 지난 5년간의 평가, 학교·공공·시민사회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논의, 인권교육 비전 및 중점대상 논의, 영역별 세

부 인권교육 과제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완성 이후 전문가 등에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벗어나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참여 주체로서 인권교육전문가·인권단체 등을 참여토록 하여 분과별 과제도출 단계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의 미래상 및 중점 대상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표 3-1-1]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회 차	날 짜	주요 논의 내용
제1차 추진단 회의	5. 21	- 종합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법제화 관련 쟁점사항 고려 - 위원회 인권교육 업무추진 현황 및 평가 관련 논의
제2차 추진단 회의	5. 29	- 위원회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위원회 자체 평가와 그에 대한 외부위원 평가 - 인권교육에 대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무엇을 해야 할지 등 논의
제3차 추진단 회의	6. 27	-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논의 - 인권교육의 비전, 목표, 중점대상 등 논의 - 영역별 세부과제 도출
제4차 추진단 회의	9. 11	- 학교, 공공, 시민사회별 5개년 계획(초안) 작성 논의 - 인권교육 종합계획(초안)에 대한 구성 틀에 대한 논의

(3) 주요 내용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TF에서는 지난 5년간의 위원회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주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인권교육 현황 평가, 인권교육의 향후 5년간 비전 및 중점대상, 학교·공공·시민사회 영역별 과제 도출 등이다. TF는 분과별로 6~7회 분과회의를 통해 인권교육의 개념과 주요 대상, 현황과 전망, 비전과 목표, 분야별 인권교육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종합계획(초안)을 작성했다.

(4) 향후 계획

위원회는 TF를 통해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위원회 주요 사업 내용과의 단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 인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공지할 예정이다.

제 2 장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1. 인권교육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함에 따른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구제와 단편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 및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인권교육법제화 TF를 구성하여 법안의 주요 쟁점과 조문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TF 차원의 법안을 작성하여 보고했다.

인권교육법의 제정은 5대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 예방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권교육 실시 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인권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 선진화 지표를 과시하는 성과로서 인권이사국 재신임(2008년 5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회권규약 심사(2008년 말) 및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부보고서 제출(2008년 12월)에 맞춰 인권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 추진 경과

위원회는 인권교육법제화 TF에서 마련한 인권교육법 시안에 대하여 인권단체, 인권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등 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마련(3. 12)했다.

위원회는 각 단계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초안)'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지자체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인권사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3. 27.), 합동인권교육전문위원회(3. 28.),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4. 2.) 및 공청회(4. 4.)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초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4월 23일 전원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정부 입법 절차를 따르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5. 9.)한 이후, 다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사항을 협의했다. 그러나 인권교육위원회 및 인권교육원 등 기구 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와 법무부의 전반적인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부처 협의가 지체됐다. 특히,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법안의 소관부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무조정실의 거중조정이 진행되었으나, 국무조정실의 조정(9. 21.)이 결렬되고 청와대를 통한 조정(10. 17.)을 통해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5월 말 부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개별 협의가 진행된 지 4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부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률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심사(10. 24.), 차관회의(10. 25.), 국무회의(10. 30.)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3. 부처 이견 조정 과정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기구를 신설하는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모니터링 등 대부분의 법조항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법 제정의 취지를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를 통한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통과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의 반대의견 중 인권교육원 설치 조항 삭제에 합의하여 부처 협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처 협의를 통하여 삭제한 인권교육원 설치 조항 이외에도,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동안 조항별 이견 제시와 달리 우리 위원회의 청와대 특별보고(8. 21) 즈음에 법률안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견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

위원회는 법무부의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원회의 기본업무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소관기관의 적격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우리 위원회는 법률소관이 쟁점화되면서 법률소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각종 모니터링 등 내용의 상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됐다.

※ 부처 협의에 따른 법안 조정 경과 및 내용

국무총리 제출 건의안 (총 15조)	부처 협의 이후 안 (총 14조)	법무부 조정 이후 안 (총 9조)	최 종 안 (총 7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공공기관 등의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인권교육 등)	제7조(인권교육 등)	제6조(인권교육 등)
제8조(공공기관의 협조)	제9조(공공기관의 협조)	삭 제	–
제9조(인권교육위원회)	제10조(인권교육위원회)	삭 제	–
제10조(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삭 제	–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제8조(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의 시행계획 수립)	삭 제	–
제12조(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의 설치·구성)	제11조(인권교육협의회의 설치·구성)	삭 제	–
제13조(인권교육원의 설치)	삭 제	–	–
제14조(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제13조(인권교육의 이행결과 확인)	제8조(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으로 수정	삭 제
제15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제14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제9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제7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부칙	부칙	부칙	부칙

4.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목적 및 정의 조항으로는 제1조(목적), 제2조(인권교육 정의),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

칙), ②권리・의무 조항으로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시행 조항으로 제6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7조(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의 시행과정에서 개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가치 기준 및 지향점을 명시하여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인권교육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교육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인권교육 자원 활용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구금・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사업장 등에 인권교육의 홍보와 시행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의 의미

당초 위원회 제출 원안보다 많은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교육 기본원칙 정립 및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본래 제정 취지에 대한 정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인권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우리 사회 인권교육에 대한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 받고, 인권교육법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부 합의를 도출하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독립위원회가 소관 법률을 갖는 것에 대한 정부부처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소관 법률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입법과정에서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제 3 장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6주년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6주년 기념식은 실제 설립기념일(11. 25)이 일요일이어서 이틀 앞당겨 개최됐다. 기념식은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지원팀장의 사회로 위원회 배움터1(10층)에서 열렸는데, 기념식은 자체 행사로 진행됐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주년 기념사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책무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편협한 국수적 민족주의 정서의 굴레를 극복하고,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인권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직 인권위원을 대표해 참석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6주년 기념식에서는 특별히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인 박이스라르 씨가 '인권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20여 분간 강의를 했으며,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심사한 인권논문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인권논문상은 내외인사 8명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우수작 2편, 가작 1편을 선정하였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생인 정인수 씨와 김푸른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우수작을 수상했다.

위원회 설립 6주년을 축하하는 내부 직원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부서 직원 총 9명이 출연하여 '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10분 정도의 UCC 동영상 인터뷰를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단학 동호회의 단무도 시범과 단학 지도사범의 '천부신검'시연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축하노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위원회 설립 6주년 기념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2.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은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인권교육본부장의 사회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10여 분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9인조 한빛타악앙상블이 <한오백년>과 <풍경>을 주제로 축하연주를 했다.

안경환 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사에서 "인권이란 가치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보편성을 띠고 있듯이 우리 위원회는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안팎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이 기대하고 법률이 부여한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주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의견을 표명했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인권선언 59주년 기념식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2007. 12. 10.

위원회는 2005년까지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 분야에 공로가 큰 각계 인사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으나, 2006년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정부 훈·포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통합해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문인 조화순 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안영도 변호사에게 포장을 전수했다. 또한 인권의식 향상과 증진에 노력한 15명의 개인 및 기관·단체에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

朝鮮日報 12월 10일 a31면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에 조화순 목사

인권운동가 조화순(여·73·사진) 목사가 '대한민국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조 목사를 비롯, 17개 단체와 개인을 올해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목사는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목회자로 1966년부터 20여 년 동안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동일방직에 위장 취업해 여성 노동운동을 이끄는 등 새로운 여성운동 영역을 개척했으며 노동 악법(惡法) 개선과 양심수 석방, 여성신학연구개발 등을 통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 목사는 교회여성연합 회장, 여성단체연합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안영도 변호사, 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최의팔 목사, 장은주 강원도 원주경찰서 경사, 노수환 대전지방검찰청 주사, 권건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위, 함유복 강원도 춘천교도소 교위, 이용의 인천구치소 교위, 최천식 전북 군산 옥구초등학교 교장, 박현희 서울 구일고 교사, 국방부 인권팀,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울산지역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문화방송 드라마 '고맙습니다' 제작진, 한겨레21, SBS '긴급출동 SOS 24', 광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위원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의 가슴에 숭고한 사명을 남겨준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외부초청 어린이가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를 낭독하고 위원회 직원 14명이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낭독했고 다시 어린이가 제15조를 낭독하고 위원회 직원이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낭독하는 방식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의 조문을 낭독했다.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축하공연은 먼저 불교인들로 구성된 혼성4부 LMB 중창단이 <아침이슬>, <행복의 나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3곡을 노래했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지체장애인 박마루로 구성된 '희망으로'팀의 공연이 있었다. 이희아는 <아리랑>을 연주하였고 <Amazing grace>를 불렀으며 두 사람이 듀엣

으로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를 불러 참석자들을 감동시키며 기념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행사는 장애인 친화적인 행사로 기획되었는데 수화통역, 자막방송, 장애인 수송버스 운행 등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로 운영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팀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한편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으로 3부 요인과 주요 정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60주년에 걸맞은 대규모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외빈초청행사(Celebrating the 59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위원회는 2007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을 맞이해 국내 주한외교사절 및 주한외신 등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최초의 행사로 위원회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Dignity for All'을 주제로 국제 외빈 초청 행사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라운지(18층)에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일종의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각국 대표들과 인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소박한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됐다.

초청행사에는 H.E. Mr. Peter ROWE 호주 대사를 포함한 대사급 9명과 부대사 및 참사급 16명 등 주한 외교사절 25명과 국내 주재 외신기자 5명 등 총 60여 명이 참가하였고, 위원회 인력인 인턴과 에디터가 영어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장에 '인권 소망의 나무'를 배치해 소망의 글귀를 장식하는 등 송년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인권의 의미를 각자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초청행사는 안경환 위원장의 개회 연설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와 호주 대사, 영국대사관 참사의 축사, 인권위 홍보영상물 상영, '예쁜 아이들 중창단'의 축하 공연 및 인권홍보대사 위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Dignity for All
Dignity for All
Dignity for All

제 4 장
외국인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1. 추진 배경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사건 이후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사회적으로 요청됐다. 또한 2007년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변호사, 의사, 소방 전문가 등 30여 명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외국인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목적

외국인 보호시설 내 처우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제기준 및 우리 위원회의 기권고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구금시설 내에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3. 조사내용

(1) 미등록 외국인 보호시설

미등록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는 △ 보호외국인 신체 및 소지품 검사 현황

△ 보호거실 내 시설 현황 △ 보호거실 내 채광 및 환기 등 현황 △ 보호외국인의 전화, 면회, 서신 보장 현황 △ 운동 등 여가 활동 및 종교 활동 보장 현황 △ 여성 피보호자 관련 업무 담당자 배치 현황 △ 식습관 문화 배려 및 식사의 질 현황 △ 생활규칙, 권리 및 권리구제 고지 현황 △ 감시카메라 설치 등 현황 △ 경비·계호 인력 현황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했다.

(2) 외국인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에 대한 조사는 △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현황 △ 거실수용 현황 △ 운동 등 여가 활동 및 종교 활동 현황 △ 외국인수용자의 식습관 문화 배려 및 식사 현황 △ 통역서비스 제공 현황(의료, 고충처리 관련) △ 의료서비스 제공 상황(입소 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폭행·가혹행위 및 비인격적 대우 관련 현황 △ 면접권 보장 현황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했다.

4. 조사방법

(1) 설문조사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지는 네팔어·러시아어·몽골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영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파키스탄어·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으며,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지는 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영어·방글라데시어·몽골어로 번역되어 제공됐다.

(2)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면접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수용자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3) 시설조사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를 기재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시설조사를 하였고, 시설업무담당자와 인터뷰도 실시했다.

(4) 자료조사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자료제출 요구와 선행연구 조사, 관련 법제 조사, 해외사례조사를 했다.

5. 방문조사 기관 및 참여자

방문조사는 2007년 6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부산, 광주, 수원, 인천, 마산 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등 총 16개 기관을 방문조사했다.

방문조사에는 위원회 이주인권팀 조사관들과 각 지역사무소 조사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각 지역에서 함께 조사활동을 벌였다.

외국인 보호시설 내부 복도

6. 조사 결과

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와 보호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07년 12월 17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방문 조사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모든 보호시설에서 수용자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어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밖에도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러 대가 설치된 CCTV로 인해 보호 외국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이 조사됐다.

위원회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정책과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대해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기보다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과 같은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외국인 보호 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으며, 보호시설의 환경과 보호시설에서의 처우가 유엔「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준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교도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화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 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권고했다.

제 5 장
APF(Asia Pacific Forum) 지원 조사관 훈련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APF 지원 인권 친화적 조사기법 훈련'을 3일씩 2차에 걸쳐 개최했다. 본 훈련은 APF의 지역별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PF 사무국에서 전체 훈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자금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 홍콩, 남아프리카, 피지, 스리랑카,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권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는 국내 경험에 국한된 것이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조사기법의 습득과 축적된 국내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더 나은 인권 조사기법 개발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 2006년 8월 피지에서 개최된 제11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와 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 조사기법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2007년 10월 이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본 훈련은 애초에는 1회차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조사관들의 높은 관심으로 APF 측과 협의한 끝에 회당 25명씩 총 2차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다.

2. 주요 추진 경과

(1) 사업시행 부서로서 차별시정본부 확정

사업시행 부서로 차별시정본부를 확정하고 현직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되 향후 조사업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도 일부 참가를 허용하였는바, APF 측

은 애초 지원규모를 변경하여 2회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를 근거로 25명씩 2회에 걸쳐 총 50명을 참가자로 확정했다.

APF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호주인권위 소속 트레이너를 훈련 트레이너로 파견했다. 한편, 차별시정본부는 필요한 일체의 행정업무와 훈련진행을 담당하였고, 말레이시아 등 이미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 국가의 훈련 워크북을 분석하고 훈련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여 위원회 조사 활동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APF 훈련 워크북을 위원회 조사업무에 유효하도록 조정했다. 워크북은 차별시정본부의 감수를 거쳐 한글로 번역·이용됐다.

(2) APF 트레이너의 실무협의 방문

훈련을 담당한 호주인권위의 수석 조사관이자 조정관이며 수석 훈련·정책관인 트레이시 레이몬드(Ms. Tracey Raymond)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위원회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훈련몰입이 가능한 독립된 훈련장소와 사례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협의하였고, 효과적인 동시통역 등 준비사항을 확인함과 아울러 훈련 워크북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차별시정본부는 훈련 워크북의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내외 관련 법규와 사례의 적정성, 훈련형식과 방법, 역할극 참가자 조율,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모색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율한 후 협의를 마쳤다.

(3) 훈련 시행

회차별 일정은 아래 표의 프로그램 일정과 같이 진행되었고, 훈련을 위해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회차별로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훈련과정은 2회로 나누어 1회는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2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씩 진행됐다. 훈련은 참여형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조사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검토하고, 침해 및 차별 조사에 적용되는 최상의 실무원칙들이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됐다. 훈련과정은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실습과 역할극이 포함됐다.

(4) 훈련 설문조사 결과

훈련프로그램의 종료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훈련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작 설문과 APF가 준비한 설문 2종류로 실시됐다. APF 설문은 훈련 세부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 설문을 통해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주제 및 내용, 훈련방법, 강사의 수준, 업무상의 도움 여부, 전반적 진행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평균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평균 96%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75% 이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응답해 훈련 집중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훈련을 담당한 트레이너는 현재까지 교육을 시행한 국가를 비교해볼 때 조사관의 높은 열정과 역량이 최고였다고 평가하였고, 위원회의 완벽한 준비와 진행, 참여 조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이 끝난 다음날인 11월 8일 교육평가 및 수료식 때 보고됐다.

3. 주요 내용

'APF 지원 인권친화적 조사기법 훈련'의 훈련과정은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위원회 조사관들을 위하여 개발됐다.

훈련 내용은 △침해 및 차별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한 다양한 모델과 접근법들의 개

관, 참가자의 업무와 관련된 모델과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요 국제 인권조약, 국내법, 침해 및 차별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제반 정의와 개념에 대한 개관 및 재검토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원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표본 △조사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수집·분석을 가능케 하는 지식과 기술 △조사와 관련한 문서화 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개관 △개인의 향후 발전영역 및 현재 조사업무 영역에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4. 향후 계획

금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회 조사방법과 개인의 조사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일부 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위원회 조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체계를 정비하되, 신규조사관 교육과 경력별 심화 교육을 구분하여 역량강화의 단계별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사관 역량강화를 담당할 내부 인적자원 발굴도 시급하며, 한국사회의 인권 친화적 조사기법의 틀을 구성하여 일반 수사기법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의 조사기법과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위원회의 조사기법과 조사범위 등 쟁점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 위원회 조사기법을 세련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1] 조사관 훈련 프로그램 일정

<table>
<tr><th rowspan="3">시 간</th><th>사전 모임</th><th colspan="3">조사 훈련 프로그램</th><th>후속모임</th></tr>
<tr><th>10/30(화)</th><th>10/31(수), 11/5(월)</th><th>11/1(목), 11/6(화)</th><th>11/2(금), 11/7(수)</th><th>11/8(목)</th></tr>
<tr><th>1, 2차 공통</th><th>이론적 접근 및 조사개시</th><th>조사 수행</th><th>자료 분석과 권고, 기록 및 보고</th><th>1, 2차 공통</th></tr>
<tr><td>09:00
~10:00</td><td></td><td>참가자 등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 진정조사
– 인권관련법의 정의, 개념, 구조</td><td>서면증거 및 자료 확보방법
– 최상의 업무처리원칙
– 질의서 작성방법
– 소그룹 실습</td><td>사건발생장소에서의 증거 및 자료수집 (2)
– 사건발생 장소 조사 과정
– 증거자료 처리 지침
– 실습</td><td rowspan="2"></td></tr>
<tr><td rowspan="2">10:00~
11:00</td><td rowspan="2">훈련 담당자 및 프로그램 소개</td><td></td><td>질의 및 대면증거 확보 방법
– 준비
– 면담 구조와 대면질의 기술</td><td>Tea Break</td></tr>
<tr><td>참가자 소개 및 훈련목표 확인</td><td>Tea Break</td><td>Tea Break</td><td rowspan="2">수집 증거 및 자료의 분석 – 1부
– 수집된 증거 및 자료의 분석 단계
– 분석 방법에 대한 시연</td><td rowspan="2">Closing
–교육 평가
–수료식</td></tr>
<tr><td>11:00~
12:00</td><td>서론
– 국제적 관점의 조사

실습 준비</td><td>공정한 사건 조사
– 법 체제별 적법절차
– 진정사건의 적법절차
단계별 조사과정 개요
– 계획 수립,
–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 분석, 문서화 및 보고</td><td>진정인 대면질의
– 이론 & 실습</td></tr>
<tr><td>12:00~
13:00</td><td rowspan="2"></td><td rowspan="2">Lunch</td><td>참고인 대면질의 (1)
– 이론</td><td rowspan="2">Lunch</td><td rowspan="5"></td></tr>
<tr><td>13:00~
14:00</td><td>Lunch</td></tr>
<tr><td>14:00~
15:00</td><td></td><td>조사계획 1부
– 조사계획의 접근법
– 조사계획의 핵심사항</td><td>참고인 대면질의 (2)
– 실습
피진정인 대면질의 (1)
– 이론</td><td>수집 증거 및 자료의 분석 – 2부
– 소그룹 실습</td></tr>
<tr><td rowspan="3">15:00~
16:00</td><td></td><td>Tea Break</td><td>Tea Break</td><td rowspan="2">조사 보고서 작성법
– 조사보고서의 어조, 유형, 형태
– 사건관련 자료 기록 및 관리 원칙
– 조사보고서 작성 : 접근방법, 쟁점</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조사계획 2부
– 소그룹 실습</td><td>피진정인 대면질의(2)
– 이론</td></tr>
<tr><td>16:00~
17:00</td><td></td><td>사건발생장소에서의 증거 및 자료수집 (1)</td><td>훈련 프로그램 재검토 및 결론
– 학습 내용 제고
– 향후 예상활동 확인
– 프로그램 평가</td></tr>
</table>

제 6 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입법 지원 · 모니터링

1. 사업의 배경

우리 사회에서 차별 시정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제 인권 규범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차별 시정의 법적 토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등을 위해서는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별금지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2006년 7월에 정부(국무총리)에 권고했다(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연간보고서 참조).

2007년 위원회는 차별금지 입법 권고 이후, 정부가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2. 주요 경과

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2007년 4월 '차별금지법 제정 TF'를 구성했다. 이 TF에는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였고, 위원회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도 참여했다. TF는 위원회의 「권고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7년 6월 「차별금지법 TF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TF안은 시정명령제도 및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삭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서 배분하는 것으로의 변경 등 일부 차별구제 수단에 대한 수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위원회의

「권고법안」을 수용하여 보완하는 선에서 구성됐다. TF는 2007년 6월에 완성된 TF안을 법무부에 이관했다.

TF안을 이관받은 법무부는 2007년 9월 차별금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법안」에서 소송지원제도 규정 삭제 등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쳐, 2007년 10월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 단계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일부 차별사유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위원회의 「권고법안」과 달리 성적지향,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등을 차별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대신, 차별사유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금지 입법례,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상기의 차별사유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법무부)는 수정된 「차별금지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2008년 1월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8년 2월 상기 2개의 법안을 함께 심의하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제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리하여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관련 2개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3. 향후 계획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의 「차별금지 권고법안」으로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종료되었지만, 위원회는 여전이 우리 사회에서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차별금지 입법 추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2008년에도 위원회는 차별금지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활발히 진행된 여러 논의들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작업도 충실히 진행하고자 한다.

한겨레 THE HANKYOREH

2007년 09월 29일 031면

차별 시정과 구제 장치 미흡한 차별금지법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 성별과 장애 등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출신국이나 민족, 인종과 피부색 및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형태나 종교·사상, 범죄전력, 성적 지향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고, 차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도 담고 있다.

우리 헌법은 '평등'을 핵심 이념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여성권한 잣대에 대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국가간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70개국 가운데 63위에 든다. 장애인은 고용과 이동권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용의 안정성 및 보상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사회 구석구석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이런 차별은 피해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해 차별을 금하는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성차별 등 특정 사유에 한정돼 있고, 선언적으로 차별 금지 원칙만 밝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국제규범을 폭넓게 국내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임에도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 차별까지 금하는 것도 국제기준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국가기관부터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앞장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 교육 기회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으려면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국가의 지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차별 시정은 어렵다.

차별 시정을 강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미흡한 것은 아쉽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으로 차별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법안은 손해배상액을 차별 행위자가 얻은 이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악의적인 차별을 두고서는 징벌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 조직 및 정원
4. 예산
5. 위원회 활동일지
6. 위원회 발간자료
7. 보도자료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安京煥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검찰 인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 및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대통령 지명 (06. 10. 30.~ 09. 10. 29.)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주간 •문화일보 편집국장, 상무이사 겸 편집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국회 선출 (04. 12. 24.~ 07. 12. 23.)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선출 (04. 7. 23.~ 07. 9. 20.)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통령 지명 (04. 12. 24. ~ 07. 12. 23.)

구분 / 성명	주요경력	비 고
 상임위원 최경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원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대통령 직속 빈곤과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분야 전문위원	국회 선출 (07. 09. 21~ 10. 09. 20)
 상임위원 유남영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임시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통령 지명 (07. 12. 24.~ 10. 12. 23.)
 비상임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대법원장 지명 (04. 12. 24.~ 07. 12. 23)
 비상임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남북특수법령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원장	대법원장 지명 (04. 12. 24.~ 07. 12. 23)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위원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객원교수 •아태여성·법·개발포럼(APWLD) 위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	국회 선출 (05. 3. 15.~ 08. 3. 14.)
 비상임위원 원형은	•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96 부산 인권문화제 공동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인권위원장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연대 공동대표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6 · 15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권리찾기 부산연대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대통령 지명 (05. 6. 1.~ 08. 5. 31.)
 비상임위원 김태훈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전주, 서울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사 •부산, 인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제5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부장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06. 8. 10.~ 09. 8. 9.)
 비상임위원 윤기원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 및 성차별조정위 위원	국회 선출 (06. 10. 25.~ 09. 10. 24.)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위원 정재근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금선사 주지 •참여연대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1~13대 의원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 지명 (07. 02. 08.~ 10. 02. 07.)
 비상임위원 황덕남	•서울지방법원 판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세계법무법인 구성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장 지명 (07. 12. 24.~ 10. 12. 23)
 비상임위원 조 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양형 제도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교류이사, 공보이사, 인권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국제이사 •서울대 법대 부교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대법원장 지명 (07. 12. 24.~ 10. 12. 23)

□ 역대 위원장

성 명	주 요 경 력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 대전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12. 24. ~ 2005. 3. 23.
 제3대 위원장 조영황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 4. 4. ~ 2006. 10. 2.

□ 역대 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상임위원 박경서	·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1.
상임위원 유시춘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3.
비상임위원 이진강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01. 11. 25. ~ 2002. 11. 30.
비상임위원 곽노현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4.
비상임위원 조미경	· 아주대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비상임위원 김오섭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비상임위원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비상임위원 김덕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5.
비상임위원 이흥록	·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9.
비상임위원 나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12. 24. ~ 2006. 6. 29
비상임위원 김만흠	·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비상임위원 이해학	·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사무총장 김칠준	· 법무법인 다산 공동대표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인권정책본부장 김인재	·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 위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행정기획본부장 안종철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18연구소) 연구위원 · 광주광역시 5·18 전문위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	 침해구제본부장 손심길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1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장
 차별시정본부장 정연순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 위원 · 제주 4·3 항쟁진상조사위원회 의료분과 심의위원 · 보건복지부 정신대피해자 보상심의위원	 인권교육본부장 나영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담당관 · 청와대 연설비서실 공보담당 국장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2007. 12. 31. 기준)

□ 정책자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선욱	· 전 법제처장 · 이화여대 법대교수	위원장
권근술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	2007. 12. 22. 위촉 제2기 정책자문위원
고형일	· 제13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권오성	·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순덕	·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섭	·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김해성	· 목사,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명 진	· 봉은사 주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박태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방귀희	·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	
배은심	· 전 유가협 공동의장	
손 숙	· 제6대 환경부 장관	
안성례	· 전 민가협 의장	
윤 현	·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이건용	·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경혜	· 부산점자도서관 관장	
이기숙	· 전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이동익	· 신부,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이배근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이수호	·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양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옥경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윤성	·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	2007. 12. 22. 위촉 제2기 정책자문위원
이정택	·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장 교무	
이혜경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수철	·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조용환	·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조흥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혁	·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최병모	· 전 민변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용근	· 법무법인 동서남북 대표변호사	
허노묵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홍봉선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Werner Kamppeter	· Ebert 재단 대표	

□ 전문위원회

1) 사회권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정강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김선택	· 고려대 법대 교수(헌법)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운	·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박찬운	· 한양대 법대 교수(국제법)	
이경주	· 인하대 법대 교수(헌법)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유정	·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이찬진	· 참여연대 ·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광석	· 연세대 법대 교수(헌법, 사회보장법)	

2) 아동권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황덕남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조기제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도덕교육과)	
모선영	· 한국복지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신의진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경수	· 전남대 법대 교수	
이명숙	· 변호사	

3) 국제인권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박기갑	· 고려대 법대 교수	
오재창	· 해마루 법무법인 변호사	
양영미	·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차지훈	·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장복희	· 가톨릭대 법대 교수	

4) 검 · 경수사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윤기원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이상돈	· 고려대 법대 교수	
김성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도재형	· 이화여대 법대 교수	
이경희	· 호남대 법대 교수	

5) 군인권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원형은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이계수	· 건국대 법대 교수	
송기춘	· 전북대 법대 교수	
김의형	·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	
이상영	·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6) 교정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정재근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이호중	· 한국외대 법대 교수	
정승환	· 고려대 법대 교수	
이영기	·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주영수	· 한림대 의대 교수	
전준형	· 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7) 다수인보호시설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호준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신영전	· 한양대 의대 교수	
유원섭	· 을지대 의대 교수	
윤혜미	· 충북대 교수	
김영수	· 변호사	
변혜정	· 이화여대 교수	
박숙경	· 시설공대위	
서경석	· 인하대 법대 교수	

8) 차별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최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박석운	·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찬진	·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일	· 고려대 법과대학 조교수	
엄규숙	· 경희사이버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형	· 중앙대 법과대학 조교수	

9) 성차별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신혜수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김 진	· 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만	·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윤홍식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정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도균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10) 장애차별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윤기원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장
권선진	·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배융호	·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2007. 11. 30. 임기만료
김승돈	·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	
임성숙	· 광주 민변 부회장	
이선우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박종운	·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11) 외국인인권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최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석원정	·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담도경	· 한국학회 이사 · 서울교육대 겸임교수	
최홍엽	· 조선대 법학과	
이정호	·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대표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차미경	· 아시아의 친구들	
박찬운	· 한양대 법학과 교수	

12) 학교인권교육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호준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구정화	· 경인교대 교육학 교수	
이기규	· 수송초등학교 교사	
이인규	· 서울미술고 교감	
조난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본부장	
박김형준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영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아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호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3) 공공 · 시민인권교육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최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김형식	· 한반도 국제대학원 교수	
이대훈	·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강택	· KBS프로듀서	
오완호	·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한상훈	· 연세대 법대 교수	
최강욱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14) 정신장애인 전문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안경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신영전	· 한양대 의대 교수	
홍진표	· 울산대 의대 정신과교수	
윤 탁	· 축력복음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이용표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경석	· 인하대 법대 교수	
염형국	·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송상교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조정위원회

1) 차별 조정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유길상	·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석태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영환	· 고려대 법대 교수	
조주현	·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최일숙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한충수	· 한양대 법대 교수	
최은순	·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이광택	· 국민대 법대 교수	
윤진호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박광서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김선수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임승현	·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 성차별 조정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선택	· 고려대 법대 교수(헌법)	
김주덕	·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정선	·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정춘숙	·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이유정	·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신은주	· 평택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영희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명숙	·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	
유 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강병근	·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박승희	· 이화여대 사범대 특수교육과 교수	
여상규	·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이경우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이성규	· 서울복지재단 대표	
김동범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정형표	· 법무법인 인덕 변호사	
이상영	·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강영심	· 부산대 특수교육과 교수	
박영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4) 인권침해 조정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배병호	·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변호사	
손명세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안경옥	· 경희대 법대 교수	
신창현	· (사)환경분쟁연구소 소장	
황성기	· 서울신문 논설위원	
문강분	· 위더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기타

1) 정보공개심의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2) 행정심판위원회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장주영	변호사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원우	서울대 법학과 조교수	

3.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1명(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5본부 22팀 4소속기관

○ 정 원 : 2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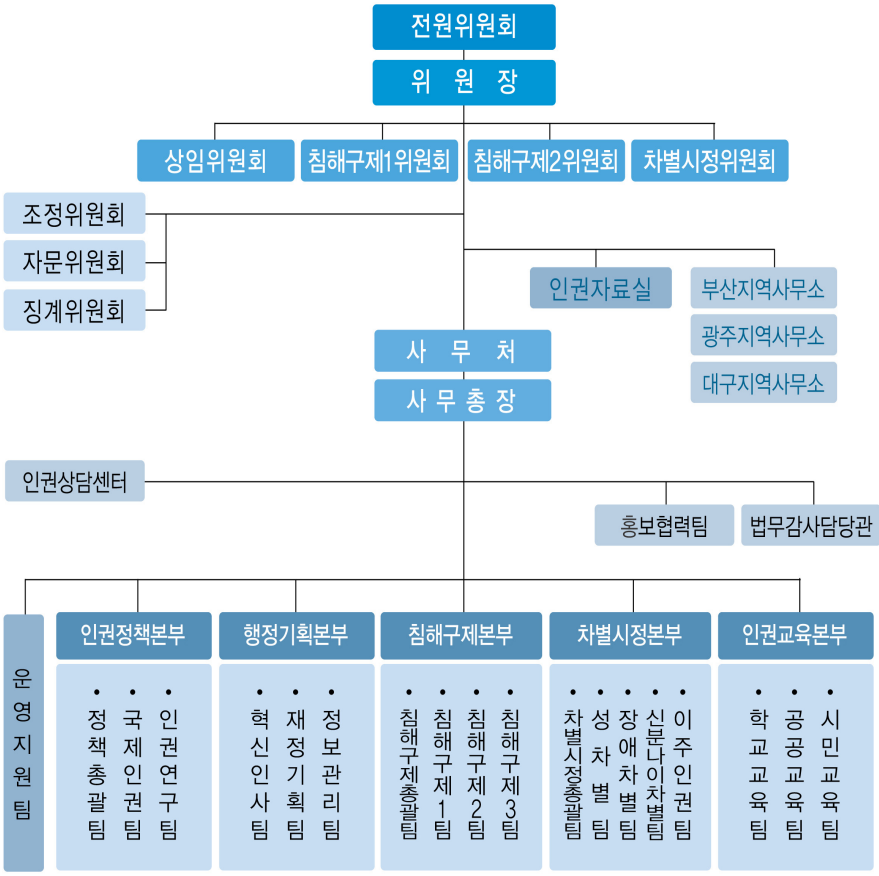

4. 예산

(1)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 예산	증 감	%	비 고
계	21,558	21,909	351	1.6	
인 건 비	9,082	9,962	880	9.7	
사 업 비	12,476	11,947	△529	△4.0	
•기본사업비	7,136	7,103	△33	△0.5	
•주요사업비	5,340	4,844	△496	△9.3	

(2) 인건비 : 9,962백만원

○ 정원 201명, 전문계약직 7명, 별도정원 3명, 청원경찰 1명 등 인건비

○ 2007년 예산상 증원 내역

- 증원 총 7명 : 지역사무소 6, 북한인권 1

(3) 기본사업비 : 7,103백만원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3,496백만원

- 임차료 2,490백만원(2,680평×70,380원×12월×1.1)
- 관리비 1,006백만원(2,680평×28,431원×12월×1.1)

○ 지역사무소 운영비 : 367백만원

○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 3,240백만원

(4) 주요사업비 : 4,844백만원

○ 인권의식향상 매체 발간(257백만원)

- 인권정보 제공(인권정책·권고 등), 인권의식 향상, 인권감수성 심화를 위한 인권 전문 월간지 발행

○ 인권 전문 상담원 운영(235백만원)
- 전문상담원 위촉 및 인권 상담 전문성을 제고해 다양화된 상담경로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업무의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695백만원)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차별 등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 인권정책 홍보 캠페인, 차별시정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정책 및 차별시정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 및 인권문화 조성
-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통한 인권문화 조성

○ 인권 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588백만원)
- 인권현안 TF 운영,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 관련 문헌 번역,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연구를 통해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친절·봉사 시스템 확립과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원회 만족도 조사

○ 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69백만원)
- 인권취약분야의 진정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적극적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인권취약분야 방문조사
-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 및 잠재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조사·구제 및 정책개발

○ 북한인권 연구(142백만원)
- 북한인권 관련 법제 실태 조사·연구
- 북한인권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
- 재외탈북자의 인권상황 추이 분석 및 정책대안 수립
- 북한상황 및 관련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국내외 관련 기구와 교류·협력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1,356백만원)
- 위원회 업무 목표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ISP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 인권교육 활성화(706백만원)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인권교육 강화,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인권교육 추진 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293백만원)
- 인권의식의 저변확대와 생활 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적인 인권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대국민 인권의식 신장 및 확산
- 인권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협력관계 구축, NGO들의 전문성 제고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 강화

○ 국제교류협력(403백만원)
- APF, 유엔 주관 회의 및 각종 NGO 회의 등에 참가해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주요 국제 이슈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리더십 제고의 계기 마련

○ APF 활동지원(100백만원)
- APF의 인권활동을 지원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국제연대 및 상호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외국인 노동자, 인종차별 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 수행

5. 위원회 활동일지(2007. 1. ~ 12.)

2007년 1월

1월 2일 · 국가인권위원회 시무식(배움터 1)
· 월간 <인권> 1월호(통권 41호) 발간
1월 2일 · 국립묘지 참배(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본부장 및 직속팀장 참석)
1월 3일 · 청와대 신년 인사회 참석(위원장, 상임위원)
1월 4일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1월 6일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화천애니메이션 영상제 초청 상영(1.6.~28.)
1월 8일 ·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심의 1건)
· 2007년 연간 주요업무 계획 확정
1월 9일 · 제1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1월 10일 · 제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16건 처리)
1월 11일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1건)
1월 15일 · 곽노현 사무총장 사임
· 제1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66건 처리)
1월 16일 · 새터민 조사기관 및 수용시설 방문(대성공사, 하나원)
1월 18일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1월 19일 · 인권 영화 <세번째 시선> 101회 독립영화발표회 초청상영
1월 22일 ·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4건, 의결 1건)
· 제1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4건 처리)
1월 23일 · 제2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30건 처리)
1월 24일 · 제9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보스턴 미술박물관 한국영화제 초청 상영(MFA, Korean Film Festival, Museum of Fine Art, Boston, 1.24.~28.)

1월 25일 ·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 제2차 차별조정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1월 29일 · 김칠준 사무총장 취임

1월 31일 · 제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4건 처리)
· 전문상담위원 위촉식과 업무연수(변호사 등 34명 위촉)

2007년 2월

2월 1일 · 월간 <인권> 2월호(통권42호) 발간
· 제3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상정 2건)

2월 2일 · 인권현장 방문(새터민 청소년 생활공동체학교 '다리공동체', 위원장 등)
·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4회 몰레딜발레 아시안영화제(4th Mollet del Vallès Asian Film Festival, 바르셀로나 2.2~4.)초청

2월 6일 · 07년 제1차 장애차별조정위원회 개최

2월 8일 · 일본 NGO 단체 Human Rights Now, 위원장 예방(아베 교수, 이토 가즈코, 스즈키 아츠시 등 변호사 4명)

2월 12일 ·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4건)
· 제2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9건 처리)

2월 13일 · 제3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24건 처리)

2월 15일 · 제5차 상임위원회 개최 (보고 2건, 의결 1건, 심의 3건)
· 인권만화 <십시일反> 19쇄 발행
· 인권만화 <사이시옷> 2쇄 발행

2월 20일 · 제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1건 처리)

2월 21일 · 제4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2건 처리)
· 제15차 사회권포럼 개최(한국의 아동권 실현 수준 및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 동티모르 외무부장관 인권위원회 방문(조스루이스 구테레 장관)

2월 22일 · 제3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서울과학전시관)

2월 23일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부산문화회관)

2월 24일 · 스타키 교수 등 국제워크숍 발제자 인권연구학교 방문(대평초등학교)

2월 26일 ·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3건)
· 제3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0건 처리)
· 제1차 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광주시 교육정보원)

2월 27일 ·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 (의결 1건)

2월 28일 · 인권NAP 권고안 책자 발간 및 정부, 국회, 인권단체 송부
· 북한인권관련 위원회 개성공단 방문

2007년 3월

3월 1일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제17회 카이로국제어린이영화제(3.1~8. 이집트) 초청 참가

3월 2일 · 월간 <인권> 3·4월호(통권 43호) 발간
· 제3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상정 1건)

3월 5일 · 제5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2건 처리)

3월 6일 ·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

3월 8일 ·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3건)
· 산타클라라 법과대학 인권위원회 방문(마크 에이 플레이어 교수, 필립 지멘스 교수 등 2명)

3월 9일 ·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4건 처리)

· 국제협력 TF 제1차 회의 개최(박경서, 신혜수, 정인섭, 선미라, 이성훈 위원)

3월 12일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 제4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6건 처리)

3월 13일 · 제1차 상담사례 발표회 개최(인권상담센터 회의실)

3월 15일 · 제9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아시아 인권운동가 위원장 예방(리 탄동 등 베트남 인권운동가 7인)

3월 16일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제10회 스코페영화제(3.16~25. 마케도니아) 초청

3월 18일 · 제1차 인권순회상담(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

3월 19일 · 제6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2건 처리)

3월 22일 · 제1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3월 23일 · 제3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상정 2건)

3월 26일 ·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4건)
· 제5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5건 처리)

3월 28일 ·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9건 처리)
· 제16차 사회권포럼 개최(시설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 제10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9회 도빌아시안영화제 (3.28~4.1., 프랑스) 초청
· 제4차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 광주지역사무소 인권순회상담 개최(3.28~29. 광주희망원)

3월 29일 ·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2007년 4월

4월 2일 · 제7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76건 처리)

4월 4일 · 2/4분기 직원조회 실시(특강 :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경제문제의 이해, 서울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4월 5일 ·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4건, 의결 2건)
· 제62회 식목일 기념 '인권나무심기' 행사개최(부산구치소 공동)

4월 9일 ·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 (보고 2건, 의결 4건)
· 제6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6건 처리)

4월 10일 · 인권현장 방문(마음사랑 정신병원, 위원장 등)
·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4월 11일 ·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0건 처리)

4월 12일 · 제1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3건)
· 제2차 인권순회상담(청주시 수곡2동)

4월 16일 · 제8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29건 처리)

4월 18일 · 북한인권 관련 국정원 대성공사 방문
· 2007년 인권단체협력사업 설명회(배움터, 홍보협력팀)

4월 19일 · 제14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3건, 의결 2건)

4월 22일 · 청년실업극복을위한 희망달리기대회-전시전(서면일대)

4월 23일 ·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5건)
· 제15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 제7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9건 처리)

4월 26일 ·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2건)

4월 27일 ·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 직원 위원회 방문 연수(무사 술타니)
· 영남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4월 30일 · 제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6건 처리)
· 제9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87건 처리)
· 제1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2008.4.30.~5.7. 소속직원 10명, 서면결의 : 국내서 단행본 270종, 서양서 단행본 76종, 영상자료 145종 심의)

2007년 5월

5월 1일 · 월간 <인권> 5·6월호(통권44호) 발간

5월 3일 ·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 (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 한국기자협회 여성언론인 세미나, 위원장 특강
· 전국순회전 광주 전시 개최(5.3.~20.)
· 광주지역사무소 인권문화 콘텐츠 전시회(5.3.~22. 시립미술관 별관)

5월 4일 ·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남아공 부통령 부군 위원장 예방(불레라니 나쿠가 부통령 부군)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문화관광부 '가정의 달'영화제 상영

5월 7일 · 제10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68건 처리)
· 중국 NI 설립준비연수단 방문 연수(중국정법대학장 쉬씨앤밍 외 11명)

5월 8일 · 07년 제1차 성차별조정위원회 개최
· 인권현장 방문(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및 진폐환자가정 등 태백 광산촌 방문, 위원장, 최영애·김호준·정강자 상임위원 등)

5월 10일 ·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 제8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1건 처리)

5월 11일 · 인권자료실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인권분야 전문가 12명) 위촉 (2007.5.11.~2009.5.10.)

5월 12일 · 춘계 체육대회 행사 개최

5월 14일 ·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 제8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3건 처리)

5월 15일 · 제3차 인권순회상담(충남 홍성군)
· 정강자 위원 광주방문(5.15.~16. 전남대 특강)

5월 16일 ·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 위원장 강연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서울여성의전화 주최 제2회 여성인권영화

제 초청 상영(5.16.~5.19.)

5월 17일 · 위원장 광주 방문(5.17~18. 전남대 특강), 5·18 행사 참석

5월 20일 · 인권만화 <십시일反> 21쇄 발행(10,000부, 총 99,500부)

5월 21일 · 제11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건 처리)

5월 23일 ·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3건)

· 제11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5월 28일 ·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 제12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1건 처리)

· 제9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9건 처리)

5월 29일 · 제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0건 처리)

5월 31일 · 제4차 인권순회상담(제주도 제주시)

2007년 6월

6월 1일 · 제4차 인권순회상담(제주도 서귀포시)

· 위원장 초청 경상대 특강 실시(국립경상대학교)

6월 3일 · <여섯 개의 시선> <별별 이야기> <다섯 개의 시선> 2007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상영

6월 5일 · 제13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72건 처리)

6월 7일 ·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보고 2건)

· 한국기자협회 대의원대회 사무총장 인권특강

6월 8일 ·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6월 11일 · 제10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4건 처리)

·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6건 처리)

· 자카르타 프로세스 콘다 여사, 위원회 방문(위원장, 최영애 위원)

6월 14일 · 제2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6월 16일 · 진주지역 인권순회상담(진주청소년수련관)

6월 18일 · 제14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5건 처리)
6월 20일 · 제12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6월 21일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별별 이야기>, <다섯 개의 시선> 창원 여성영화제 상영(6.21.~23.)
· <별별 이야기>, <다섯 개의 시선> 제3회 여성노동문화제 상영(6.21.~23.)
6월 22일 · 제2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2건, 보고 1건)
· 제1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4건 처리)
6월 23일 · 제5차 인권순회상담(전북 부안읍)
6월 24일 · 제5차 인권순회상담(전북 부안군 계화도)
6월 25일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1건)
· 제11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1건 처리)
6월 28일 · 제26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제15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건 처리)
6월 29일 · 제3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 상정 3건)

2007년 7월

7월 1일 · 대구지역사무소 업무 시작
7월 2일 · 월간 <인권> 7·8월호(통권45호) 발간
7월 4일 · 3/4분기 직원조회(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조민영 변호사)
7월 4일 · 제4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7월 5일 · 제2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2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7월 6일 · 인권현장 방문(청주여자교도소, 여성구금시설 실태파악 및 여성교정공무원의 고충 청취 및 정책적 대안 모색,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 등)
·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5회 대구평화영화제 초청 상영(7.6~7.8.)

7월 8일 · <여섯 개의 시선> <별별 이야기>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작은여성영상문화제 초청 상영(7.8~7.9.)

7월 9일 ·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 제16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7건 처리)
· 제12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건 처리)

7월 12일 · 제28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 광주지역사무소 인권순회상담 개최(7.12~13. 여수시)

7월 13일 · 제1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2건 처리)
· 인도네시아 인권위원 누르콜리스 위원장 면담
· <세 번째 시선> 제3회 인천여성영화제(7.13~7.17.) 개막작 상영

7월 16일 · 제13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9건 처리)

7월 18일 · 제2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제5차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7월 19일 · 제3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1건)
·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정보 침해 관련 의견 표명
· 제2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2007.7.19.~7.25)

7월 20일 · 제17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5건 처리)
· <세 번째 시선> 제주여성영화상영회 초청 상영(7.20.~7.22.)
· <세 번째 시선> 광주미디어센터 상영회 상영(7.20.~7.21.)

7월 22일 · 사이버인권배움터, 중앙인사위원회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7월 23일 ·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건, 의결 5건)
· 제14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8건 처리)

7월 25일 · 제18차 사회권포럼 개최(사회권 지표개발 방안 모색)
· 제13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7월 26일 · 제31차 상임위원회 개최 (보고 1건)

7월 27일 · 인권교육종합계획 학교·공공·시민사회 분과회의 개최

7월 30일 · 제18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05건 처리)

7월 31일 · 제5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 국제협력 TF 제2기 제1차 회의 개최

· 제3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2007.7.31.~8.8. 인권분야 전문가 11명, 소속직원 10명, 서면결의 : 국내서 단행본 577종, 서양서 단행본 305종 심의)

· 인권만화 <사이시옷> 4쇄 5,000부 발행(총 23,000부)

2007년 8월

8월 1일 · 일본 인권단체 HURIGHTS OSAKA, 위원회 방문

8월 2일 · 제1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2건 처리)

8월 4일 · 부산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인권캠프 내 포스터 전시(8.4.~5.)

8월 9일 ·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8월 10일 · 제15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6건 처리)

· 전문상담위원 위촉식과 업무연수(26명 추가위촉)

8월 13일 · 제19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7건 처리)

8월 16일 · 제3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1건)

· 인권현장 방문(성가정입양원, 위원장 등)

8월 17일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8.17~8.21.)

8월 21일 · 제3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 상정 1건)

· 대통령 특별 보고

8월 23일 · 제3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제16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3건 처리)

8월 24일 · 국제협력 TF 제2기 제2차 회의 개최

8월 27일 ·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4건, 의결 5건)

· 제3차 상담사례 발표회 개최(인권상담센터 회의실)

8월 28일 · 제6차 인권순회상담(대구광역시)
·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인권주간행사 (8.28.~8.31, 인권자료실 홍보 및 인권사진 포스터 전시회, 인권 퍼포먼스 및 참여행사 (인권지킴이 약속해, 인권의 메아리)

8월 29일 · 제14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 제6차 인권순회상담(경북 안동시)

8월 30일 · 제3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 제1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0건 처리)
· 국제의원연맹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보고서 작성

8월 31일 ·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식(위원장, 상임위원 3, 사무총장, 지역 단체 및 기관 관계자 250여 명 참석)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이주노동자영화제 개막전 및 전국 투어 상영(8.31.~9.1.)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DVD 출시

2007년 9월

9월 1일 · 월간 <인권> 9·10월호(통권46호) 발간

9월 3일 · 개도국 NI 초청연수 실시 (9.3.~7.,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인권위원 등 총 6명)

9월 5일 · 제6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9월 6일 · 제3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2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 광주지역사무소 인권순회 상담 개최(전북 송광녹지원)

9월 7일 · 제20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건 처리)
· 인권영화, 애니메이션 KT&G 상상마당 상영(9.7.~19.)
· <여섯 개의 시선> 거제 M Park 상영

· <여섯 개의 시선> 등 4편 천주교 부산교구 50년 기념 인권영화제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9.7.~18.)

9월 10일
· 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7건)
· 제17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33건 처리)
·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9월 11일
· 제21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07건 처리)
· 제1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2건 처리)

9월 13일
· 제3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심의 2건)

9월 14일
· 제22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2건 처리)

9월 16일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좋은 영화감상회 상영

9월 17일
·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5건)
· 제18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20건 처리)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일본 부락동맹 오사카 연합회 인권위 방문(정강자 상임위원, 배움터)

9월 18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9월 19일
· 제7차 인권순회상담(강원 춘천시)
· 제19차 사회권포럼 개최(주거와 인권 일반)
· 제15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9월 20일
· 제3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4건, 보고 1건)
· 제1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17건 처리)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대구경북지역 '1331'개통 보도자료 자체 제작 및 배포(대구지역사무소)

9월 21일
· 제3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 상정 3건)

2007년 10월

10월 1일
· 인권상담전화 '1331'대구경북지역 개통

10월 4일 · 제3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 불교인권학교 '자비 · 생명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개최(법주사 교육관)
· 법무부「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법주사 종교인 대상 위원장 인권특강

10월 5일 · 4/4분기 직원조회 실시(특강 : 한국 속의 세계, 정수일 박사)

10월 5일 · 제1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배움터2)

10월 7일 · 제7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10월 8일 ·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4건)
· 제19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건 처리)
·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위원장 인권특강

10월 9일 · 제1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5건 처리)
· <별별 이야기2 - 여섯 빛깔 무지개>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 초청상영

10월 10일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UN 담당 국장, 위원장 면담(마틴 맥퍼슨 국장)
· 제4차 인권자료실 자료선정위원회 개최(2008.10.10.~10.25. 인권분야 전문가 11명, 소속직원 10명, 서면결의 : 서양서 단행본 406종, 영상자료 134종 심의)

10월 11일 · 제4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10월 16일 · 제23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51건 처리)

10월 17일 · 부산지역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 간담회, 기념식 및 100분 토론회 개최

10월 18일 · 제20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52건 처리)
·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행사 개최(무등파크 호텔)

10월 19일 · 제41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3건, 보고 1건)
· 인권현장 방문(마석 샬롬의 집, 위원장, 최경숙 상임위원 등)

10월 22일 ·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5건, 의결 4건)

10월 23일 · 제8차 인권순회상담(울산광역시)

10월 25일 · 제4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제21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건 처리)

10월 26일 · 제24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0건 처리)
· 인권자료실 제1회 인권영화상영회 개최(새터민 청소년 영상작품모음집)

10월 29일 · 조정위원 위촉식 : 조정위원 17인 재위촉

10월 30일 · 제18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8건 처리)
· <다섯 개의 시선> 여수인권영화제 상영

10월 31일 · APF 지원 조사관 훈련프로그램 시행(10.31~11.7. 서울유스호스텔)
· 인권만화 <십시일반> 22쇄 발행(10,000부, 총 109,500부 발행)
· 성안드레아병원 종사자 대상 정신장애인 관련 위원장 인권특강
· 인하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대구지역 제1회 인권음악회 실시(공공교육팀, 대구지역사무소)

2007년 11월

11월 1일 · 제4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2건)
· 월간 <인권> 11·12월호(통권47호) 발간
· 한양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대구경북지역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11.1~11.16, 대구·경북지역 23개소, 인권상담센터, 대구지역사무소)

11월 2일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11월 8일 · 제44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보고 1건)

11월 9일 · 제4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인권자료실 제2회 인권영화상영회 개최(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2007년 인권논문공모사업 수상작 발표
· 2007년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11월 12일 ·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9건)
·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11월 13일 · 제1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9건 처리)
· 인권현장 방문(양진노인마을, 김호준 상임위원 등)
11월 14일 · 제25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9건 처리)
11월 15일 · 제4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 결정례 제2집(2005~2006) 발간
11월 16일 · 제22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74건 처리)
· 제2차 차별전문위원회 개최(복식학급 아동들에 대한 학습권 차별 등 3건 논의)
11월 19일 · 제23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건 처리)
·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3개 시설 조사(부산지역사무소)
11월 21일 · 이화여자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11월 22일 · 제47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고려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11월 23일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6주년 기념식(배움터 1, 인권논문공모사업 수상작 시상)
11월 24일 · 제9차 인권순회상담(대전광역시)
11월 26일 ·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0건)
·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11월 27일 · 제2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3건 처리)
· 위원회 인권위원 하반기 워크숍
· 국제법 국내이행 관련 미국 호프만 교수 초청 강연
11월 28일 · 제8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아시아 NI 인권현안 공동사업 중간발표(제목 :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 및 베트남의 이주절차 및 국제 결혼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11월 29일 · 제4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1건)
· 제16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11월 30일 · 인권자료실 제3회 인권영화상영회 개최(불편한 진실)
· 학생선수 인권개선을 위한 협의회
·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제10회 토론토 릴아시안 국제영화제 초청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제20회 일본 수카가와 국제단편영화제 초청

2007년 12월

12월 4일 · 제24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4건 처리)

12월 6일 · 제4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4건, 보고 1건)

12월 8일 · 광주지역사무소 뉴스레터 서비스 실시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행사(백범기념관)
· '대한민국 인권상'수여(국민훈장 동백장 '조화순'등 총 17명, 단체 포함)
· 인권음악회 개최(광주지역사무소)

12월 11일 · 제26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52건 처리)

12월 12일 · 제17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 아동권전문위원회 개최(아동권 정책검토 기본계획)
· 인권교육 어울마당 개최(12.12.~12.14, 한국표준협회인재개발원) : 전국시·도교육연수원 인권교육 간담회(12.12),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종합보고회(12.12~13), 수도권 인권교육 실천대회(12.13), 제1차 인권교육포럼(12.14)

12월 13일 · 제5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심의 3건)

12월 14일 · 제25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4건 처리)
· 제2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1건 처리)

· 인권자료실 제4회 인권영화상영회 개최(오래된 정원)

12월 17일 ·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8건)
· 제2차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18일 · 제27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2건 처리)

12월 20일 · 제5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12월 21일 · 인권자료실 제5회 인권영화상영회 개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영상에 담는 인권)
· 전북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12월 24일 ·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 기념행사 '사형수에게 희망을' 이벤트 개최
· 인권현장 방문(미군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센터 두레방, 위원장 등)

12월 26일 · 조정위원 위촉식 : 조정위원 21인 추가 위촉

12월 27일 · 제5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심의 1건)

12월 31일 · 결정례집 CD (2002~2006) 발간
· 전문상담위원 45명 재위촉(위촉기간 2008.1.1.~12.31.)
· 국가인권위원회 종무식(배움터1)

6. 위원회 발간자료

자료유형	연번	자료명	저(편)자	발행일	발간부서
연간보고서	1	연간보고서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7.5	재정기획팀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7.5	재정기획팀
결정례집	3	결정례집 : 성희롱(2007 제1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성차별팀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2집 인권정책분야	국가인권위원회	2007.10	정책총괄팀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2집 차별시정분야	국가인권위원회	2007.10	차별시정총괄팀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2집 침해구제분야	국가인권위원회	2007.10	침해구제총괄팀
실태조사보고서	7	(2007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7.12	광주지역사무소
	8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세대 사회학과	2007.12	국제인권팀
	9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2007.12	인권연구팀
	10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소	2007.11	인권연구팀
	11	새터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생활 및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7	광주지역사무소
	12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한남대 산학연구팀	2007.11	장애차별팀
	13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12	신분나이차별팀
	14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경인교대 산학협력단	2007.8	학교교육팀
자료집	15	2006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인권교육실천사례 수상작	국가인권위원회	2007.2	학교교육팀
	16	2007 북한인권 토론회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정책총괄팀
	17	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07.4	인권연구팀
	18	2007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7.10	인권상담센터
	19	2007 Santa Clara Human Rights Progra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7.6	위원장실
	2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인권연구팀
	21	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공동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2007.3	정책총괄팀

자료유형	연번	자료명	저(편)자	발행일	발간부서
자료집	22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07.7)	국가인권위원회	2007.7	법무감사담당관
	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11	인권연구팀
	24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정책총괄팀
	2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김칠준 외	2007.9	사무총장실
	26	난민보호의제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인권연구팀
	27	납북자 문제 관련 국제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정책총괄팀
	28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이주인권팀
	29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 이주사례/독일 한인이주자 초청 포럼	국가인권위원회	2007.11	이주인권팀
	30	방송과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7.9	홍보협력팀
	3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3	침해총괄팀
	32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정책총괄팀
	33	사회권포럼 자료집 I	국가인권위원회	2007.11	인권연구팀
	34	사회권포럼 자료집 II	국가인권위원회	2007.11	인권연구팀
	3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표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2007.1	국가인권위원회
	36	유엔 강제실종협약 관련 쟁점에 관한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2007.7.12	국제인권팀
	37	유엔인권조약제도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인권연구팀
	38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7.5	이주인권팀
	39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콜로키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12	한국사회복지학회
	40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4	학교교육팀
	41	인권친화적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9	학교교육팀
	42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2007.1	국제인권팀
	4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7.4	부산지역사무소
	44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가인권위원회	2007.3	국제인권팀
	4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토론회(광주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2007.4	광주지역사무소
	4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2007.4	국제인권팀
	47	재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7.5	정책총괄팀
	48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3	인권연구팀

자료유형	연번	자료명	저(편)자	발행일	발간부서
자료집	49	지역내 아동인권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9	차별시정본부
	50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8	대구지역사무소
	51	지역내 아동인권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3	광주지역사무소
	52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관련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1	침해구제본부
	53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인권연구팀
	54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광주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2007.6	광주지역사무소
	55	탈북 여성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5	정책총괄팀
	56	탈북 청소년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정책총괄팀
	57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공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3	신분나이차별팀
	58	Bangladesh Delegation's Study Visit to the NHRCK	국가인권위원회	2007	위원장실
교육자료	59	2007 제주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7.11	광주지역사무소
	60	2007년 인권교육 실천대회(경북권)	국가인권위원회	2007.11	대구지역사무소
	61	건강과 인권에 관한 25가지 질문과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국제인권팀
	6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의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정책총괄팀
	63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국제인권팀
	64	불교인권학교	국가인권위원회	2007.10	홍보협력팀
	65	인권정책본부 교육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정책총괄팀
	66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10	홍보협력팀
	67	한국에서의 난민보호의 현황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7.6	정책총괄팀
	6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7.2	학교교육팀
기타보고서	69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2007.12	국제인권팀
일반단행본	70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야기 인권(점자책)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홍보협력팀
	71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12	인권연구팀
	72	The Role of NHRIs in thr Newly Established UN Human Rights Mechanisms	국가인권위원회	2007.12	국제인권팀

7. 보도자료(2007. 1. 1. ~ 12. 31.)

보도일자	제 목
2007. 01. 03.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2007. 01. 04.	상희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차별 개선 권고
2007. 01. 09.	명예퇴직자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 박탈은 차별
2007. 01. 10.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키 · 몸무게 제한 폐지하겠다
2007. 01. 11.	한국철도공사의 호봉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2007. 01. 11.	국가인권위,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2007. 01. 12.	인권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07. 01. 16.	여직원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관행 사라져야
2007. 01. 17.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2007. 01. 22.	인권위,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방안 개선 권고
2007. 01. 23.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언동도 성희롱
2007. 01. 24.	B형 간염, 활동성 ·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지장 없어
2007. 01. 25.	인권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 적극 찬성
2007. 01. 25.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2007. 01. 29.	전문상담위원 위촉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
2007. 01. 29.	인권위 새로운 사무총장에 김칠준 변호사 임명
2007. 01. 30.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형집행장 발부는 인권침해
2007. 01. 31.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제한은 차별
2007. 02. 08.	정재근 인권위원 임명
2007. 02. 11.	항공사,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여승무원 채용 시 연령차별 폐지
2007. 02. 12.	인권위 권고수용,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자격 부여
2007. 02. 13.	장애인 · 노약자 이용 잦은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미비는 차별
2007. 02. 15.	강원도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결정에 학생의견 수렴하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07. 02. 15.	인권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 02. 16.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7. 02. 20.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7. 02. 22.	전국 순회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개최
2007. 02. 26.	특수학교 입학 시 장애학생 서약서 제출 사라진다
2007. 02. 26.	HIV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서 예방·교육·지원으로 관점 전환 필요
2007. 02. 27.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하는 것은 성차별
2007. 02. 27.	전·의경 잇단 자살 및 구타 등 해결 위해서는 인권상황 개선 시급
2007. 02. 28.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2007. 03. 05.	인권위,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 재발방지 권고
2007. 03. 06.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인권침해
2007. 03. 07.	학력만으로 자격제한은 차별
2007. 03. 07.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동권 차별 개선 권고
2007. 03. 09.	한미FTA관련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2007. 03. 13.	경찰, 현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고방지 대책 강구했어야
2007. 03. 14.	인권위, 성희롱에 주의권고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7. 03. 16.	인권교육법안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7. 03. 16.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7. 03. 16.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2007. 03. 22.	한미FTA저지 집회(2007.3.25.개최예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2007. 03. 23.	인권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전
2007. 03. 25.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국제조정위(ICC) 부의장 선출
2007. 03. 26.	한미FTA반대 집회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2007. 03. 27.	인권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
2007. 03. 28.	“임산부라서 채용 못한다?”
2007. 03. 30.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공개토론회
2007. 04. 04.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개최
2007. 04. 10.	인권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 조사 결과 발표
2007. 04. 11.	청주지역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보도일자	제 목
2007. 04.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2007. 04. 12.	외국군 소속 한국인 북파공작원에게도 보상의무 있다
2007. 04. 13.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각장애 수험생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2007. 04. 16.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2007. 04. 17.	인천지하철 공사 등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의지 밝혀
2007. 04. 18.	국제결혼일 경우도 가족 결합 원칙 보호되어야
2007. 04. 19.	“장애 차별 진정, 올 들어 급증세”
2007. 04. 19.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 위원장 메시지
2007. 04. 20.	인권위,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주제로 사회권심포지엄 개최
2007. 04. 23.	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국회에 의안 제출 건의
2007. 04. 24.	인권위,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의견표명
2007. 04. 25.	인권위와 영남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2007. 04. 25.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2007. 04. 25.	단속반의 촬영협조 시 인권침해 소지 발생
2007. 04. 26.	인권위, 인천대 체육학부 실기시험 장애인 학생 차별 개선 권고
2007. 04. 30.	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2007. 05. 01.	인권위,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7. 05. 03.	인권위, 2007년 제2차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2007. 05. 04.	인권위, 청소용역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07. 05. 07.	도주나 자해위험 없는데도 무리한 수갑 및 포승 사용은 인권침해
2007. 05. 14.	인권위, 홍성군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개최
2007. 05. 16.	골프장 캐디, 42세 되면 근무 못하는 관행은 나이 차별
2007. 05. 1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7. 05. 22.	한국의 이주민 자녀 인권 현주소
2007. 05. 22.	인권위, 고소인 용서할 것 강요하고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에게 징계권고
2007. 05. 23.	육군,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규정하는 규정 폐지
2007. 05. 30.	인권위, 제주도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보도일자	내 용
2007. 06. 04.	서울시,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공무원임용시험 시 편의조치 제공
2007. 06. 05.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설명한 경찰관에게 경고조치 권고
2007. 06. 07.	재임용 탈락 후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 배정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07. 06. 11.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 두는 것은 차별
2007. 06. 11.	인권위 부산사무소, 2007년 진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2007. 06. 12.	파견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예방할 의무, 파견사와 근무업체 모두에게 있다
2007. 06. 13.	인권위, 기소휴직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2007. 06. 18.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예정
2007. 06. 20.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2007. 06. 21.	인권위, 부안 군민 위한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2007. 06. 21.	인권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인권세미나 개최-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2007. 06. 22.	인권위, 공직자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2007. 06. 25.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2007. 06. 26.	인권위,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 경고
2007. 07. 03.	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2007. 07. 10.	집회신고 장소에 경찰 과잉배치하고 투석한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2007. 07. 12.	나이 기준 일률적인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2007. 07. 18.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2007. 07. 19.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2007. 07. 20.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간담회 개최
2007. 07. 23.	피랍 한국인 생명 인권 보호 노력해 달라
2007. 07. 24.	동료수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케 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2007. 07. 25.	시각장애인애 대한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할 것 권고
2007. 07. 31.	인권위, 수용자 사망사건 법률구조 결정
2007. 08. 01.	“받아주는 곳 없다고 미신고시설로 보내서는 안돼”
2007. 08. 02.	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보도일자	내 용
2007. 08. 07.	건강진단대상 비율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3배나 높아
2007. 08. 08.	미란다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2007. 08. 17.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 개최
2007. 08. 20.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기준 마련해야
2007. 08. 21.	인권위원장, 인권위 활동상황 대통령에게 특별보고
2007. 08. 22.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행사 개최
2007. 08. 28.	국가인권위, 6개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
2007. 08. 28.	잘 아는 사이라도 가혹행위는 안돼
2007. 08. 29.	인권위, 대구 안동 시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2007. 09. 04.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농약살포 작업지시는 인권침해
2007. 09. 05.	만성 활동성 간염자 승진차별 개선 권고
2007. 09. 10.	인권위, 9월 13일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2007. 09. 11.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아주는 건 한국의 문화?
2007. 09. 12.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2007. 09. 13.	주주총회 자료,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제공되어야
2007. 09. 17.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인권개선 방안 권고
2007. 09.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07. 09. 18.	인권위, 강원도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2007. 09. 19.	19일 오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07. 10. 01.	폭행 또는 자해위험 없는데도 피의자에게 전자충격기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
2007. 10. 02.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동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2007. 10. 11.	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2007. 10. 12.	세종문화회관 인권위 조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키로
2007. 10. 15.	인권위, 안양교도소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에 따른 자료화면 공개
2007. 10. 16.	범죄피해자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2007. 10. 16.	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2007. 10. 17.	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 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보도일자	내 용
2007. 10. 17.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개최
2007. 10. 18.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2007. 10. 24.	집회금지통고 제도 관련 청문회 개최
2007. 10. 24.	성추행, 상습폭행, 허위 혼인신고, 공금 횡령한 장애인 시설 검찰 고발
2007. 10. 24.	성추행, 상습폭행, 허위 혼인신고, 공금 횡령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 검찰 고발
2007. 10. 25.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은 차별
2007. 10. 30.	인권위, 인하대 · 한양대와 교류 협정서(MOU) 체결
2007. 10. 30.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07. 11. 02.	2007 부산울산경남 시민영상공모전 수상자 발표
2007. 11. 05.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제도 수립해야
2007. 11. 05.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외빈초청토론회 개최
2007. 11. 06.	인권위, 독일 이주했던 간호사 및 광부 초청 포럼 개최
2007. 11. 07.	인권위, 재외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7. 11. 09.	서울광장 집회 금지 긴급구제 않기로,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할 것” 당부
2007. 11. 14.	인권위, UN 사형집행 유예 결의한 동참 촉구
2007. 11. 19.	인권위, 아시아나 항공사에 채용제도 개선 촉구
2007. 11. 20.	인권위,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개최
2007. 11. 22.	국가인권위 설립 6주년 맞아
2007. 11. 22.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인권문화한마당 개최
2007. 11. 27.	전자감시 당하는 근로자 보호 위한 법률 제정 필요하다
2007. 11. 27.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주간 공동행사 개최
2007. 11. 29.	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해야
2007. 11. 29.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함께하는 인권음악회(광주) 개최
2007. 11. 30.	엘리트스포츠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선수 인권 보장해야
2007. 11. 30.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원칙 지급해야
2007. 12. 03.	빈곤 가구 전기 수돗물 끊지 말아야
2007. 12. 03.	인권위,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도일자	내 용
2007. 12. 04.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2007. 12. 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 12. 05.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2007. 12. 06.	법원공무원 공채 연령제한은 차별
2007. 12. 06.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2007. 12. 09.	대한민국 인권상 조화순 목사 등 수상
2007. 12. 11.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 개선되어야
2007. 12. 12.	프로골퍼 되는데 나이 차별 두지 말라
2007. 12. 13.	절차와 정도 넘어선 상관의 기율행위는 인권침해
2007. 12. 14.	인권위의 김경준 씨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
2007. 12. 14.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토론회 개최
2007. 12. 14.	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사전고지 없이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2007. 12. 17.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07. 12. 18.	노조활동 ·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돼
2007. 12. 21.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2007. 12. 21.	인권위와 전북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2007. 12. 22.	유남영, 조국, 황덕남, 인권위원 임명
2007. 12. 22.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기념행사개최, 김미화 공지영 이수영 정명화 인권홍보대사 위촉
2007. 12. 24.	세계인권선언 59주년 기념 “2007 경남지역 인권토론회”
2007. 12. 27.	1인 시위 및 집회 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2007. 12. 28.	무호적자의 호적취득제도 개선해야
2007. 12. 31.	사형수 특별감형을 환영하며, 사형제 폐지를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 연간보고서

•인 쇄 일 : 2008년 6월
•발 행 일 : 2008년 6월
•발 행 인 : 안 경 환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무교동길 41)
우 100-842
전화 / (02) 2125-9700 / 대표전화 '1331'
팩스 / (02) 2125-9811~2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 서린기획 (02) 2263-2704

비매품